

| SRI-정책-2019-13 |

수원시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방안 : 데이트폭력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Investigat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in Suwon City

이영안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근혁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19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최병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9년 09월 25일
발행 2019년 09월 30일
ISBN 979-11-89160-77-7 (933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이영안. 2019. 「수원시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방안: 데이트폭력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요약

2018년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최초로 기본법 형식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어 여성에 대한 폭력 통계를 국가가 통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과 디지털성폭력 등 새로운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도 국가가 실태조사를 하고 방지책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담았으며,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폭력의 정의와 유형을 이해하고, 수원시민의 데이트폭력 인식·경험을 조사함으로써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첫째, 여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학자 및 기관들의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의 여성폭력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유형을 설정하였다. 둘째, 여성폭력의 유형이 다양하므로 모든 여성폭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어느 한 유형에서도 의미 있는 분석 값을 도출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면 설문문항 구성 및 다양한 연구 한계에 부딪쳐 수원시민이 원하는 정책수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화되고 문제시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여성폭력 유형별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여성폭력의 개념은 연구자들 사이에 일치되지 않고, 그 유형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또한 여성폭력은 단일 범죄유형으로 처벌되는 폭행과도 달라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라는 의미보다는 “성적 차별”을 바탕으로 한 폭력행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여성폭력의 개념은 성적 차별을 바탕으로 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을 주로 다루어 성적인 폭력행위라면 그 대상을 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는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실태와 인식 그리고 예방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최근 데이트폭력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데이트폭력 예방에 앞장섬으로써 '안전도시 수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원시민 만 15세~59세 남녀 98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크게 '응답자 특성', '인식조사', '데이트폭력 경험과 대응',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의 4가지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더불어 전문가 심층면접조사(FGI)를 통해 기존 문헌연구 및 실태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들과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분석과 현황 분석 그리고 실태조사 및 전문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로 구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 과제로 첫째, 수원시 데이트폭력(여성폭력)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현재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단체,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및 보호를 받고 있지만, 다양하게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확인하기 어렵다. 2018년 12월 24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어 2019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보호되지 못하는 법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수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 지역연대의 설치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폭력의 범위를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한정하여 여성폭력의 범위가 좁으며,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해당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여성폭력의 정의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은 편의상 개별적으로 명명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조례에서의 정의나 정책적 접근에서는 그 공통 속성인 '젠더폭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 역시 예외일 수 없다(강희영 외, 2017). 따라서 「수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폭력의 정의를 젠더폭력에 기반한 폭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원시 데이트폭력(여성폭력)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현재 각각의 법률적 근거를 통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데이트폭력은 국책연구기관 혹은 지역의 연구기관 등에서 실태를 파악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 수원시는 120만 이상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대도시(metropolis)로서 대다수 광역시와 비슷한 인구현황을 지니고 있어 데이트폭력 및 여성폭력에서 타지방자치단체들 보다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책추진을 위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원시 데이트폭력 예방 및 지원의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TV 방송

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데이트폭력’이란 말을 어디서 들어 보았습니까?의 질의에 TV 방송이나 인터넷 96.8%(956명)을 통해 가장 많이 본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과 관계없이 모두 높은 응답률을 보이므로 향후 정책지원 및 인식개선 등 홍보와 경각심을 높이는 정보전달은 지역 TV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온라인 기사, 블로그, YouTube 등)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수원시는 데이트폭력 전반에 대한 설명과 정부부처(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가 제시하는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의 행정정보 그리고 수원시 내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위치 및 지원정보를 수록한 자체적인 가이드북 개발 및 발간이 요구된다. 더불어 수원시민 스스로가 데이트폭력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학교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안내·배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원시 공공기관 홈페이지 내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배너를 설치하여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대안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원시청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홈페이지 배너를 설치하는 것이다. 향후 중장기적인 홍보 및 인지도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앞서 수원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표적인 홈페이지에 해당 배너를 설치하여 인지도를 향상하고, 피해자 및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이 본인의 피해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첫째, 수원시 데이트폭력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에 놓여있는 데이트폭력과 여성폭력을 예방, 교육, 지원하는데 기초자치단체의 하나의 팀 혹은 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미봉책으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수원시민을 위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수원시 데이트폭력 전담기관 설치를 절반(58.7%, 580명)이 넘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가 지닌 상황과 수원시민의 정책수요 모두를 충족시키며, 현실성을 고려하여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수원시 데이트폭력(여성폭력)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수원시 주도 하의 데이트폭력(여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여 수원시 내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1366(여성긴급전화), 경찰, 학계 전문가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상호간의 정보공유 및 의견청취, 지원 등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원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는 피해지원 대상자의 범위 확대가 주요한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현재 별도의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원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수립이 요구되므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기소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에게 ‘피해 상담 사실화

인증'을 통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원시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대안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제고는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의무예방교육에 스톱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과서를 보완하여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 등에 성평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제고는 먼저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톱킹·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방침에 대하여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나 주변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수원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과 성인 모두 데이트폭력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은 사례제공과 대화형 교육방식을 결합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주기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주기적 교육 실시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여성폭력, 젠더폭력,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인식조사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제2장 여성폭력에 대한 논의	 7
제1절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	9
1. 여성폭력의 개념과 원인	9
2. 여성폭력의 유형 및 주요 내용	15
제2절 국내·외 여성폭력 관련법 고찰	32
1. 국내 관련법	32
2. 국외 관련법	34
제3절 소결	43
 제3장 데이트폭력 현황 및 정책	 45
제1절 데이트폭력 피해 발생 현황 및 특징	47
1. 데이트폭력 피해 발생 현황	47
2. 데이트폭력 피해 유형 및 특징	56
제2절 데이트폭력 관련 연구 및 정책	61
1. 데이트폭력 관련 연구	61
2. 데이트폭력 관련 정책	71
제3절 소결	81

제4장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83
제1절 설문조사 개요	85
1. 조사 개요	85
2. 분석 방법	87
제2절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분석 결과	89
1. 인식조사	89
2. 데이트폭력 경험과 대응	109
3.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188
제3절 전문가 심층면접조사(FGI) 분석 결과	206
1. 조사 개요	206
2. 조사 내용	206
3. 분석 결과	207
제4절 소결	210
제5장 결론	21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17
1. 여성폭력에 대한 논의	217
2. 데이트폭력 현황 및 정책	218
3.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조사(FGI)	218
제2절 정책제언	220
1. 단기적 과제	220
2. 중장기적 과제	224
참고문헌	229
부록	239

표 차례

〈표 2-1〉 여성폭력 원인 차원과 위험요소	15
〈표 2-2〉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25
〈표 2-3〉 여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	31
〈표 2-4〉 서울특별시와 경상북도의 여성폭력방지 관련 조례 비교	33
〈표 3-1〉 전국 데이트폭력 현황	47
〈표 3-2〉 전국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48
〈표 3-3〉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애인인 경우 죄명별 현황(2014~2016)	48
〈표 3-4〉 전국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현황(2012~2017)	49
〈표 3-5〉 전국 및 경기도 데이트폭력 신고접수, 입건, 구속 현황(2017)	50
〈표 3-6〉 전국 및 경기도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 현황(2017)	51
〈표 3-7〉 여성긴급전화 1366 데이트폭력 상담통계(2017)	52
〈표 3-8〉 경기도 여성긴급전화 1366 데이트폭력 상담통계(2014~2017)	53
〈표 3-9〉 경기 북부 데이트폭력 통계	53
〈표 3-10〉 경기 북부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53
〈표 3-11〉 경기 남부 데이트폭력 통계	54
〈표 3-12〉 경기 남부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55
〈표 3-13〉 수원시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55
〈표 3-14〉 데이트폭력의 유형	58
〈표 3-15〉 데이트폭력 피해 유형별 피해 경험 실태	59
〈표 3-16〉 연인 대상 폭력범죄(살인, 성폭력, 폭행 및 상해범죄) 범죄자의 전과	60
〈표 3-17〉 데이트폭력의 입법 추진 현황	77
〈표 4-1〉 조사 설계 개요	86
〈표 4-2〉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내용	87
〈표 4-3〉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분석기법 및 응답자 특성	88
〈표 4-4〉 데이트 관계에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빈도) ·	90
〈표 4-5〉 데이트 관계에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성별) ·	91
〈표 4-6〉 데이트 관계에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연령별) ·	92

〈표 4-7〉 데이트 관계에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지역별) …	93
〈표 4-8〉 데이트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에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빈도) ……………	95
〈표 4-9〉 데이트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에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성별) ……………	96
〈표 4-10〉 데이트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에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연령별) ……………	97
〈표 4-11〉 데이트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에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지역별) ……………	98
〈표 4-12〉 귀하는 다음의 행위가 데이트폭력이라고 생각되십니까?(빈도) ……………	100
〈표 4-13〉 귀하는 다음의 행위가 데이트폭력이라고 생각되십니까?(성별) ……………	101
〈표 4-14〉 귀하는 다음의 행위가 데이트폭력이라고 생각되십니까?(연령별) ……………	102
〈표 4-15〉 귀하는 다음의 행위가 데이트폭력이라고 생각되십니까?(지역별) ……………	103
〈표 4-16〉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빈도) ……………	105
〈표 4-17〉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성별) ……………	106
〈표 4-18〉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연령별) ……………	107
〈표 4-19〉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지역별) ……………	108
〈표 4-20〉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통제와 간섭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109
〈표 4-21〉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통제와 간섭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빈도) ……………	111
〈표 4-22〉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통제와 간섭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성별) ……………	112
〈표 4-23〉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통제와 간섭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연령별) ……………	113
〈표 4-24〉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통제와 간섭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지역별) ……………	114
〈표 4-25〉 상대의 통제와 간섭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부터 입니까? ……………	116
〈표 4-26〉 통제와 간섭으로 인한 귀하의 주된 느낌은 어떠하였습니까?(우선순위) …	118
〈표 4-27〉 귀하는 통제와 간섭이 있었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	119
〈표 4-28〉 귀하가 통제와 간섭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의 주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21
〈표 4-29〉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23
〈표 4-30〉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빈도)	125
〈표 4-31〉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성별)	126
〈표 4-32〉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연령별)	127
〈표 4-33〉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지역별)	128
〈표 4-34〉 상대의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부터 입니까? ..	130
〈표 4-35〉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으로 인한 귀하의 주된 느낌은 어떠하였습니까? (우선순위)	132
〈표 4-36〉 귀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 있었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	133
〈표 4-37〉 귀하가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의 주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35
〈표 4-38〉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37
〈표 4-39〉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빈도)	139
〈표 4-40〉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성별)	140
〈표 4-41〉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연령별)	141
〈표 4-42〉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지역별)	142
〈표 4-43〉 상대의 신체적 폭력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부터 입니까?	144
〈표 4-44〉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귀하의 주된 느낌은 어떠하였습니까?(우선순위) ...	146
〈표 4-45〉 귀하는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47
〈표 4-46〉 귀하가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의 주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49
〈표 4-47〉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51
〈표 4-48〉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빈도)	153
〈표 4-49〉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성별)	154
〈표 4-50〉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연령별)	155
〈표 4-51〉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지역별)	156
〈표 4-52〉 상대의 성적 폭력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부터 입니까?	158
〈표 4-53〉 성적 폭력으로 인한 귀하의 주된 느낌은 어떠하였습니까?(우선순위)	160
〈표 4-54〉 귀하는 성적 폭력이 있었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61
〈표 4-55〉 귀하가 성적 폭력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의 주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63
〈표 4-56〉 귀하가 데이트폭력 경험으로 인해 겪은 피해 중 귀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우선순위)	166
〈표 4-57〉 연애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주십시오.(복수응답) ·	167
〈표 4-58〉 귀하는 데이트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도움이 가장 필요 하였습니까?(우선순위)	170
〈표 4-59〉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방법, 과정 등)해야 하는지 여부	171
〈표 4-60〉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돕거나 지원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 여부	172
〈표 4-61〉 귀하는 데이트폭력 피해로 인해 타인 또는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습니까?(복수응답)	174
〈표 4-62〉 도움을 요청받은 타인 또는 유관기관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복수응답)	176
〈표 4-63〉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우선순위)	178
〈표 4-64〉 데이트폭력 피해로 알코올 중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79
〈표 4-65〉 데이트폭력 피해로 섭식장애(음식을 못 먹거나 너무 많이 먹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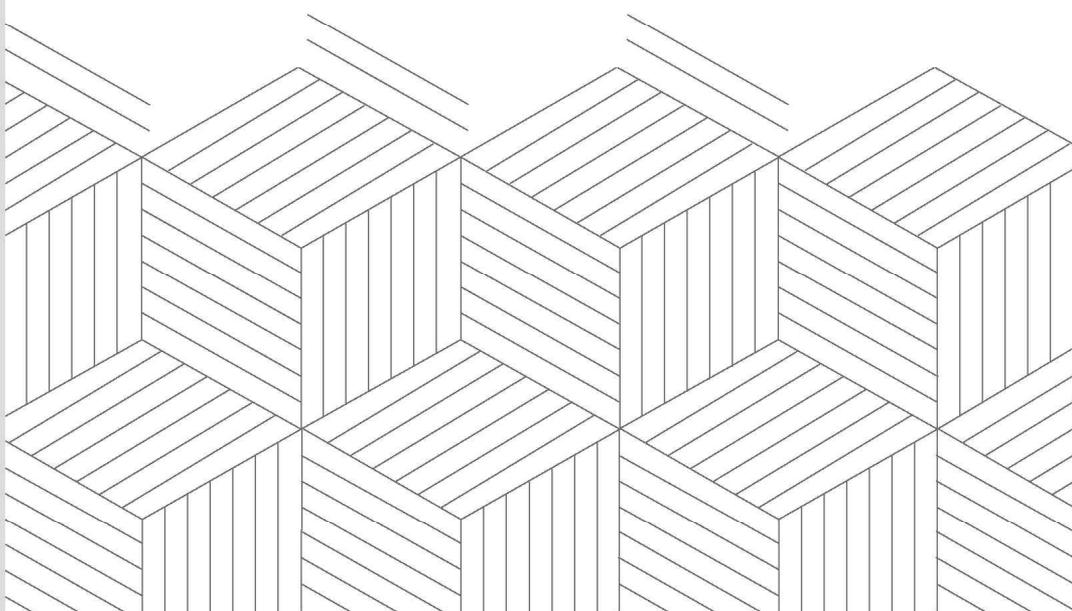
〈표 4-66〉 데이트폭력 피해로 다음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182
〈표 4-67〉 데이트폭력 피해가 있었던 당시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183
〈표 4-68〉 통제와 간섭을 경험하게 될 경우 타인과 유관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184
〈표 4-69〉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경험하게 될 경우 타인과 유관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185
〈표 4-70〉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게 될 경우 타인과 유관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186
〈표 4-71〉 성적 폭력을 경험하게 될 경우 타인과 유관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187
〈표 4-72〉 ‘데이트폭력’이란 말을 어디서 들어 보았습니까?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복수응답)	189
〈표 4-73〉 다음의 기관에서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교육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191
〈표 4-74〉 귀하는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 ·	193
〈표 4-75〉 귀하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	195
〈표 4-76〉 귀하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	197
〈표 4-77〉 귀하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것 같습니까?(우선순위) ·	199
〈표 4-78〉 만약 귀하가 ‘데이트폭력’ 피해자라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복수응답)	201
〈표 4-79〉 귀하는 수원시에서 ‘데이트폭력’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중 알고 있는 기관을 모두 응답해주시시오.(복수응답)	203
〈표 4-80〉 수원시민을 위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에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	205
〈표 4-81〉 심층면접조사(FGI) 집단구분 및 조사내용	207

그림 차례

〈그림 2-1〉 가정폭력의 유형	17
〈그림 2-2〉 대상별, 관계별, 피해 유형별 성폭력	20
〈그림 2-3〉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22
〈그림 2-4〉 성매매 범죄의 유형	23
〈그림 2-5〉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	24
〈그림 2-6〉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27
〈그림 2-7〉 데이트폭력의 유형	30
〈그림 3-1〉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개요	75
〈그림 5-1〉 수원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내 관련 사이트 메뉴 및 배너창	22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018년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최초로 기본법 형식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어 여성에 대한 폭력 통계를 국가가 통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과 디지털성폭력 등 새로운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도 국가가 실태조사를 하고 방지책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담았으며,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였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의 입법안으로 한국사회에서 젠더폭력이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며, 심화된 양상으로 드러나고 복합적인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로 나누어진 처벌법과 피해자보호지원법의 이원·삼원체계에서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성차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명명하여 국가 대책과 근절의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기본법의 애초 취지이다(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은 2017년 35번 일반권고를 통해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여성에 대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 개념을 정의하였다. 즉, 여성에게 주로 일어나는 폭력이 인간을 여성과 남성으로 이분하는 성별체계 및 장애, 국적, 인종, 성적지향 등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또한 이와 같은 이해가 있을 때 확장되는 젠더폭력, 혐오범죄를 파악할 수 있고 피해자가 놓인 복합적인 환경과 상태를 고려하여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 및 남성단체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서 ‘여성폭력’이라고 피해자의 성별을 명시하면서 남성 피해자를 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생물학적 남성에 대한 성희롱 등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고, 여성폭력 예방교육도 임의조항으로 바꿔 젠더폭력·여성폭력의 방지 혹은 근절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 조항마저 삭제한 것은 해당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폭력이 왜 발생하는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불평등한 젠더구조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만을 선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략하게 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폭력피해 구조를 분석하고 차별을 확인하고 불평등을 지목할 수 있어야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을 해결할 수 있으며, 누구나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누구도 피해자 지원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젠더폭력·여성폭력에 있어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은 여성에 대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 근절 기본법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예방 및 근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여성폭력에 관한 통계와 실태조사와 같은 현황자료들이 매년 축적되어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폭력 실태파악은 지역 경찰청 자료나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등에서 협조해주는 자료로만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젠더폭력·여성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피해 예방 그리고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시행되는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로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 이슈 해결에 앞장서고 자체·연계방안들을 모색하여 실질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연구의 최종 목적은 여성폭력의 정의와 유형을 이해하고, 수원시민의 데이트폭력 인식·경험을 조사함으로써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여성범죄(데이트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첫째, 여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학자 및 기관들의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여성폭력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유형을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폭력의 유형이 다양하므로 모든 여성폭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어느 한 유형에서도 의미 있는 분석 값을 도출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면 설문문항 구성 및 다양한 연구 한계에 부딪쳐 수원시민이 원하는 정책수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

화되고 문제시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여성폭력 유형별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 실태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분석되고 도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수원시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즉 수원시민의 데이트폭력 인식도를 함께 파악함으로써 수원시가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는 수원시민의 데이트폭력 인식과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수원시민이 직접 요구하는 정책방안들을 도출하여 연구에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의 범위는 선행연구에서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정의와 범위, 유형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실태조사에서는 연구의 제약으로 인해 데이트폭력만으로 한정하여 대상을 설정하였으며, 정책제언에서는 데이트폭력과 여성폭력을 상호간 유기적으로 언급한다.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4개 구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적 범위는 2019년 단년으로 설정하여 실증조사를 시행하는데 기준이 된다.

내용적 범위는 여성폭력의 이해, 국내·외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적 체계, 데이트폭력 현황, 데이트폭력 관련 중앙정부 정책,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 실태분석 결과 및 정책제언으로 한정한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문헌연구 및 2차 통계자료 분석을 시행한다. 문헌분석을 통해 여성폭력의 개념 정의, 여성폭력의 범위와 유형, 국내·외 관련 법·제도 등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수원시의 전반적인 현황들을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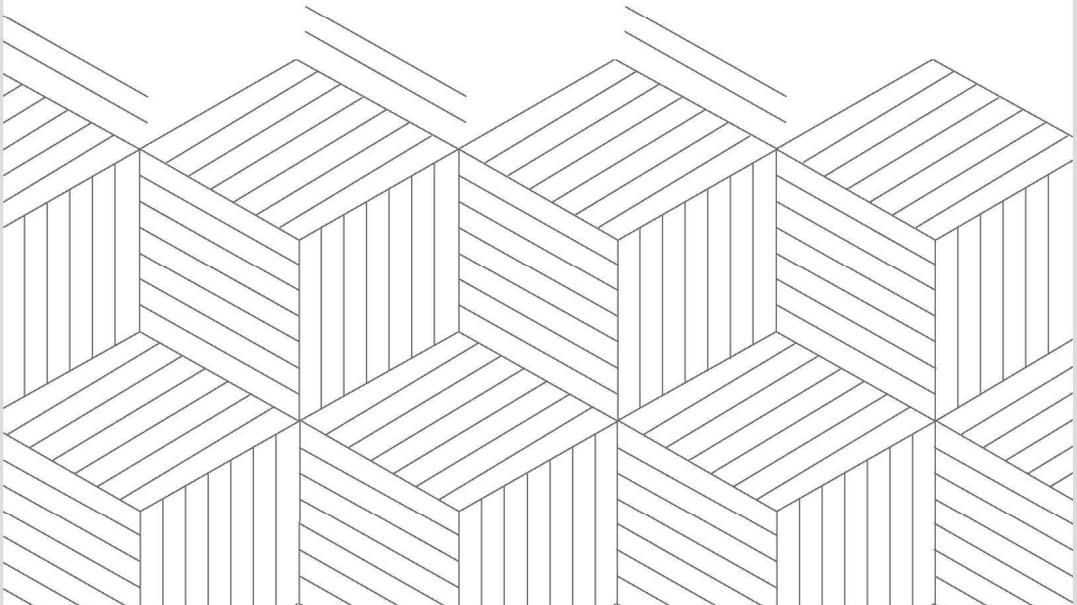
둘째, 전문가 자문을 4차에 걸쳐 시행하며 1, 2, 3차 전문가 자문에는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구성회의를 실시한다. 설문지 구성에 있어 문항의 적절성, 질의 문항의 민감성, 신규 문항 추가 등의 자문을 통해 설문지를 확정하고, 설문조사 대상의 비율도 자문을 통해 설정한다. 4차 전문가 자문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시설 전문가를 통해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듣기 어려운 다양한 사례와 현황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실무자로서 겪는 피해자 지원의 어려움과 정책수요, 인식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한다.

셋째,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총 4개 영역(응답자 특성, '인식조사', '데이트폭력 경험과 대응',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구분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이 실시되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교차분석은 모든 분석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며, '데이트폭력과 대응' 부분은 데이트폭력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구분하여 기존 교차분석에서 '경험자'의 응답만 별도로 분석한다. 그리고 '인식조사' 영역과 '데이트폭력 경험과 대응' 영역에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평균비교분석을 통해 각 비교대상별 평균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존재하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 사례조사, 실태조사 전 부분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수원시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여성폭력) 관련 정책을 제시한다.

제2장 여성폭력에 대한 논의

제1절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
제2절 국내·외 여성폭력 관련법 고찰
제3절 소결



제2장 여성폭력에 대한 논의

제1절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

1. 여성폭력의 개념과 원인

1) 여성폭력의 개념

최근 여성폭력의 개념은 젠더폭력의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폭력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의 연구인 배미란(2018)의 연구를 통해 여성폭력 즉, 젠더폭력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여성폭력의 개념은 아직 연구자들 사이에 일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그 유형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폭력은 단일 범죄유형으로 처벌되는 폭행과도 달라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그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배미란, 2018: 13-15).

연혁적으로 검토해보자면, 먼저 1985년 제3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 전략’에서 처음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언급되었다. 그리고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처음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김엘림 외, 1999). 그 후 1993년 12월 12일 제48차 UN총회에서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이 채택되었고, 동 선언 제1조에서는 여성폭력을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혹은 심리적 손상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성별에 기반한 (gender-based) 폭력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 박탈”로 정의하고 있다(김엘림 외, 2000).

즉, 젠더폭력에 대한 논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차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이라는 정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그 논의가 더욱 다양해졌다. 특히,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는 젠더폭력이라는 표현보다 “여성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이 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고, 성적 차별로 인한 폭력 또는 젠더기반폭력

(GBV: Gender-Based Viol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폭력 내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용어와 성적 차별에 인한 폭력 내지 젠더기반폭력은 그 의미가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자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말 그대로 성적 차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폭력(gender-based violence)을 의미한다. 다만, 두 개념은 모두 여성을 폭력의 피해자로, 남성은 폭력의 가해자로 상정하는 개념이며, 이는 성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에서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적 구조에 의한 폭력으로 이해되고 있다(이성은 외, 2010).

이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젠더를 바탕으로 한 폭력은 결국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것이어서, 크게 본다면 UN의 여성폭력철폐선언 제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폭력개념과 다르지 않다. 다만, 최근에는 성폭력이 오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남성도 얼마든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만을 피해자로 상정하는 개념으로 젠더폭력을 한정해도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성폭력을 sexual violence로 지칭할 것인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의미에서 gender violence로 지칭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그 당시의 결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인 것은 분명하나 남성도 성적인 폭력을 경험할 수 있고, 가정폭력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는 때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다수는 여성이지만 성별에 무관하게 연령적인 측면에서의 약자인 아동, 노인들에 대한 가정폭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폭력피해자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sexual violence로 정리되었다(이성은 외,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의 개념에 관해서는 더욱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라는 의미보다는 “성적 차별”을 바탕으로 한 폭력행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고자 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그 처벌규정이 존재한다면 처벌의 강약은 있겠지만 처벌의 유무는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성적 차별”을 바탕으로 한 폭력행위에 관한 논의라면 주로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행위 유형에 대한 검토가 주를 이루게 되겠지만, 적어도 여성에 대한 성적인 폭력행위와 남성에 대한 성적인 폭력행위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특정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성별의 특성에 따른 대처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젠더폭력은 젠더를 바탕으로 한 폭력 내지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을 토대로 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최근의 논의에서 젠더기반폭력은 오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를 테면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 또는 그 외의 남성에게 의한 성폭력,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폭력, 강제결혼(특히 아동의 조혼), 여성할례 등 공적·사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호르바트, 발라즈,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여성폭력의 개념은 성적 차별을 바탕으로 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을 주로 다루게 될 것이나 성적인 폭력행위라면 그 대상을 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을 통해 여성폭력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¹⁾ 가정폭력의 개념은 아내학대(wife-abuse), 아내구타(wife-battering), 아내폭행(wife-assault), 가정폭력(family violence), 배우자학대(domestic violence),²⁾ 부부폭력(conjugal violence) 등의 용어가 섞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내학대와 가정폭력, 아내구타와 같은 용어들이 큰 차이 없이 쓰여 지고 있는 것이다. 아내학대나 아내구타는 여권주의 시각에서 사용되며, 가정폭력 혹은 배우자 폭력은 일탈 및 범법 행위의 다른 유형으로 학대를 이해하는 시각에서 사용된다. 외국에는 중립적인 개념인 ‘가정폭력(family violence)’ 혹은 ‘배우자학대(domestic violence or spouse abuse)’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박금식 외, 2010: 9-10).

가정폭력의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가정폭력의 가해자(행위자)와 피해자간의 관계에 의한 분류이며, 다른 하나는 가정폭력의 형태에 따른 분류이다.

가정폭력의 가해자(행위자)와 피해자간의 관계에 의한 분류는 아내에 대한 폭력, 남편에 대한 폭력, 자녀에 대한 폭력, 노부모에 대한 학대, 형제자매 간의 폭력, 친인척간의 폭력 등 매우 다양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의한 폭력을 기준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대 가정폭력은 아내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을 의미한다.

가정폭력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폭력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유기, 성학대 등이 있다. 피학대자의 성과 연령에 따라 상이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간주되는 것은 신체적 폭력과 성학대이다(김승권 외, 2008a: 220-221).

성폭력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법률적 의미의 성폭력 개념과 유형, 연령별 유형 분류, 피해

1) 가정구성원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상 양친 관계를 포함하는 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2호).

2) 국가나 연방에 따라 가정폭력을 family violence 혹은 domestic violence로 달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amily violence를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를 배우자학대로 명명하고자 한다.

자와 가해자 관계별 유형 분류로 나누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법률적 의미의 성폭력 개념에 초점을 맞추며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정의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기 위해 선정적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의 구체적인 법률적 유형은 강간, 특수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언어폭력 및 통신매체에 의한 음란전화·장난전화·침묵전화 등이다. 강간은 남성이 상대방 여성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이다. 단,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했을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형법」 제297조, 제305조, 제306조).

특수강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로, 흥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행위객체는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으며 행위주체는 남녀 모두가 될 수 있다(「형법」 제298조).

성희롱은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직접적인 신체접촉뿐 아니라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낙서·출판물 등을 직접 보여주거나 통신매체를 통해 보내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언어폭력 및 통신매체에 의한 음란전화·장난전화·침묵전화는 전화, 편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이나 성적 언어로 모욕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음란전화는 성과 관련된 내용, 성적 호기심 질문, 성적인 욕설, 성관계 질문하기 등이며, 비음란전화는 장난전화, 침묵전화, 협박전화, 일방적 욕설, 수면을 방해하는 심야전화 등이다

3) 연령별 유형 분류는 아동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성인 성폭력으로 구분된다. 아동 성폭력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이며, 청소년 성폭력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며, 성인 성폭력은 성인이 되어 경험하게 되는 성폭력을 의미한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별 유형 분류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친족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학내 성폭력으로 구분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가해자가 평소 안면이 없던 사람인 경우에 당하는 성폭력(강도, 택시 기사, 지나가는 사람 등)이며, 친족성폭력은 친족에 의해 일어나는 성추행에서 강간까지 포함하는 성폭력이며, 데이트 성폭력은 넓은 의미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으로 데이트강간은 14세 이상의 남녀 쌍방의 이성애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며, 직장 내 성폭력이란 채용 과정이나 근무 기간에 직장 상사, 동료, 계열사 혹은 거래처 직원들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위이며, 학내 성폭력이란 교육 관련 기관이란 공간 내에서 학생과 학생 간, 교육자와 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이다(김승권 외, 2008b: 84-90).

(김승권 외, 2008b: 82-83).

또한 최근 나타나기 시작한 데이트폭력과 디지털성범죄 등의 경우도 여성폭력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2) 여성폭력의 원인

여성폭력의 배경과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여성부, 2008: 46-57).

먼저, 가부장제 및 여타 지배의 종속관계가 여성폭력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여성폭력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보편적이다.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특정 지역, 국가, 문화가 없다는 것이다. 여성폭력은 국가, 문화, 인종, 계급, 지역의 경계를 넘어 분포되어 있으며 그 근원은 가부장제로 보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성역할 즉,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남성이 여성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여성을 지배하는 위계적인 구조로 정해졌다. 남성우위 구조와 여성종속은 이념적, 물질적 토대에 기반한 것이다. 가부장제는 사회적·문화적 규범에 뿌리박혀 있으며 법과 정치적 구조에 제도화되어 있다.

여성폭력은 남성의 권위를 유지하는 장치로 이용된다(박금식 외, 2010: 11-13).

첫째, 여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요소나 실업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 알코올 중독이나 과거 폭력에 노출된 경험 등 개인적 행동이나 개인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는 설명은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성 불평등을 간과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폭력의 요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보다 넓은 사회적 권력 관계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적 불평등은 여성폭력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폭력 가능 상태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개인적 차원 또는 광범위한 경제적 추세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원인이 된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은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 등에서 다양하게 발견된다.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과 여성차별은 고용, 소득, 다른 경제 자원으로의 접근, 경제 자립 등의 부분에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전반적으로 향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의 경제적 착취뿐만 아니라 공식적·비공식적인 경제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의 부족 등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경제역량의 결여는 여성폭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리고 여성의 가계 소득 등의 경제자원에 대한 제한은 가족 내에서의 여성폭력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경제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폭력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갈등해결을 위한 폭력의 사용은 여성폭력의 원인이 된다. 갈등해소 수단으로써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정치적 용인은 여성폭력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개인적 차원, 부부 사이나 가족 내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폭력의 사용은 여성폭력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가족 내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할 것인가를 다루는 사회적 규범은 폭력을 묵과하거나 단념시키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넷째, 사생활 주위에 대한 강조는 여성폭력과 연관된다. 가정과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의 원칙은 가정 내에서 여성폭력이 발생할 때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지 못하거나 보호를 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법과 관행에서 가정의 사생활 보호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가족구성원이 행사하는 폭력에 개입하지 않게 되고,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의 면책 사유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방조는 여성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가는 성역할과 권력의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의 방조는 여성의 인권을 경시하고 여성의 권한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법 또는 정책을 유지하게 된다. 국가의 방조는 국가가 해야 하는 여성폭력 예방 및 보상조치를 사회단체로 전가하게 된다. 또한 폭력 그 자체에 있어서 폭력을 유지하고 묵과하는 여성 종속 상황을 승인하게 된다. 사법제도의 적절한 기능에 관한 국가의 방조는 여성폭력의 면책이 또 다른 폭력을 장려하거나 여성의 종속을 강화시킬 수 있다.

여성폭력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는 개인 차원, 부부와 가족 차원, 지역공동체 차원, 국가 차원 등으로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성폭력의 주요한 구조적 원인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들과 합쳐진다. 현재까지 여성폭력의 특정 형태에 관련이 있거나 또는 위험요소로 간주되는 많은 요인들이 밝혀졌다. 여성폭력의 요인은 사회 및 경제적 지위,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과거, 개인적인 행동 형태 등을 포함한다. 주로 선진국에서 실시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에 의한 폭력, 낯선 사람에 의한 아동 성적 학대와 성폭행, 강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통계적으로 여성폭력과 관련되어 반복해서 일어나는 요소들이 되지만, 이런 것들은 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립되지는 않았다. 다양한 연구들은 개인, 가족, 지역공동체, 사회와 국가 차원의 위험요소를 아래 <표 2-1>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

〈표 2-1〉 여성폭력 원인 차원과 위험요소

차원	위험요소
개인 차원	아동·청소년으로서 학대의 경험, 가정에서 부부 폭력 목격, 술과 약물의 빈번한 사용, 낮은 교육 및 경제 수준, 취약계층 혹은 소외된 공동체 구성원
부부와 가족 차원	가족 내에서의 재산 및 의사 결정권의 남성 지배, 부부 싸움 경험, 경제적·교육적·고용 지위의 중대한 대인 격차
지역공동체 차원	여성의 고립과 사회 지원의 부족, 남성폭력을 관용하고 정당화하는 공동체의 태도, 빈곤 등의 높은 수준의 사회 경제적 권한 박탈
사회 차원	남성지배와 여성 복종을 정착하게 하는 성역할,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폭력 사용에 대한 관용
국가 차원	폭력 예방과 처벌을 위한 부적절한 법과 정책, 법 집행 관료와 법원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제한된 인식과 인지

자료: 여성부, 2008: 56-57

2. 여성폭력의 유형 및 주요 내용⁴⁾

1)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법에서 정하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 관련법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라. 동거하는 친족

4) 본 내용은 여성폭력 Zoom-in(<https://www.stop.or.kr/women/>)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타 연구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2019년 8월 검색).

동법에 따르면, ‘가정’의 개념은 부부, 사실혼 부부(과거 부부 포함)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계부모 및 적모, 서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구획되며 여기에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된다. 따라서 동법에서 칭하는 가정의 범위는 법률상 친족 중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하는 단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⁵⁾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고, 이와는 별개로 동조 제3호에서는 ‘가정폭력범죄’를 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2.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학사)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카.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5) 동법의 규율 대상은 부부와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의 진정한 의미인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며, 또한 부부와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가정을 정의한다면 가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보수적 가족 모형을 받아들일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않는 동거관계 및 이에 파생하는 관계에 대한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양현아, 2006: 5).

〈그림 2-1〉 가정폭력의 유형



자료: 여성폭력 Zoom-in(<https://www.stop.or.kr/women/>) 홈페이지(2019년 8월 검색)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는 크게 6가지 지원(상담지원, 긴급지원, 의료지원, 무료 법률지원, 보호시설 지원, 주거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상담지원’은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 없이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지원’은 지방자치단체, 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료법률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이 가능하다. ‘보호시설 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상담 후 입소⁶⁾가 가능하며 특히, 10세 이상 남 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별도로 운영 중에 있다. ‘주거지원’은 가정 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6)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장기보호시설은 2년 이내, 긴급피난처는 최대 7일까지 제공하며,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여성폭력 Zoom-in 홈페이지).

2) 성폭력·성희롱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 관련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성희롱은 법에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성희롱 관련법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배미란, 2018: 22).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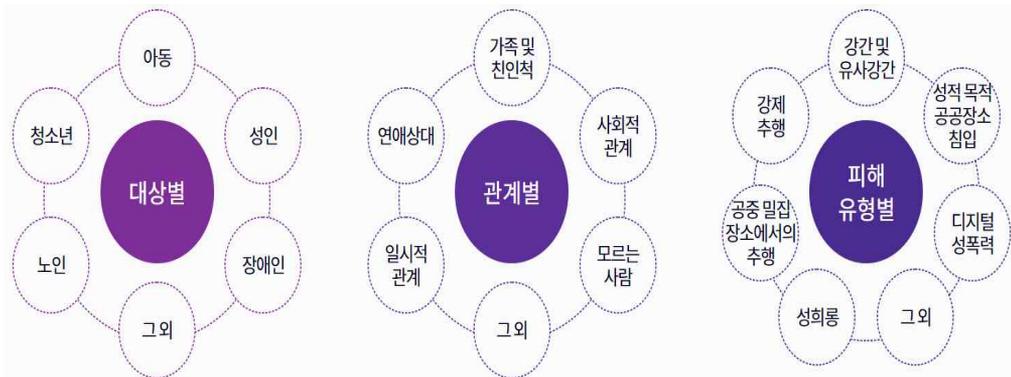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성희롱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cf)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cf)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 팩스 등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cf)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3호(과다노출)/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이러한 성폭력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그림 2-2〉 대상별, 관계별, 피해 유형별 성폭력



자료: 여성폭력 Zoom-in(<https://www.stop.or.kr/women/>) 홈페이지(2019년 8월 검색)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은 ‘해바리가센터’,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이 있으며 시설의 지원은 아래와 같다.

해바라기센터의 지원은 4가지(수사·상담·의료·법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수사, 상담, 의료, 법률, 동행서비스, 돌봄비용 지원, 의료비 지원, 간병비용 지원 등이 있다.

‘수사 지원’은 여성경찰관이 상주하고 피해자 진술조서(진술녹화)작성, 진술조력인 지원을 통한 진술조력 제공(만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 등이 있다. ‘상담 지원’은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지속상담을 지원한다. ‘의료 지원’은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의료진이 무료진료,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 등을 지원한다. ‘법률 지원’은 무료법률지원사업,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등을 지원한다. ‘동행서비스 지원’은 해바라기센터의 인력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보호자의 여건으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등이 대상이 된다. ‘돌봄비용 지원’은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성폭력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연령 제한없이 1~3급) 등에 해당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직계존비속·형제 및 자매·배우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성폭력상담소의 지원은 상담 및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세부적으로 피해자 및 가족 지속상담 등의 ‘상담지원’과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등 ‘수사·재판 절차 지원’, 전담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하는 ‘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등 지역 내 시설 연계’ 등이 있다.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그룹홈)은 크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그룹홈)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보호(숙식 및 보호 제공)’, ‘상담(입소자 상담)’, ‘수사·재판 절차 지원’, ‘의료지원서비스 연계’, ‘자립·자활 지원(입소자 자립자활교육 연계 및 취업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그룹홈)은 미소년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시 숙식 및 보호, 직업교육 등 자립 및 자활 지원을 담당한다.

더불어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은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집단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심화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장기 사례 관리도 병행하여 진행 중에 있다.

〈그림 2-3〉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자료: 여성폭력 Zoom-in(<https://www.stop.or.kr/women/>) 홈페이지(2019년 8월 검색)

3) 성매매

성매매는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광주지방법원 2006.2.13. 선고 2005고단3339판결)를 말한다.

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는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서는 성매매 행위 이외에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성매매 관련법은 헌법의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신체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4조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과 형법의 제242조(음행매개죄), 제288조(부녀매개죄) 등이 연계된다.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행위
 -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제21조(벌칙)

-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料料)에 처한다.
-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림 2-4〉 성매매 범죄의 유형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임신중절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미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등	대가를 지급받는 성매매 알선 등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방송매체 등에 공개한 경우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 소개, 알선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성매매 행위자	단순 성매매 알선 등

자료: 여성폭력 Zoom-in(<https://www.stop.or.kr/women/>) 홈페이지(2019년 8월 검색)

성매매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상담·연계, 긴급구조·보호 등 크게 2가지로 구분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연계는 1366 여성긴급전화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고, 긴급구조·보호는 성매매피해상담소, 112경찰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5가지 세부 지원체계가 존재한다. 첫째,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통해 학업 지원, 사회적응강화 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지원시설들을 통해 숙식·상담 및 치료 회복 그리고 의료·법률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을 통해 주거 지원, 자립·자활 활동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넷째, 상담소에서는 긴급구조·상담·의료·법률지원·지원시설 연계 성매매 예방 및 홍보활동 성매매 집결지, 현장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자활지원센터는 자활상담, 직업훈련·취업·진학교육·인턴십 등 자활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림 2-5〉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



자료: 여성폭력 Zoom-in(<https://www.stop.or.kr/women/>) 홈페이지(2019년 8월 검색)

4)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신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다.

〈표 2-2〉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유형	적용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1항
	유포, 재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재유포)
	유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유포협박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자료: 여성폭력 Zoom-in(<https://www.stop.or.kr/women/>) 홈페이지(2019년 8월 검색)

구체적으로 불법촬영 또는 도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일”을 의미하고, 이를 형사법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행위로서는 ① 촬영대상자 또는 촬영대상물 관리자의 양해를 얻지 않은 것과 ② 촬영행위가 핵심요소가 된다. 특히 불법촬영 등은 해당 행위 그 자체뿐 아니라 해당 기록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대상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신체의 일부분을 특정하여 촬영하거나 탈의나 입욕 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여성의 프라이버시 및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배상균, 2016: 201).

이는 최근 10년간의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를 살펴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발생비율은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성폭력범죄 중 온라인을 이용한 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크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06년에는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전체 성폭력범죄 중 23.9%를 차지하는 등 그 발생률이 매우 높다(김현아, 2017: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불법촬영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역시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4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권한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시키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촬영한 타인의 신체가 음란한 화상 및 영상에 해당될 경우,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제74조에 따라 처벌된다(박혜림, 2017: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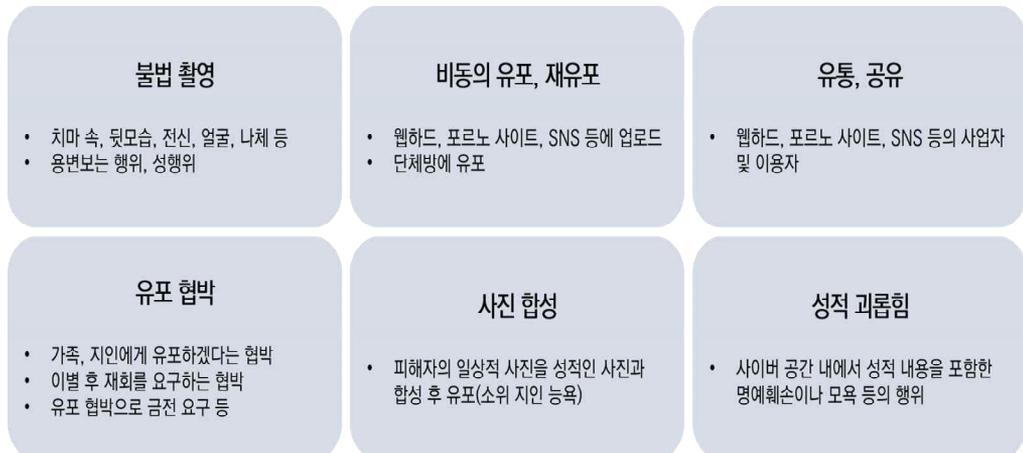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카

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결정의 자유와 성적 신체권을 말하는데, 성적 신체권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부위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고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사용유무,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③ 동 신체의 촬영행위, ④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는 구성요건을 필요로 하게 된다(김영철 외, 2016: 155).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림 2-6〉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자료: 여성폭력 Zoom-in(<https://www.stop.or.kr/women/>) 홈페이지(2019년 8월 검색)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 연계 기관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과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은 피해 촬영물이 업로드 되는 플랫폼을 찾아 삭제하고, 해당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시간은 플랫폼에 따라 평균적으로 3~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삭제 지원 결과와 모니터링 리포트를 한 달 주

기로 제공하고 있으며, 재유포 방지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해당 지원에는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5) 데이트폭력·스토킹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한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데이트폭력이다.

데이트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한국여성의전화, 2018).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아직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며, 수사실무에서는 연인 간 폭력 혹은 치정폭력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친밀한 관계 혹은 연애관계에 있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데이트 관계에 있는 남녀가 서로 간에 합의 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파트너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김구슬, 2017: 135).

다만, 데이트폭력 행위의 주체를 단지 연인관계에 있는 ‘미혼 남녀’로만 국한하여 보기는 어렵다. 학교 내에서의 데이트폭력, 직장 내 미혼 남녀 간에서도 발생하며, 결혼 후 이혼한 남녀 간 내지 부적절한 관계에서의 기혼 남녀 사이에도 발생하는 폭력도 데이트폭력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의 개념이나 범위를 단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해 범위의 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변신원, 2017: 182).

참고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의 데이트폭력 사건 피의자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데이트폭력사건으로 형사입건 된 사람은 8,367명이었고, 2014년을 제외하면 매년 7,000명이 넘는 피의자가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경찰에 형사입건된 전체범죄자 중 피해자와 애인관계인 경우를 따로 분류한 경찰청 범죄분석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살해된 총 2,038명 중 가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는 230명으로 약 11%에 이른다(경찰청 범죄분석통계).

데이트폭력은 개인의 사생활 간섭에서부터 욕설, 무시, 스토킹, 위협 등 언어적·정서적 폭력, 뺨때리기, 밀치기 등 신체적 폭력, 강제 키스 등 성폭력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자신의 핸드폰이나 이메일 등을 체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지를 의

심하는 등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속어를 남발하고, 비난, 무시, 위협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것, 상대를 밀치거나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신체적 폭력,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강제로 하거나 완력 또는 강압적인 힘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려는 등의 연인 간 성폭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 등까지 단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연인관계에 있을 뿐 일반적으로 여성폭력행위로 이해되고 있는 모든 유형의 행위가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다(배미란, 2018: 23-24).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 법령 상 젠더폭력의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범죄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등을 포함하면 그 범위와 유형은 매우 광범위하다. 또한 이러한 젠더폭력 유형은 현행법에서는 형법을 비롯하여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스토킹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건, 성관계 사실을 공개, 행동 제한 및 생활공간을 침범하는 행위 등이 있다(손문숙, 2018). 구체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에서는 지속적 괴롭힘⁷⁾을 경범죄로 정의하고 있고, 2016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스토킹 피해 유형으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함’(65.6%), ‘주거지, 근무지,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와 그 지역에 와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서 있음(47.3%)’, ‘전화, 편지, 컴퓨터 통신(SNS 포함) 등을 통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 그림, 문자 등을 보냄(43.3%)’ 순으로 나타났다(박선영, 2017: 1).

법에서 정의하는 데이트폭력은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제도가 현재 마련되지 않았으며 다만 가해자에 대하여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범죄 처벌법」, 「기타 특별 형법」에 따른 처벌만 가능하다.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한다.

7) 지속적 괴롭힘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림 2-7〉 데이트폭력의 유형



자료: 여성폭력 Zoom-in(<https://www.stop.or.kr/women/>) 홈페이지(2019년 8월 검색)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는 첫째, 112경찰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긴급상황에는 112에 신고하여 초동조치를 요구하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변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신변보호조치는 정확한 피해내용, 상해여부, 상습성 등을 검토하여 진행되므로 피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한국여성의전화, 2018). 둘째, 여성긴급전화 1366을 활용하여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내방상담을 통해 긴급피난처 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쉼터, 법류, 의료 등)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여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

범죄	명칭	특징
성폭력 등 성범죄	형법	성인 대상 단순 강간, 강제추행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 가해자 재범 방지 절차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보호 및 지원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및 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처벌, 성매매 피해자 면책 및 보호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처벌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피해자 보호, 자립 자활 지원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국가기관 등의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규정, 미실시 사업주 과태료 처벌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규정은 없음
가정 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벌절차 특례 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규정
스토킹	없음	사안에 따라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
데이트 폭력	없음	사안에 따라 형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경범죄 처벌법을 준용하여 처벌
디지털 성범죄	없음	몰래카메라 및 음란물 전송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리벤지포르노(음란물 유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 2018년 12월 24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어 2019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는 여성폭력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현재 보호되지 못하는 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료: 윤덕경(2015),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재인용

제2절 국내·외 여성폭력 관련법 고찰

1. 국내 관련법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기본법(이하 '젠더기반 여성폭력근절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현장단체 논의의 시작은 2017년 19대 대선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회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급속하게 추진하려는 가운데, 본 기본법이 제대로 된 방향과 내용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대응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같은 해 3월 젠더폭력 근절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던 6개 단위(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현장단체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공유하였고, 2017년 6월 현장단체 공동대응 단위의 첫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18년 TF를 구성하고 활동하여 결국 2018년 12월 24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약칭: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결국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5장 보칙으로 나타나 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은 법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권리와 의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계획 수립의 협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태조사, 여성폭력통계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은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 보호지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피해자 정보보호, 2차 피해방지, 여성폭력 예방교육, 홍보 등으로 구성되며,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제5장 보칙은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82개의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다. 조례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여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와 그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역연대의 설치·운영의 구성과 기능,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1년에 제정되어 최근에

개정(2017.1.5.)하여 시행중에 있는데 경상북도와 달리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상세하고 책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두어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지원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교육실적은 다음 해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는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 조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정지숙, 2018: 30).

〈표 2-4〉 서울특별시와 경상북도의 여성폭력방지 관련 조례 비교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p>제15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7.1.5.></p> <p>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5.></p> <p>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관계법령 <p>④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해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p>	<p>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5.9.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긴급보호 등 서비스 제공 사업 4.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5. 아동·여성폭력 상담소·시설 종사자 수당 및 각종 처우 개선 등 사업 6.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등 사업 7.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관련 사업 8.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료: 정지숙(2018), “경상북도 젠더폭력 실태 및 정책과제” 재인용

2. 국외 관련법

1) 유럽⁸⁾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과 관련한 대표적인 해외 법률사례로는 유럽평의회(Conseil de l'Europe)의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이 있다. 본 협약은 유럽평의회 회원국들과 그 밖의 서명국들이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모든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을 명기하고 있다.

본 협약의 체계는 총 12개의 장(Chapter)과 총 81개의 조항(Artic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 목적, 정의, 평등과 차별금지, 일반 의무」에는 제1조(정의), 제2조(범위), 제3조(정의), 제4조(기본권, 평등과 차별금지), 제5조(의무와 실사), 제6조(성인지 정책)까지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제2장 - 통합 정책 및 데이터 수집」은 제7조(일반정책), 제8조(재원), 제9조(NGO 및 시민사회), 제10조(조정기구), 제11조(데이터 수집 및 연구)까지를 포함한다. 「제3장 - 예방」에는 제12조(일반 의무), 제13조(인식 제고), 제14조(교육), 제15조(전문가 교육), 제16조(예방적 개입 및 치료 프로그램), 제17조(민간 및 언론의 참여)까지가 포함된다. 「제4장 - 보호 및 지원」은 제18조(일반 의무), 제19조(정보), 제20조(일반지원서비스)를 비롯하여 제28조(전문가에 의한 보고)까지 총 11개의 관련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가 지원서비스(제22조), 보호소(제23조), 전화 핫라인(제24조), 아동 증인 보호 및 지원(제2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 실체법(Substantive Law)」에는 제29조(민사소송 및 구제), 제30조(보상), 제31조(양육권, 방문권 및 안전)에서부터 제48조(강제적 대체 분쟁 해결 혹은 양형의 금지)까지 총 20개의 관련 조항들이 포함된다. 「제6장 - 조사, 기소, 절차법(Procedural Law)과 보호 조치」에는 제49조(일반 의무), 제50조(즉각 대응, 예방 및 보호), 제51조(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 제52조(비상사태 명령)을 비롯하여 제58조(제한 법령)까지 총 10개의 관련 조항들이 포함된다. 「제7장 - 이주와 망명」은 제59조(거주 지위), 제60조(성에 기반한 망명 신청), 제61조(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를 포함하고 있다. 「제8장 - 국제 협력」에는 제62조(일반 원칙), 제63조(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관한 조치), 제64조(정보), 제65조(데이터 보호)까지가 포함된다. 「제9장 - 모니터링 기구」는 제66조(여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전문가 그룹), 제67조(당사국 위원회), 제68조(절차), 제69조(일반 권고사항), 제70조(모니터링에 대한 의회의 개입)까지를 포함하고

8)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2011.11.5.). CETS No.210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210>

있다. 「제10장 -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에는 제71조(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가 포함된다. 「제11장 - 협약의 개정」은 제72조(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해 명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2장 - 최종 조항」은 제73조(효과), 제74조(분쟁 해결), 제75조(서명 및 발효), 제76조(가입), 제77조(영토 적용), 제78조(유보), 제79조(유보의 유효성 및 검토), 제80조(폐기), 제81조(고지)까지 총 9개의 관련 조항들을 포함한다.

2) 미국⁹⁾

미국은 1994년도 「폭력범죄 억제와 시행법(Violence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의 일부로 「여성폭력방지법(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제정하였다. 여성폭력방지 법안은 여성을 향한 폭력을 폭 넓은 영역에서 다루었으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연방법률로 정식 채택된 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 후발 국가들의 「여성폭력방지법」 제정과 국제적 법률인 ‘국제여성폭력방지법(IVAWA, Inter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여성 지위 향상에 영향력을 끼친 법률이다. 미국 「여성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성매매 등의 피해자를 위하여 민사상, 형사상전락을 재 정비 및 법적 구제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법 집행 부서, 검찰과 법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현재 이 법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 등 법 집행기관과 검찰의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STOP(Services, Training, Officers, Prosecutors)이 있으며 경찰·검찰 등의 의무체포, 의무기소 정책을 장려하는 교육프로그램, 피해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와 보호제도, 여성폭력에 관한 연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00년의 법은 데이트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 이민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을 강화하였으며, 주경계선을 넘어 피신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위험한 재판관할지역으로 돌아오지 않고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편 여성을 위한 안전거리」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 연방정부의 성범죄 처벌(Chapter 1-Federal Penalties for Sex Crimes), 제2장 법 집행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기소보조금(Chapter 2 - Law Enforcement and Prosecution Grants to Reduce Violent Crimes against Women), 제3장 공공교통 시설 및

9)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가족부(2013), “해외 가정폭력방지 법·정책 및 활동”: 9-13 내용을 요약·발췌하였다.

공원에서의 여성 안전(Chapter 3 - Safety for Women in Public Transit and Public Parks), 제4장 신 증거 규칙(Chapter 4 - New Evidentiary Rules), 제5장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Chapter 5 - Assistance to Victims of Sexual Assault)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편 여성을 위한 안전한 가정」은 가정폭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에서는 제1장 국립 가정폭력 상담전화(Chapter 1 -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제2장 주간의 법률 시행(Chapter 2 - Interstate Enforcement), 제3장 가정폭력 사건의 체포 정책(Chapter 3 - Arrest Policies in Domestic Violence Cases), 제4장 쉼터 지원금(Chapter 4 - Shelter Grants), 제5장 청소년 교육(Chapter 5 - Youth Education), 제6장 가정 폭력에 관한 지역 사회 프로그램(Chapter 6 - Community Programs on Domestic Violence), 제7장 가정 폭력 예방 및 서비스 법 개정안(Chapter 7 -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Act Amendments), 제8장 학대 피해자를 위한 기밀 유지(Chapter 8 - Confidentiality for Abused Persons), 제9장 데이터 구축 및 연구(Chapter 9 - Data and Research), 제10장 지방의 폭력 및 아동 학대에 관한 법률 시행(Chapter 10 - Rural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Enforcement), 제11장 지역 주택 교부금 보조금, 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주택 보조금과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에 관한 연구(Chapter 11 - Transitional Housing Assistance Grant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Dating Violence, Sexual Assault, or Stalking, Chapter 11 - Research on Effective Interventions to Address Violence against Women)가 있다.

「제3편 여성의 민사상 권리」는 헌법 개정안 제14조제5항과(section 5 of the Fourteen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제1조제8항(section 8 of Article I of the Constitution)에 따라 제3편은 의회의 권한으로 성에 의해 유발된 폭력의 희생자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공공의 안전,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4편 여성에 대한 동등한 재판」은 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 주 법원 판사와 사법부 직원들을 위한 교육과 트레이닝(Chapter 1 - Education and Training for Judges and Court Personnel in State Courts), 제2장 연방 법원 판사와 사법부 직원들을 위한 교육과 트레이닝(Chapter 2 - Education and Training for Judges and Court Personnel in Federal Court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제5편 관계법 개정안」, 「제6편 전국적인 스토크와 가정폭력의 감소」, 「제7편 때 맞는 이민여성과 아동보호」가 있다.

3) 영국¹⁰⁾

영국은 「가족법」의 개정(Family Law Act 1996)과 「괴롭힘 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제정을 통해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6년 7월 4일 가족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위협으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민사상의 조치를 도입하였다. 법률위원회는 복잡한 법체계와 서로 다른 관할권으로 나타나는 공백을 제거하고, 가능한 모든 보호를 제공하며, 성인들 사이의 적대감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제안하였다. 가족법을 통해 가해자를 격리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2004년 개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상 범죄(criminal offence)로 여겨, 경찰은 즉각적인 체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7년 3월 21일 「괴롭힘 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4월 8일 「괴롭힘 방지규정(Protection from Harassment(Northern Ireland) Order 1997)」을 제정하여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가정폭력, 범죄와 피해자 법(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이 제정되어 여성폭력과 범죄피해자 관련 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하였다. 이 법은 가정폭력에 관한 내용과 일반범죄에 관한 일부의 내용,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정책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실무지침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 ‘가정폭력’의 정의는 2012년 3월 8일 개정된 이후 광범위한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가정폭력 범죄행위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해악으로 인한 고통’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법의 개정 이후 영국의 가정폭력은 보다 넓은 범위의 가해행위를 포섭하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범위도 넓어졌다.

영국의 가정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실행되는 제도로 긴급전화 999가 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폭력과 폭력관련 응급상황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 보호통지·명령제도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신변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과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정부 주도로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는 지역 연대를 통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표적인 사례지역이다.¹¹⁾ 크게는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community safety partnership)을 통

10) 윤덕경(2015),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135-143;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가족부(2013), “해의 가정폭력방지 법·정책 및 활동”: 37-42 내용을 요약·발췌하였다.

한 범죄예방과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그리고 “평등한 안전(Equally Safe)”의 정책을 통해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중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1950년대 지방경찰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 치안(Community Policing) 조직을 운영하여 공동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안전을 강화하는 활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경찰과 지역 내 공동체 구성원, 지역단위의 각 주체가 협력하면서 장기적으로 범죄 예방의 필요성에 주목하게 된다.

1980년대 초반부터 경찰과 지역범죄 예방패널을 중심으로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사회적 환경 개선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다가 1988년 New Life Urban Scotland 정책이 시행된 이후 더 안전한 도시 프로젝트(Safer Cities Project)가 등장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예방보다 공동체 안전에 보다 초점을 두고 운영된 프로그램이었다. 이후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 구축과 더 안전한 도시프로젝트가 결합되었고,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협의회(The Convention of Scottish Local Authorities, 이하 COSLA)가 이를 더욱 정교화 하였다. 1998년 스코틀랜드 행정부와 COSLA, 경찰청장은 “협력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행동 전략” 문서를 발표하고, 이후 지방정부 지역사회 안전포럼은 지원과 효과적인 실천을 제공하고 공유하는 실무자의 비공식 네트워크로 형성된다. 1999년 스코틀랜드 정부는 “더 안전한 스코틀랜드(A Safer Scotland)” 지침을 통해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을 자세히 나타내고 공공의 신뢰 구축과 안전한 지역사회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community safety partnership, 이후 CSP)의 세부지침을 제안하게 되며 이는 2003년 지방정부법에 관련 규정이 포함된다. 2005년 각 지방자치단체 내의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의 네트워크인 SCSN(Scottish Community Safety Network)이 형성되어 관련 실무자들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안전 파트너십을 통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응하는 공동체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4년부터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예방 전략으로 “평등한 안전”이라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젠더폭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주목한 결과였다. 또한 COSLA와 협력하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때 평등한 안전정책이란 “스코틀랜드의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 여성과 아동이 모든 형태의 폭력과 남용에서 벗어난 사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공공영역, 사적영역, 제3섹터가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협업하여 여성과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 근절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11) 형사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2017),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선진사례 조사 국외 출장보고서(영국 스코틀랜드)” 내용을 요약·발췌하였다.

한다.

추진되는 정책의 방향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① 스코틀랜드 사회는 평등과 상호존중을 받아들이며, 모든 형태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거부한다. ② 여성과 소녀는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는다. ③ 여성폭력에 대한 개입은 조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폭력을 예방하며, 여성과 소녀의 안전과 복지를 최대화한다. ④ 남성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며, 여성폭력 가해자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받게 된다.

스코틀랜드는 2013년 불이익과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등법을 마련하여 관련 법률을 통합하였다. 나이, 장애, 성별정정, 결혼 및 동반자법, 임신 및 출산, 인종, 종교 및 신념, 성별, 성적취향으로 구분된 기존의 9개 영역이 통합된 것이다.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평등의 의무가 규정되고, 대학 역시 주요한 영역으로 평등의무 주류화(main streaming)에 관한 보고, 평등 결과 및 성과발표, 성별임금 격차 정보 게시 등의 특정한 의무를 지니며 의무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게 되었다.

4) 호주¹²⁾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의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은 가족구성원이 가정폭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동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법의 주요 목표는 신체 및 정신적 상해, 방임, 학대 등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에 대해 법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 아동을 위해 최선의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는 주별로 가정폭력 보호 명령을 수립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형법을 통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범죄법(Crimes(Domestic and Personal Violence) Act 2007)」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보호와 안전, 가정 내 폭력 방지와 감소를 위한 조항으로 구성된다. 여성폭력 철폐를 위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과 유엔아동권리보호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규정 이행에 대한 내용을 조항에 포함하고 있다. 퀸즈랜드주의 「가정 및 가족폭력 보호법(Domestic and Family Violence Protection Act 2012)」은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과 지역사회의 대응에 대해

12)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가족부(2013), “해외 가정폭력방지 법·정책 및 활동”: 63-69 내용을 요약·발췌하였다.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개념을 확장하여 경제적,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성적 학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통제하거나 힘을 가하는 행동을 가정폭력 행위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관계 유형을 규정하고 가족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intimate personal relationships), 비공식적인 돌봄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때 친밀한 관계란 이성 또는 동성커플의 약혼, 사실혼 관계, 별거, 이혼, 아이를 같이 키우는 경우, 동거, 커플이지만 따로 사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가정폭력법(Domestic Violence Act 1994)」에 근거하여 법원이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태즈메이니아주는 「가정폭력법(Family Violence Act 2004)」을 통해 법원은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경찰은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빅토리아주는 「가정폭력보호법(Family Violence Protection Act 2008)」을 통해서 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최대도로 확보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정 내 폭력을 인권 침해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방志明령(Restraining Orders Act, 1997)과 방志明령규정(Restraining Orders Regulations, 1997)에 근거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폭력방지를 위한 제도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감소 국가계획 2010-2022(The National Plan to Reduce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2010-2022)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서 여성인권의 신장과 성평등 조성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하고 사법체계 안에서 법집행의 효율성과 폭력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있다. 또한 여성과 아동폭력예방을 위한 재단(Foundation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이 2013년 출범하여 폭력을 가져오는 문화와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전국적 차원에서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지활동을 수행중이다.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두 가지 유형의 사회서비스(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위기급여(crisis payment)는 가정폭력이나 화재 등 극도의 상황에서 살던 집을 떠나야 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특별급여(special benefit)는 개인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어지는 일시적인 급여이다. 그 밖에 위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긴급전화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간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살인방지 모니터링 프로젝트 등의 정책을 운영 중이다.

5) 스웨덴¹³⁾

스웨덴 형법은 1962년 채택되어 1965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형법전(Penal Code)은 스웨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형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형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조항들은 특별법(special legislation)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형법전은 모든 범죄에 대한 조항과 범죄에 대한 제재 그리고 법의 적용 등의 일반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노먼 비숍(Norman Bishop)에 의해 처음 형법을 영어로 번역한 이후 1996년 입법 개정안들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조항들에 대해 추가적인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 추가 조항을 포함한 번역본은 이전 번역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및 1999년 5월 1일까지 형법 개정과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을 포함한 버전에서는 형법 개정안으로 채택된 법률에 대해 괄호로 묶고 해당 법의 참조 번호를 표기해 놓았다. 스웨덴 형법전의 특정 부분은 성 중립적 용어로 쓰여져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 남성적 성별 용어가 쓰이고 있다. 그러나 비록 남성성을 띠는 성 용어가 쓰였더라도 이는 여성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고 형법전 서문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쓰인 용어들의 궁극적인 의도는 성 중립을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스웨덴 형법전은 총 3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제6장 성범죄」에서 13개의 절(section)에 걸쳐 주요 성범죄 처벌에 대한 내용과 성범죄 관련 범죄들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절에서 폭력 범죄자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관련되거나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혹은 위협당한 사람이 느낄 때 급박한 위협상황을 일으키는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은 성범죄 위반의 성격과 상황판단 하에 강제 성행위에 준하여 최소 2년에서 6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 ‘강간’에 준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성교 행위는 최소한 강간죄로 형을 선고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력감이나 이에 상응하는 상태를 만드는 행위는 폭력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폭넓게 폭력을 정의하고 있다. 폭력 행위의 위협 정도나 본질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상황판단 하에 심각하지 않은 폭력 범죄로 간주될 경우 최대 4년의 징역형이 부과되지만, 범죄가 중한 경우 최소 4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범죄인지 혹은 경범죄인지에 대하여 폭력범죄를 판단할 시에 범죄가 피해자의 전반적인 삶에 위협을 가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특별한 상황판단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특별한 상황판단이란 해당

13) 스웨덴 형법전(Penal Code) 영어 번역본 내용을 요약·발췌하였다(2019년 8월 검색).

<http://www.government.se/government-policy/judicial-system/the-swedish-penal-code/>

폭력행위가 피해자의 삶에 위협을 초래했는가 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 또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켰는가, 폭력 피해를 가할 때 사용된 방법에서 특별히 잔인함이나 잔인성이 나타났는가에 대한 판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3절에서는 성적 착취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폭력 행위자의 종속 상태(state)에서 정의하는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행위로 판단될 시에 행위에 대한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무력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다른 정신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도 같은 형량이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덧붙여 피고인이 특정 무자비함을 드러내는 범죄의 경우에는 적어도 6개월에서 최대 6년간 성적 착취의 범죄로서 처벌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4절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를 한 사람, 자녀 혹은 자신이 양육을 책임지고 있거나 피해자의 공적인 결정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미성년자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of a minor) 범죄에 대한 처벌로 최대 4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에 언급한 형태의 가해자가 15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같은 형법이 적용된다. 그 행위를 한 사람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제7절에서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전에 미성년자 성범죄에서 규정된 바 이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1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 접촉을 하거나 또는 성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성추행에 대한 형벌은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불법음란물 제작을 하도록 유혹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음란 사진을 찍도록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제8절에서 불법 성매매를 자행한 자에 대한 형벌에 대하여 최대 4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3절 소결

이상에서는 여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국내·외 관련법 내용을 확인하였다.

여성폭력의 개념은 연구자들 사이에 일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그 유형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폭력은 단일 범죄유형으로 처벌되는 폭행과도 달라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라는 의미보다는 “성적 차별”을 바탕으로 한 폭력행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여성폭력의 개념은 성적 차별을 바탕으로 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을 주로 다루게 될 것이나, 성적인 폭력행위라면 그 대상을 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성폭력의 다양한 배경과 원인을 확인하였는데 첫째, 여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요소나 실업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 둘째, 경제적 불평등은 여성폭력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갈등해결을 위한 폭력의 사용은 여성폭력의 원인이 된다. 넷째, 사생활 주위에 대한 강조는 여성폭력과 연관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방조는 여성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 여성폭력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는 개인 차원, 부부와 가족 차원, 지역공동체 차원, 국가 차원 등으로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여성폭력의 주요한 구조적 원인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들과 합쳐진다고 볼 수 있다.

여성폭력의 요인은 사회 및 경제적 지위,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과거, 개인적인 행동 형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선진국에서 실시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에 의한 폭력, 낯선 사람에 의한 아동 성적 학대와 성폭행, 강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의 유형을 가정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스토킹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지원체계까지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성폭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현재 이러한 유형에 대한 지원체계와 정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다양한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의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여성폭력과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2017년 19대 대선을 기점으로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기본법(이하 '젠더기반 여성폭력근절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현장단체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이후 2018년 12월 24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약칭: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2019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결국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국외의 경우 유럽에서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과 관련한 대표적인 해외 법률사례로는 유럽평의회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이 있으며, 유럽평의회 회원국들과 그 밖의 서명국들이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모든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을 명기하고 있다.

미국은 1994년도 「폭력범죄 억제와 시행법」(Violence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의 일부로 「여성폭력방지법」(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제정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 법안은 여성을 향한 폭력을 폭 넓은 영역에서 다루었으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영국은 「가족법」의 개정(Family Law Act 1996)과 「괴롭힘 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제정을 통해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6년 7월 4일 가족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위협으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민사상의 조치를 도입하였다.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하였으며,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은 가족구성원이 가정폭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동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웨덴 형법은 1962년 채택되어 1965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형법전(Penal Code)은 스웨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형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형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조항들은 특별법(special legislation)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형법전은 모든 범죄에 대한 조항과 범죄에 대한 제재 그리고 법의 적용 등의 일반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국외의 다양한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는 주로 가족폭력에 대한 내용을 필두로 하여 그 외의 다양한 아동·여성관련 폭력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적용과 제재를 다루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아직까지 시행 이전이며, 외국의 법·제도 내용을 통해 향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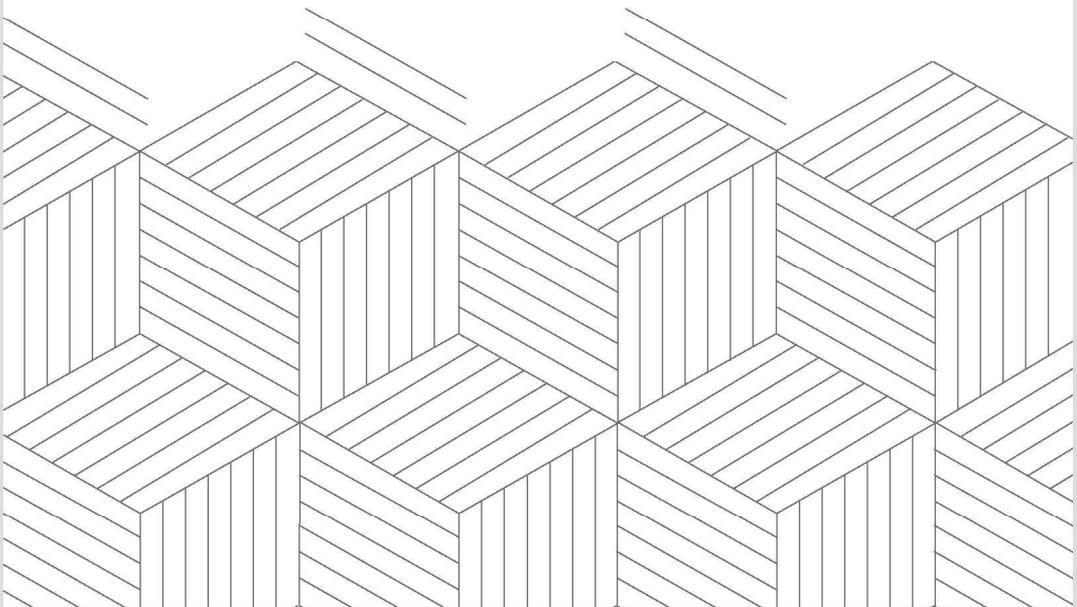
제3장

데이트폭력 현황 및 정책

제1절 데이트폭력 피해 발생 현황 및 특징

제2절 데이트폭력 관련 연구 및 정책

제3절 소결



제3장 데이트폭력 현황 및 정책

제1절 데이트폭력 피해 발생 현황 및 특징

1. 데이트폭력 피해 발생 현황

1) 전국 현황

전국 데이트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기준 7,692건으로 전년대비 1,017건이 증가하였다. 이중 가장 크게 증가한 범죄는 폭행으로 968건이 증가하였으며 상해 33건, 강간·성추행 26건 증가하였으며, 살인(미수포함) 6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4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전국 데이트폭력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계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살인 (미수포함)	강간· 강제추행
2014년	6,675	2,273	2,702	1,109	108	483
2015년	7,692	2,306	3,670	1,105	102	509

주: 2014년~2015년 통계는 범죄통계시스템 상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애인'인 범죄 중 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살인·강간·강제추행죄 등으로 산출

2018년 데이트폭력 신고 총 18,671건을 접수하여 전년(14,136건) 대비 32%(4,535건) 증가하였다. 2019년 5월과 18년 5월을 비교해보면 신고건수 1,027건, 경범죄 등 기타 64건, 주거침입 36건, 성폭력 2건 증가하였으며 폭행·상해 187건, 체포·감금·협박 60건, 살인(미수) 5건, 살인(기수) 4건은 감소하였다.

적극적 신고유도로 총 신고건수 증가, 형사 입건자 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혐의 유무를 불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상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 전국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단위 : 명)

구 분	신고 건수	형사입건(명)							
		계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살인		성폭력	주거 침입	경범죄 등 기타
					기수	미수			
2016년	9,364	8,367	6,233	1,017	18	34	224	-	841
2017년	14,136	10,303	7,552	1,189	17	50	138	481	876
2018년	18,671	10,245	7,461	1,089	16	26	99	707	847
2018년 5월	6,367	3,741	2,767	431	5	11	33	236	258
2019년 5월	7,394	3,587	2,580	371	1	6	35	272	322
전년대비 (%)	+16.1%	-4.1%	-6.8%	-13.9%	-80%	-45.5%	+6.1%	+15.3%	+24.8%

주: 2016년 이후에는 '데이트폭력 근절 TF' 처리현황을 수기 취합하여 관리 중임

2016년 기준 강력범죄의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간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연인 간 강제 추행, 방화, 살인미수 등, 살인, 강도 등의 강력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폭력범죄는 연인 간에 폭행이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상해, 손괴, 협박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경찰에 형사입건 된 전체범죄자 중 피해자와 애인관계인 경우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살펴보면, 강력범죄와 폭력범죄 모두 증가하였다.

〈표 3-3〉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애인인 경우 죄명별 현황(2014~2016)

(단위 :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애인	전체	애인	전체	애인	
강력 범죄	소계	25,065 (100.0)	713 (100.0)	25,821 (100.0)	730 (100.0)	27,071 (100.0)	799 (100.0)
	살인기수	447(1.8)	47 (6.6)	389 (1.5)	45 (6.2)	379 (1.4)	42 (5.3)
	살인미수 등	575 (2.3)	61 (8.6)	586 (2.3)	57 (7.8)	616 (2.3)	53 (6.6)
	강도	2,078 (8.3)	32 (4.5)	1,999 (7.7)	26 (3.6)	1,716 (6.3)	28 (3.5)
	강간	5,517 (22.0)	338 (47.4)	5,621 (21.8)	358 (49.0)	5,829 (21.5)	453 (56.7)
	유사강간	389 (1.6)	17 (2.4)	535 (2.1)	29 (4.0)	598 (2.2)	22 (2.8)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애인	전체	애인	전체	애인
강제추행	13,400 (53.5)	82 (11.5)	14,488 (56.1)	96 (13.2)	16,016 (59.2)	115 (14.4)
	1,193 (4.8)	46 (6.5)	686 (2.7)	26 (3.6)	521 (1.9)	21 (2.6)
	1,466 (5.8)	90 (12.6)	1,517 (5.9)	93 (12.7)	1,396 (5.2)	65 (8.1)
소계	358,275 (100.0)	7,828 (100.0)	372,723 (100.0)	9,078 (100.0)	380,965 (100.0)	11,016 (100.0)
상해	66,885 (18.7)	2,270 (29.0)	62,059 (16.7)	2,313 (25.5)	65,695 (17.2)	2,906 (26.4)
폭행	171,166 (47.8)	2,719 (34.7)	192,308 (51.6)	3,680 (40.5)	216,857 (56.9)	5,069 (46.0)
체포·감금	1,118 (0.3)	177 (2.3)	1,226 (0.3)	212 (2.3)	1,687 (0.4)	348 (3.2)
협박	5,160 (1.4)	201 (2.6)	9,197 (2.5)	416 (4.6)	16,825 (4.4)	955 (8.7)
약취·유인	252 (0.1)	5 (0.1)	252 (0.1)	4 (0.1)	305 (0.1)	9 (0.1)
폭력행위	80,113 (22.4)	1,108 (14.2)	73,002 (19.6)	1,102 (12.1)	40,963 (10.8)	109 (1.0)
공갈	3,674 (1.0)	79 (1.0)	2,930 (0.8)	65 (0.7)	3,638 (1.0)	118 (1.1)
손괴	29,907 (8.3)	1,263 (16.2)	31,749 (8.5)	1,286 (14.2)	34,995 (9.2)	1,502 (13.6)

자료: 경찰청 범죄분석통계

최근 6년 동안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 검거된 피의자가 6,675명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매년 7,000명 이상의 피의자가 검거되고 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10,303명의 피의자가 검거되었다.

〈표 3-4〉 전국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현황(2012~2017)

(단위 :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검거인원	7,584	7,237	6,675	7,692	8,367	10,303

주1: 2012년~2015년 통계는 범죄통계시스템 상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애인'인 범죄 중 상해·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살인·강간·강제추행죄 등으로 산출

주2: 2016년 이후에는 '데이트폭력 근절 TF'처리 현황을 수기 취합하여 관리

주3: 2017년 자료는 경찰청 내부자료(2018. 5. 11. 정보공개자료)

자료: 2012년~2016년 자료는 경찰청 내부자료(2017), 조주은 외(2017) 재인용

2) 경기도 데이트폭력 현황

2017년 경기도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4,747건으로 전국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14,136건의 33.6%를 차지하였다.

경기 남부의 신고건수는 3,981건이고 이중 가장 많은 신고건수는 폭행·상해 2,291건, 경범 등 1,338건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북부의 신고건수는 766건으로 폭행 519건, 경범 128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속으로 처리된 경우는 경기 남부 64명, 경기 북부 27명으로 나타났다.

〈표 3-5〉 전국 및 경기도 데이트폭력 신고접수, 입건, 구속 현황(2017)

(단위 : 건, 명)

구분		2017			
		신고건수	처리현황		
			계	구속	불구속
전국	총계	14,136	10,303	417	9,886
	폭행·상해	9,378	7,552	174	7,378
	체포·감금·협박	1,474	1,189	96	1,093
	살인	67	67	0	7
	성폭력	143	138	38	100
	경범 등	3,074	1,357	49	1,308
경기 남부	총계	3,981	1,886	64	1,822
	폭행·상해	2,291	1,403	34	1,369
	체포·감금·협박	329	204	12	192
	살인	13	13	12	1
	성폭력	10	9	3	6
	경범 등	1,338	257	3	254
경기 북부	총계	776	771	27	774
	폭행·상해	519	548	9	539
	체포·감금·협박	98	92	4	88
	살인	9	9	6	3
	성폭력	12	12	2	10
	경범 등	128	110	6	104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2018.5.11. 정보공개 자료)

2017년 경기도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남부와 북부 모두 2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30대, 40대, 50대, 1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대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전국 및 경기도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 현황(2017)

(단위 : 명)

구분		2017년		
		전국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가해자수	합계	11,380	2,054	771
	10대	315	66	17
	20대	3,873	729	249
	30대	2,868	541	179
	40대	2,276	397	168
	50대	1,625	256	130
	60대 이상	423	65	28
인구 1만명당 가해자 수 ¹⁾	합계	2.40	2.39	2.53
	10대	0.59	0.63	0.46
	20대	5.69	5.66	5.74
	30대	3.89	3.66	3.92
	40대	2.62	2.32	2.79
	50대	1.91	1.68	2.33
	60대 이상	0.40	0.42	0.44

주: 2017년 12월 말 기준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산출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2018. 5. 11. 정보공개자료)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데이트폭력 상담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 남부 590건, 경기 북부 213건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803건의 데이트폭력 상담을 진행하였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경기 남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물론 경기 남부는 인구규모가 다른 지역과 차이는 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상담건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여성긴급전화 1366 데이트폭력 상담통계(2017)

(단위 : 건)

구분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	인구 1만 명당 건수
합계	8,291	1.60
중앙(서울)	2,460	4.04
서울	1,520	-
부산	567	1.63
대구	291	1.18
인천	247	0.84
광주	317	2.17
대전	408	2.72
울산	210	1.80
경기(남부)	590	0.62
경기(북부)	213	0.63
강원	198	1.28
충북	241	1.51
충남	212	1.00
전북	89	0.48
전남	168	0.89
경북	272	1.01
경남	176	0.52
제주	112	1.70

주: 2017년 12월 말 기준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산출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18)

경기도 여성긴급전화 1366의 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 143건에서 2017년 803건으로 5.6배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기 남부는 2014년 89건에서 2017년 590건으로 6.6배 증가하여 경기도 전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은 사건발생규모에 비해 실제 신고로 이어지거나 상담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 때문에 경찰청의 검거통계나 여성긴급전화 1366의 상담통계가 데이트폭력 현황의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3-8〉 경기도 여성긴급전화 1366 데이트폭력 상담통계(2014~2017)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기 전체	143	183	339	803
경기 남부	89	145	274	590
경기 북부	54	38	65	213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8), 가정폭력 방지본부 내부자료(2014~2017)

경기 북부 데이트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기준 356명으로 전년대비 37건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상해 33건, 폭행 9건이 증가하였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3건, 살인(미수포함) 1건, 강간·강제추행 1건은 감소하였다.

〈표 3-9〉 경기 북부 데이트폭력 통계

(단위 : 건)

연도별	계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살인 (미수포함)	강간 강제추행
2014년	319	144	76	66	7	26
2015년	356	177	85	63	6	25

주: 2014년~2015년 통계는 범죄통계시스템 상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애인'인 범죄 중 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살인·강간·강제추행죄 등으로 산출

경기 북부 2018년 데이트폭력 신고 761건 접수하여 전년대비 5건 감소하였다. 2019년 6월과 2018년 6월을 비교해보면 신고건수 304건으로 60건 감소하였으며, 주거침입을 제외한 형사입건은 모두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10〉 경기 북부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단위 : 명)

구분	신고 건수	형사입건(명)							
		계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살인		성폭력	주거 침입	경범죄 기타
					기수	미수			
2016년	461	412	79	74	1	2	10	46*	
2017년	766	771	548	92	2	7	12	37	73
2018년	761	523	335	87	-	-	4	40	57

구 분	신고 건수	형사입건(명)							
		계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살 인		성폭력	주거 침입	경범죄 등 기타
					기수	미수			
2018년 6월	364	232	152	40	-	-	3	10	27
2019년 6월	304	190	122	29	-	-	1	20	18
전년대비 (%)	-16.5	-18.1	-19.7	-27.5			-66.7	+100	-33.3

주: 2016년 이후에는 '데이트폭력 근절 TF' 처리현황을 수기 취합하여 관리 중임

경기 남부 데이트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기준 2,397명으로 전년대비 54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상해는 13건 감소하였으나 이외 폭행 401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12건, 강간·강제추행 5건, 살인(미수포함) 4건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11〉 경기 남부 데이트폭력 통계

(단위 : 건)

연 도 별	계	상 해	폭 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살 인 (미수포함)	강간 강제추행
2014년	1,854	358	610	210	12	88
2015년	2,397	345	1,011	222	16	93

주: 2014년~2015년 통계는 범죄통계시스템 상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애인'인 범죄 중 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살인·강간·강제추행죄 등으로 산출

경기 남부 2018년 데이트폭력 신고 6,063건 접수하여 전년 3,981건 대비 2,082건 증가하였다. 2019년 6월과 2018년 6월을 비교해보면 신고건수 3,342건으로 779건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폭행상해 102건, 경범죄 등 기타 22건, 주거침입 15건 순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범죄부분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3년간의 통계를 보면 혐의 유무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상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국 경기 남부는 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수원시와 같이 데이트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증가하는 데이트폭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2〉 경기 남부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단위 : 명)

구 분	신고 건수	형사입건(명)						
		계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살 인	성폭력	주거 침입	경범죄 등 기타
2016년	1,575	1,106	781	158	15	25	-	127
2017년	3,981	1,886	1,403	203	13	9	97	161
2018년	6,063	1,478	1,003	155	8	6	133	173
2018년 6월	2,563	608	401	76	1	3	58	69
2019년 6월	3,342	766	503	87	3	9	73	91
전년대비 (%)	+30.4	+26	+25.4	+14.5	+200	+200	+25.9	+31.9

주: 2016년 이후에는 '데이트폭력 근절 TF' 처리현황을 수기 취합하여 관리 중임

마지막으로 수원시 데이트폭력 통계를 보면 2019년 6월 데이트폭력 신고 669건 접수하여 전년 633건 대비 66건 증가하였으며, 형사입건은 9명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신고건수는 증가하였지만, 형사입건은 폭행·상해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상당하였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수원시 데이트폭력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수원시는 경기도 중에서도 대도시로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신고·상당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3-13〉 수원시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단위 : 명)

구 분	신고 건수	형사입건(명)						
		계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살 인	성폭력	주거 침입	경범죄 등 기타
2018년	1,499	282	179	37	-	-	34	32
2018년 6월	633	100	57	11	-	-	12	20
2019년 6월	699	91	58	9	1	-	10	13
전년대비 (%)	+10.4	-9.0	+1.8	-18.2			-16.7	-35

주: 2016년 이후에는 '데이트폭력 근절 TF' 처리현황을 수기 취합하여 관리 중임

2. 데이트폭력 피해 유형 및 특징

한국여성의전화가 2016년 ‘데이트폭력 피해 당사자 지원 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데이트폭력을 크게 통제 폭력,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분류하였고 여성 응답자 총 1,082명의 61.6%가 최근 데이트에서 한 종류라도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4가지 종류의 피해 경험이 모두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1.5%나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통제 폭력 62.6%,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45.9%, 신체적 폭력 18.5%, 성적 폭력 48.8%였다. 통제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응답자 중 45.1%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을 적어도 한 번 이상 경험했거나, 거의 매일 확인하는 경우가 17.3%였다. 다른 통제 유형으로는 옷차림을 제한(36.9%)하거나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30.2%)하고 데이트 상대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경우(29.5%),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한 경우(28.5%) 등이었다. 이렇듯 통제는 드러나지 않는 폭력으로 연애 기간 중 가장 먼저 시작되는 데이트폭력이자 다른 폭력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지만 피해자들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통제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체적·심리적 학대를 행하는 것(Ronfeldt, et al., 1998)이라 정의하였으며 심리적, 신체적 폭력이 데이트폭력의 유형임을 분명히 하였다. 대체로 많은 연구자들(Beyers, Leonard, Mays & Rosen, 2000; Kuffel & Katz, 2002; 이은혜 외, 2009)은 데이트폭력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힘이나 도구를 사용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Sugarman & Hotaling, 1989). 김소영(2010)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적 폭력(physical violence)은 신체적인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는 행동으로 밀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거나 물고, 목을 조르며, 손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Riggs, O’Leary & Breslin, 1990)과 같은 행동을 포함한다.

‘심리적 폭력’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행동으로 상대방의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의미(오세연 외, 2011)하며 정서적 폭력, 정신적 폭력이라고도 한다.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욕설, 흠을 잡아 나쁘게 말하기, 소리지르기, 업신여김, 힘으로 두르고 협박하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물건을 부수거나 주변인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불합리한 소유욕이나 극도의 시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행동 등을 말하며(김소영, 2010), 업신여김은 등의 언어적 비난과 대화를 거절하는 등의 비언어적인 공격도 심리적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정서적 폭력’은 자아 존중감이나 회복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신체적 폭력의 즉각

적인 영향력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Dobash & Dobash, 1992; Kasian & Painter, 1992; Walker, 1980). Lloyd, Koval & Cate(1989)의 연구에서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의 차이점을 검증한 연구 결과와 같이 심리적 폭력도 신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신체적 폭력의 전조일 수 있다고 주장하여,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과 함께 일어날 수 있고 신체적 폭력을 추측하는데 중요하며, 데이트폭력의 징조가 된다는 부분에서 볼 때 데이트 관계 내에서 정서적인 폭력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것은 신체적 폭력의 예방과 부부폭력의 예방 수준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적 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적 행위로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동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계속 강요하거나 강요함을 의미(이은숙 외, 2014)하며, 성적 폭력의 유형으로는 강간,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음란화 등의 형태가 있다(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9). 성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보다 더 큰 병과 자극을 주고 부작용이 오래 지속되며, 성적 폭력에 관해서는 데이트 강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 ‘언어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폭언, 욕설, 인격인 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을 가하여 상대방의 심리적 혼돈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현정혜, 2006).

데이트폭력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데이트폭력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등 세 가지 유형(Beyers, et al., 2000; Kuffel & Katz, 2002; 오선영 외, 2007; 이은혜 외, 2009)으로 연구하였고,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의 두 가지 유형(신혜섭, 2007)과 신체적 폭력(서경현, 2009) 만으로 연구하였다. 대체로 경제적 폭력은 데이트폭력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아 왔다.

이윤상 외(2011)의 연구에서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부킹·채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로 포괄한다고 하였으며,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포함하였다. 이외에 김화영(2014)은 경제적 폭력에 행동 통제 유형까지 포함하여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서적 폭력과 성적 폭력, 신체 폭력이 주로 일어났다면 최근에는 인터넷 통신이 발달하며 ‘디지털 폭력’이라는 유형이 생겨났다. 일명 스토킹이라 불리는 디지털 폭력은 심각한 폭력을 수반하기 보다는 대부분 애정 행위와 불법 행위의 경계선 상에 있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 자신도 스토킹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폭력(정소영 외, 2011)으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폭력의 행위로는 SNS 친구 등에 간섭하며 위협적이고 부정적,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원하지 않는 사진 혹은 동영상을 보내라고 강요하는 등, 서로 떨어져

있어도 폭력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보거나 공유를 강요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만큼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을 경우 즉각적인 답이 없으면 위협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4〉 데이트폭력의 유형

폭력 유형	정의	행동
통제 폭력	드러나지 않는 폭력으로 연애 기간 중 가장 먼저 시작되는 데이트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 · 옷차림 제한 ·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 · 데이트상대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제로 그만 두게 하는 경우 ·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한 경우
신체적 폭력	상대방에게 힘이나 도구를 사용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거나 물고, 목을 조르며, 손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
심리적 폭력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행동으로 상대방의 자아개념을 손상시키는 행동. 일명 정서적 폭력, 정신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욕설 · 비난하기, 소리 지르기, 경시, 위협이나 협박 등 · 상대방의 물건 파손 · 주변인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불합리한 소유욕이나 극도의 질투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행동
성적 폭력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동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계속 강요하거나 강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간,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음란화 등
언어적 폭력	일체의 언어폭력을 가하여 상대방의 심리적 혼돈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에게 폭언, 욕설, 인격 모독
경제적 폭력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뺀 행동 · 금품 갈취 · 소지품을 뺀 행위 · 이별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라거나 데이트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는 행동
디지털 폭력	SNS 등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폭력, 일명 스토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친구 등에 간섭하며 위협적이고 부정적,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원하지 않는 사진 혹은 동영상 보내라고 강요하는 등 · 각종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알아 내 몰래 보거나 공유를 강요 ·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만큼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을 경우 즉각적인 답이 없으면 위협을 하는 경우

자료: 정춘아(2017), “대학생 데이트폭력에 대한 성적 자기주장성 발달과정 연구” 재인용

이러한 데이트폭력의 유형과 같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5)의 조사를 보면 데이트폭력의 피해가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물리적, 성적 피해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

〈표 3-15〉 데이트폭력 피해 유형별 피해 경험 실태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통제	1,519(76.0)
심리적·정서적 폭력 피해	703(35.2)
신체적 폭력 피해	387(19.4)
성추행 피해	710(35.5)
성폭력 피해	406(20.3)
상해 피해	135(6.8)
계	2,000(100.0)

자료: 홍영오 외(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재인용

데이트폭력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폭력을 행하는 가해자와 폭력 피해자의 성별이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점이다. 가해자의 다수가 남성인 반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다.

그리고 연인 대상 폭력 범죄는 범죄이력이 있는 이들이 다시 유사한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인대상 폭력범죄를 행한 이들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이 76.6%로 전과가 없는 이들이었던 23.3%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폭력의 가해자였던 이들이 다시 동일한 유형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인 대상 범죄자의 특성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참조할 필요가 있다.

〈표 3-16〉 연인 대상 폭력범죄(살인, 성폭력, 폭행 및 상해범죄) 범죄자의 전과

(단위: 명, %)

구분	2005년~2014년 누계	
없음	16,666	23.3
1범	9,973	13.9
2범	7,730	10.8
3범	6,378	8.9
4범	5,130	7.2
5범	4,302	6
6범	3,386	4.7
7범	2,853	4
8범	2,336	3.3
9범	12,665	17.7
미상	107	0.1

자료: 검찰청, 「범죄분석」; 홍영오 외(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재인용

데이트폭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의 특징 및 현황을 살펴보면 데이트폭력에 대한 일관된 규정이나 사회적 인식의 부재 속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 중 연인 간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점차 증가해왔다. 특히, 연인 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양상으로 살인, 폭행, 상해 등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이는 연인이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가벼운 형태의 폭력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성에게 행해지는 또 하나 폭력의 유형이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인식을 향상시키고, 이에 대한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제2절 데이트폭력 관련 연구 및 정책

1. 데이트폭력 관련 연구¹⁴⁾

1) 분노와 데이트폭력

분노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정서 중의 하나로 이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Novaco(2007)는 혐오적 사건을 초래한 사람이나 사물을 향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경험으로 보았고, Sharkin(1988)은 분노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운동적, 언어적 및 인지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내적상태라고 정의한다. 국내 연구에서는 전현숙 외(2011)이 분노에 대해 욕구좌절이나 위협과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감정으로 보았다.

분노는 역기능적인 면과 순기능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가적인 정서이다. 만약 분노가 역기능적으로 사용되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갈등상황에서 폭력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Dye & Eckhardt, 2000). 이러한 분노의 표현양상은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로 구분되어지는데, 역기능적 분노라 함은 분노표현 양상 중 특성분노의 수준이 높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의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일컫는다(이지영 외, 2010; 전현숙 외, 2011).

여러 연구자들은 분노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 분노행동의 한 형태로 폭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역기능적인 분노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인 데이트폭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Follingstad 외(1999)은 데이트 상대를 조정하고 싶어 하고 분노표현을 억제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데이트폭력을 더 자주 행한다는 결과를 보고했으며, Leonard & Senchak(1993)은 연인관계에서 특성분노가 높을수록 폭력경향성이 높아짐을 밝혀냈다.

한편, 국내에서의 역기능적 분노와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경현(2002)의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특성분노와 분노표출이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특성분노와 분노표출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지연 외(2007)의 연구에서도 특성분노와 분노표출이 데이트폭력과 유의한 정

14) 본 내용은 김정내(2018), “대학생의 데이트폭력과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 내용을 토대로 요약·발췌하였다. 특히 본 내용에서는 데이트폭력의 원인을 분노, 음란물노출, 성역할고정관념, 폭력허용도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이 나타나는 원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화숙(2018), “대학생의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 조절효과” 내용을 토대로 데이트폭력의 원인을 가정폭력, 학교폭력, 젠더감수성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이 나타나는 원인을 확인하였다.

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분노억제와 데이트폭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특성분노 수준이 높고, 분노를 외부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데이트 갈등상황에서 폭력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경현, 2009)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 특성분노 수준이 높았고, 분노표출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양난미, 2009)에서도 특성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수준이 높았다. 한편, 김시원 외(2012)의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분노가 데이트폭력 가해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2) 음란물노출과 데이트폭력

음란물(pornography)이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매춘(Prostitute)을 의미하는 porne와 쓴다(Write)는 것을 의미하는 graphein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성적 흥분이나 자극을 유발하기 위하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는 인쇄매체, 영상매체 등을 통한 성적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다(장석현, 2001).

이러한 음란물은 영상, 사진, 애니메이션, 소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존재하고 있다. 음란물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분류는 시대와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화해 왔으나, 음란물의 일반적 정의는 일차적으로 성적 흥분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적 내용(성적 행위 또는 신체 일부)의 다양한 매체자료(잡지, 비디오, 케이블 TV, 인터넷 등)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위 개념으로 이용된다(Kingston, Malamuth, Fedoroff & Marshall, 2009). 국내에서는 조성택(2006)이 음란물에 대해 사람들에게 성애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진 매체 혹은 성적 경험을 위해 사용되는 표현물로 정의 내렸다. 이러한 음란물은 크게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와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피를 통틀어 말하며, 표현의 노골성과 폭력성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어 많이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에는 폭력적 성표현물, 비폭력적이지만 인간의 지위와 품위를 손상시키며 혹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을 표현하는 성표현물, 아동 포르노그래피, 그 밖의 일반적인 가치관에 배치되는 수간, 근친상간 등의 표현물이 해당되는 반면,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피에는 나체, 성기노출이 없는 비폭력적 성표현물, 성기노출이 포함된 비폭력적 표현물이 해당된다(이성식, 2003).

과거에 음란물은 TV나 비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유통되고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대중매체 이외에도 컴퓨터가 보급되고 발달되면서 인터넷은 음란물이 전송되는 주요매체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이정운 외, 2003).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되는 음란물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며, 인터넷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료에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점과 함께 지속적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TV, 비디오,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급되는 음란물에 접촉되는 것은 청소년은 물론 성인 모두에게 성에 관하여 왜곡되거나 편협한 사고를 심어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음란물접촉과 음란물에 대한 지각된 현실감은 후에 실제 성행동이나 개인성향 및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정세진, 2012).

음란물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술적 주된 관심은 음란물 이용과 성범죄의 관계였다(윤정숙, 2015). 연구자들이 음란물 이용과 성적 행위의 잠재적인 연관성 특히 성범죄의 관계에 대해 증거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은 공공정책 실행 및 입법뿐 아니라 범죄자들의 평가와 교정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Kingston 등, 2009). 음란물 이용과 성범죄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에서는 음란물 이용이 성과 관련된 범죄를 예측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범죄 행위의 위험요인인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나 비인간적 섹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남성들 중 음란물을 자주 사용했던 사람들은 음란물을 자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적 공격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alamuth, Addison & Koss, 2000). 또한 장기간의 음란물접촉은 여성에 대한 폭력수용을 증가시키고(Malamuth & Check, 1981), 여성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켰다(Donnerstein & Berkowitz, 1981).

국내에서도 음란물과 관련해서는 주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음란물에 대한 접촉과 폭력행위 및 성폭력 등의 관계에 대해 다룬 연구들(김재엽 외, 2010; 김재엽 외, 2015; 윤정숙, 2015)이 대부분이고 음란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극히 드문 실정이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을 통해 음란물에 대한 인식과 데이트폭력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성식(2004)의 연구에서는 음란물에 빈번히 접촉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성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정세진(2012)의 연구에서도 음란물접촉 증가는 음란물 내용에 대한 지각된 현실감을 높여 강압적 성행위 욕구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인터넷 음란물 이용으로 인한 강압적 성행위에 대한 욕구 증가가 성적 폭력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김재엽 외, 2010).

구혜영(2017)의 연구에서도 음란물노출, 즉 음란물에 대한 지각된 현실감이 데이트폭력에 대한 허용도에 영향을 미쳤고,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허용도는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쳤다(신혜섭 외, 2005). 한편, 성범죄자 중 성범죄비행 직전에 아동음란물을 보았다고 보고한 사람이 16%에 달했으며, 불법음란물 사용이 주로 성과 공격성 관련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었다

(윤정숙, 2015).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음란물 이용 후 음란물에 대한 지각된 현실감 수준이 강간통념과 성적 폭력을 포함한 공격적 행동의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음란물을 접하고 난 뒤 실제 성폭행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살펴보면, 음란물 이용은 단지 성에 대한 인식과 사고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정세진, 2012). 대학생 시기는 이성교제가 본격화되고 이성간의 실질적인 성행위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특성상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Levy, 1991) 음란물노출은 데이트폭력의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하게 한다.

3) 성역할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성역할이란 개인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그 개인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특징짓는 일련의 특성을 말한다. Thompson(1975)은 성역할고정관념을 사회적 관점으로 그 사회가 생물학적 성에 따라 정해 놓은 태도나 행동양식에 비추어 자신이나 타인을 보려는 시각으로 설명하였고, 서영숙(1986)은 같은 문화권의 모든 남녀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고정적인 견해 및 그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한국의 성인 남녀에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선정하여 성 고정관념 척도를 구축한 김동일(1993)은 성 고정관념에 대해 남성이나 여성을 인지 또는 평가할 때 그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단지 생물학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적 혹은 여성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상대적으로 경직되고 과잉 단순화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성역할은 특정한 문화권 내에서 여성은 여성의 역할에 적합한 사고, 태도, 행동양식을 가지고 남성은 남성의 역할에 적합한 사고, 태도, 행동양식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정화, 2006). 때문에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성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성역할고정관념은 연구자마다 다소 용어를 달리하여 성 고정관념,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가부장적 성 고정관념, 가부장적 태도, 전통적 성역할 태도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성역할고정관념은 한 사회 내에서 그 사회가 생물학적 성에 의해 정해 놓은 태도나 행동양식에 비추어 자신이나 타인을 보려는 시각으로 정의하며, 가부장적인 성역할고정관념을 의미한다.

성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남성과 여성의 성에 관한 편견을 갖게 하여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사회적으로 남성이 더 인정을 받고 그에 따른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더 비난을 받는 영향으로 인해 성 고정관념에 있어서 남성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김기홍, 2017; 좌현숙, 2011). 성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청소년기 남학생에게는 비행과 일탈행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성인기 남성에게는 성폭력을 포함한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정익중, 2005; Bernard, Bernard & Bernard, 1985). 또한 여성성의 사회적 고정관념은 여성의 교육적, 직업적 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저항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많은 피해를 양성한다(Worell & Remer, 2003).

성역할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녀관계에 있어서 남자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하며 여자는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강조하는 가정환경이 자녀의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신성자, 1997). 전통적 성역할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었는데, 먼저 Lichter & McCloskey(2004)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성역할 신념이 데이트폭력 가해와 상관성이 있었고, Bernard, Bernard & Bernard(1985)의 연구에서도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상대에게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 행동을 더 많이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elly(1987)는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데이트 관계의 두 사람이 동의의 관계가 아니라 불균형적인 힘의 관계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행해진 압력과 강제라고 보았으며, Muehlenhard & Linton(1987)도 남성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는 남자가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성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오세연 외(201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데이트 상대자의 강압에 못 이겨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낙하거나 생활에 대한 감시 및 간섭을 받고 심한 욕설과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며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스킨십 및 성관계를 강요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 대상의 한 연구에서는 신체적 데이트폭력의 가해 및 피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이 미경험자보다 가부장적인 성역할고정관념이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다(서경현 외, 2010).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성역할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사회에는 가부장적인 요소가 짙고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직도 잔존해 있기 때문에(김경신 외, 1999) 성역할고정관념은 한국인의 데이트폭력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예측된다.

4) 폭력허용도와 데이트폭력

폭력허용도는 폭력을 바라보는 태도의 하나로, 폭력을 허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 신소라(2017)는 폭력허용도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폭력의 사용이 정당한가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폭력의 사용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허용도라 함은 데이트폭력을 이성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를 말하며, 데이트폭력 위협에 대한 이해 및 인지 수준 혹은 그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구혜영, 2017).

구혜영(2017)은 데이트폭력허용성을 데이트폭력의 유형 및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그 각각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갖는 허용성으로 하위구성요소로 설명하였다. 하위구성요소는 정서적 신체적 성적 데이트폭력허용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서적 데이트폭력허용성은 심리내적인 역동을 다루고, 신체적 데이트폭력허용성은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적인 측면을 다루며, 성적 데이트폭력허용성은 좀 더 강한 의사와 동의를 필요로 하는 성적인 측면의 허용성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데이트폭력허용성은 데이트 도중 주고받는 무시와 비난으로 상대방의 자아개념을 손상시켜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이성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를 의미한다(김유정, 2008). 신체적 데이트폭력허용성은 데이트 도중 고통이나 상해의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신체적 무력 및 도구의 사용에 대해 이성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를 의미한다(구혜영, 2017). 성적 데이트폭력허용성은 친밀감이 있는 이성과의 계획된 만남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나 강요, 조종 및 협박, 폭력 등에 의해 행해지는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당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적 행동에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이 포함된다(유선영, 2000). 폭력허용도가 중요한 이유는 폭력허용도가 실제 폭력을 받아들이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감정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폭력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갖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하였다(김예정 외, 1999; 신혜섭 외, 2005; 이은숙 외, 2014; 장희숙 외, 2001; 정소영 외, 2011; O'Keefe, 1997). 신혜섭 외(2005)의 연구에서는 폭력허용도가 이성교제 폭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Foshee 외(2001)의 연구에서도 데이트폭력을 허용하는 태도가 남성의 데이트폭력의 가해를 예측하였다. 또한 Gray & Foshee(1997)의 연구에서는 폭력을 사용한 청소년들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폭력에 대해 더 관대한 태도를 가졌으며, 이러한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실제 폭력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크게 작용하였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대학생들의 신체적 폭

력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확인되었고(김예정 외, 1999; 김정란, 1999; 신혜섭, 2007; 장희숙 외, 2001),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언어폭력 증가를 보고한 연구(정소영 외, 2011)도 있다.

한편, 신혜섭(2007)은 데이트폭력의 가해경험만 있는 집단과 데이트폭력 가해피해 모두 경험한 집단에서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예측변수임을 보고했으며, 정혜정(2003)의 연구에서도 폭력사용 기대 및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의 가해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폭력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폭력에 대해 받아들이는 이러한 태도는 폭력의 대상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높아진다. 특히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폭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폭력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긍정적인 한 방법이라 믿게 되므로 폭력의 악순환이 예상된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의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폭력허용도는 데이트폭력의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데이트폭력의 원인이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수원시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데이트폭력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폭력의 대물림은 사회학습이론으로부터 비롯된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에 의해서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가장 많은 모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부모 간 폭력행동을 사용하는 것을 자주 목격할수록,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방식으로 폭력을 받아들이며 모방하게 된다.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은 경우 자신이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폭력행동을 사용하여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다(Bernard & Bernard, 1983).

아동기 학대경험이 많은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공격해도 무방하다는 무언의 규칙을 갖게 되고 이후 유사한 다른 상황에서 아동기에 관찰한 행동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신혜섭, 2006). 이는 장희숙(2002), 신혜섭 외(2005)의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으며,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유선영, 2000; 현정혜, 2006)과 데이트폭력 가해경험(김소영, 2010; 사공은희, 2007; 이병도, 2011; 장희숙, 2002; 최지현, 2005)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가정폭력의 경험이 데이트폭력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아동기 부모 간 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데이트폭력이 더 많이 행해지고 있고(김소영, 2010; 안귀여루, 2002; 최지현, 2005), 특히 부모 사이의 폭력 목적은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다(김소영, 2010; 정혜정, 2003).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간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하기도 하였다(Stes & Pirog-Good, 1987; Riggs & O'Leary, 1996; 신혜섭, 2006 재인용). 또한 성장기에 부모가 서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였거나, 어느 한쪽 부모가 배우자를 가해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 부모로부터 체벌 또는 폭력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성교제 시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nard & Bernard, 1983; Laner & Thompson, 1982).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정폭력의 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거나, 부모 간의 가정폭력 목격 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폭력을 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특히 부모 간 폭력에 대한 피해 및 목격 경험은 성인이 된 후 데이트폭력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서경현, 2004; 신혜섭 외, 2005; 현정혜, 2006; O'keefe, 1998), 부모 간에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빈번도가 높을수록 아동은 대인예민성과 같은 사회기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Rosenberg, 1965)으로 보고되고 있다.

Riggs & O'Leary(1989)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과의 관계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데이트폭력의 실행수준이 높았으며 폭력의 세대 간 대물림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Walker(1980)는 원 가족 내에서 가족구성원 간 폭력과 통제를 경험한 여성이 현재에서도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Murphy(1988)는 데이트폭력의 피해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가족에서 성장할 확률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Rada(2014)의 연구에서도 데이트폭력을 가해한 응답자의 35%는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였고 53.7%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 간 가정폭력을 목격한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후 다시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연구결과(김소영, 2010; 사공은희, 2007; 이병도, 2011; 장희숙, 2002; 최지현, 2005)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6) 학교폭력과 데이트폭력

청소년의 폭력을 설명하는 사회학습이론에서 인간의 공격성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행동처럼 자극 강화 및 인지적 통제에 있는 학습된 행위로, 관찰과 모방으로 학습이 가능하며 강화

를 받을수록 더욱 자주 발생한다고 보았다(Bandura, 1973). 청소년의 경우 다른 사람의 폭력 행위를 관찰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폭력행위의 기술을 습득하고 폭력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감퇴되어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 없이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특히 학교폭력에 있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데 가해학생은 학습을 통해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피해학생은 폭력의 피해자가 되면서 동시에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습득하게 되어 다른 학생에게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난주, 2013). 사회학습이론에서 관찰 학습(observational learning)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받은 강화과정을 보았을 때 일어나며 이 과정을 대리적인 보상 혹은 대리적인 경험이라고 한다(Bandura, 1997).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청소년들은 점차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들에게 주된 사회적 환경은 가정보다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청소년기의 주된 학습장소가 될 수 있어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된 채 성장한 피해자는 폭력의 피해와 사용방법을 익힘으로써 더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늘어나게 된다.

폭력적인 환경에 대한 노출 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고(O'Keefe, 1997) 형제, 자매, 친구, 학우들과의 폭력 가해경험이 데이트폭력과 관계가 있으며(Spencer & Bryant, 2000), 친구와의 신체적 폭력경험이 데이트 상대에 대한 폭력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지혜, 2015; 사공은희, 2007; Cleveland, Herrera & Stuewig, 2003; Schnurr & Lohman, 2013).

사공은희(2007)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의 신체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일수록, 교제기간이 길수록,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신체적 폭력 가해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즉, 친구들과 여러 형태의 폭력을 사용하거나 피해 경험이 많은 사람은 폭력적인 상호작용에 익숙해져서 이성교제 관계에서도 폭력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어 결국 폭력의 가해자가 되기 쉽다(김예정 외, 1999)는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데이트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학교폭력의 경험이 단기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감정들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자주 학교폭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나아가 이성교제나 결혼생활에서도 곤란을 겪게 된다(문지혜, 2015; 사공은희, 2007)고 보았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경험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폭력 당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 이성교제 상대자와의 관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성장기 폭력 경험인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경험이 데이트폭력 행동에 대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젠더감수성과 데이트폭력

젠더감수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이 개념적으로 구분될 뿐 아니라 성별체계가 사회문화적으로 권력화되어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홍미리, 2005). 젠더감수성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성 고정관념에 의하여 억압되어진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하는 연습'으로 확장시키기도 한다. 젠더감수성은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성별이 체계적으로 권력화되어 구성되었다는 것을 감성적으로 느끼는 과정이며, 연습을 통해서 억압된 자신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은 젠더감수성을 확장하면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조옥라, 2003). 따라서 젠더감수성은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가는 과정이면서 상상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홍미리, 2005).

Thompson & Mcgovern(1995)은 만연한 성차별주의를 의식하고 확장된 젠더감수성을 창조함으로써 비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젠더감수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주체의 의지가 개입하여 창조하는 과정인 것이다. 위계적인 성역할로 가득 찬 남녀관계에서 여성이 젠더감수성을 확장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일상생활에 만연한 차별적인 경험들이 드러날 수 있고, 젠더감수성을 확장함으로써 성별권력관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홍미리, 2005).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며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폭행이 발생하고 난 후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에 따른 피해자의 용서, 이후 또다시 폭행이 가해지는 패턴'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상습폭행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이별 후에도 발생하는 스토킹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잔인한 사건으로 나아가는 심각한 형태를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유사하다 하겠다(박현정, 2015).

이러한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폭력에 대한 인식과 데이트폭력문화와 그 처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부족으로 기인하고 있으며, 부부폭력이나 데이트폭력 관계는 위계적인 성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폭력의 피해자가 폭력관계 발생단계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역할에 저항한다면 쉽게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젠더에 기반한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에 있어 아내의 성역할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게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성별에 따른 차별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무조건 수용하게 된다면 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2013년 미국의 성불평등지수(GII)를 활용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수준의 남녀불평등과 폭력과의 관계를 페미니즘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한 연구(Gressard, Swahn & Tharp, 2015)에 의하면 젠더지배적인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자에게서 데이트폭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부관계나 데이트 관계에서 위계적인 성역할이 수행되는 일상은 지배하고자 하는 힘과 저항하고자 하는 힘이 공존하는 공간이며, 이들은 성별체계에 맞서면서 젠더감수성을 확장시키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권력관계 내에서는 피해자가 성별권력관계에서 피지배자가 되어야 하는 취약함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폭력을 성별권력의 문제로 해석하고 이를 인식하는 것은 곧 젠더관계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젠더감수성과 여성의 저항이 정적인 상관을 가지며 상호 순환(홍미리, 2005)한다고 볼 때 일상에 뿌리내린 성별권력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일은 데이트폭력 이후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폭력의 순환을 끊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데이트 관계에서의 젠더에 의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이동하여 젠더감수성을 회복하는 것은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데이트폭력 관련 정책

1) 관계부처 합동(중앙정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¹⁵⁾

정부는 2018년 2월 22일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¹⁶⁾

이러한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처벌)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현장)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지원)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인식)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부처별

15) 본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2월 22일 발표된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라는 보도자료를 요약·발췌한 것이다.

16)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스토킹 피해는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으로 증가하였고, 데이트폭력은 2014년 6,675건에서 2016년 8,36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02. 22).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02. 22).

이에 따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우선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고자 하였으며,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등을 취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시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하였다.¹⁷⁾

다음으로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 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 등에 관련 사례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경찰청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였다.

우선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였다.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신고접수(112)·수사(형사·여청) 등 각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스토킹 처벌법’ 제정 후),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 간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18’를 가동하여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였다. 특히,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또는 7~8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등과 같은 계기에 데이트폭력 대응태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¹⁹⁾ 또한 지구대, 여성·형사 등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초동조치 등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현장 출동 시 가·피해자를 격리 후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여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 조치를 실시하며,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

17)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 피해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8) TF팀은 형사·여청·청문 등 연계 팀으로 현재 254개 팀 3,822명 수준이다.

19) 실제 2017. 7~8월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결과 39일간 총 2,407건 신고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1,658명 형사 입건되었으며, 2017년 상반기 월평균(신고 959.5건, 형사입건 760.1명) 대비하여 신고 93.0%, 형사입건 67.8% 증가하였다.

토킹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은 피해내용·상습성·위험성·죄질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수사하여 구속 등 엄정 대처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해 권리고지 및 신변보호를 강화하였다. 경찰관이 모든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서’(관련절차, 지원기관 등 수록)를 서면교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고지를 강화하였다. 한편, 맞춤형 신변보호를 위해 핫라인 구축 이외에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을 실시하고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였다.

셋째,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우선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하여 상담·일시보호·법률상담·치료회복 프로그램·심리치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 전문상담소에서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하여 주고자 하였다.²⁰⁾ 1366센터와 경찰서가 협업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운영하고 통합상담소(20개소), 성폭력상담소(104개소), 가정폭력상담소(83개소)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특히, 통합상담소를 거점으로 집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²¹⁾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하여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였다.²²⁾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4개소) 등을 통해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상반기 중 체계적인 전문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매뉴얼’을 마련하여 각 상담소 등에 배포하고, 하반기부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과정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하였다.

넷째,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확대하였다. 공공부문 성폭력·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기에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완하

20) 인터넷,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에 대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하고자 하였다.

21) 본적으로 7일간 이용 가능하며, 피해자가 원하고,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다.

22) 법무부에서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 60개 기관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고,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 등에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였다. TV 강연, 공익광고 송출, 드라마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아울러 주요 포털과 연계해 카드뉴스, 온라인 이벤트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 등을 계기로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이것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림 3-1〉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개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브리핑 자료

2) 데이트폭력 법·제도²³⁾

데이트폭력에는 별도의 법적 제재장치가 없어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 폭행죄, 상해죄, 체포·감금죄 등에 근거하여 통상적인 폭력 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 보호법」²⁴⁾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²⁵⁾에 근거하여 스마트위치(위치확인장치)와 신변보호조치 요청, 그 외 112시스템 ‘데이트폭력’ 코드 활용 및 112 긴급 신변보호대상자 등록, CCTV 설치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이라는 특수성이 가해자 처벌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며, 기존의 법률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 폭력이 은밀한 영역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심리적 이유 등으로 피해 직후에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범죄의 입증이 어렵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행위들의 허용·승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할지 모호하여, 가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하면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김구슬, 2017: 133-173).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책을 목적으로 관련된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데이트폭력 관련 제도화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2017년 8월 8일 표창원 의원 등이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2017년 11월 1일 신보라 의원 등이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새롭게 발의하였으며, 2017년 12월 11일에는 박남춘 의원 등이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7년 12월 18일에 함진규 의원 등이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차 발의하였다.

아래의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창원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인적 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로 파악하여 한데 묶어 규율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표창원 의원 등은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가해행위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률을 제안하였다.

23) 본 내용은 정혜원(2018), 「경기도 데이트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를 요약·발췌한 것이다.

24)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25) 제13조(신변안전조치)

〈표 3-17〉 데이트폭력의 입법 추진 현황

의안명/의안번호	제안일자	발의자/제안자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8429)	2017. 8. 8.	표창원의원 등 24인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9973)	2017. 11. 1.	신보라 의원 등 11인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9972)	2017. 11. 1.	신보라 의원 등 13인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10755)	2017. 12. 11.	박남춘 의원 등 12인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10900)	2017. 12. 18.	함진규 의원 등 10인

자료: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gsltpald=PRC_X1Y7Q1U2K1R8X1S6V2N7Y5Z6Y4M3G7

주요내용으로는 피해자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법안 제8조), 사건의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사실을 조사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법안 제9조), 범행재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법안 제10조) 등이 있다.

그 밖에도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법안 제3조),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를 알게 된 자의 신고 의무(법안 제7조), 불이익처우금지(법안 제11조)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임시조치 불이행 및 불이익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법안 제16조)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법안 제17조)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신보라 의원은 2017년 11월 1일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데이트폭력을 초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재발률이 높고 강력 범죄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의 발생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범행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 현장조치를 취하도록 하며(법안 제4조제3항), 범행재발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격리·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경찰은 임시조치의 청구를 검찰에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도 있으며(법안 제6조, 제7조),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법안 제17조) 등이다. 그밖에 신고의무(제4조제1항), 신속한 사건처리(법안 제5조),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법안 제11조),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감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병과 (법안 제21조), 보호명령 등 불이행에 대한 처벌(법안 제22~제24조)과 임시조치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법안 제25조)을 두고 있다.

박남춘 의원 등은 2017년 12월 11일에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우리사회에서 데이트폭력 범죄의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속성상 기존의 형사법체계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데이트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과 체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매우 유사하다.

함진규 의원 등은 2017년 12월 18일에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최근 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현행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트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아래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데이트폭력 범죄를 신고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데이트폭력행위의 제지, 데이트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등의 현장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며(안 제4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 등의 신청으로 피해자를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신변경호, 수사기관에의 출석·귀가 시 동행,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의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5조). 검사는 데이트폭력 범죄 재발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판사는 데이트폭력 범죄사건의 원활한 공판진행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데이트폭력 행위자를 피해자의 방실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9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데이트폭력 행위자에 대한 데이트폭력 범죄경력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데이트폭력 범죄경력 공개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1조). 마지막으로 임시조치 불이행이나 데이트폭력범죄경력의 공개 등의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다(안 제14조)등이 담겨져 있다.

위 5개 법안들의 실질적인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공통적으로 범죄의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에서 데이트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범주 안에서 다뤄진다(김구슬, 2017). 1994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은 피해자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는 가정폭력, 성폭

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이 모두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성소수자 및 남성 피해자도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텍사스주는 2001년 가정폭력의 개념에 데이트폭력을 포함시켰고, 메사추세츠주는 2010년 보호처분의 적용범위에 성폭력피해자와 스토킹피해자, 데이트폭력피해자 등 가족관계가 아닌 일반 성폭력피해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등 점차 그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2013년 3월 7일,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여성폭력방지법개정안」(The Violence Against Women Reauthorization Act of 2013)에 서명을 함으로써 법률로 재승인되어 2014년 3월 7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조치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고 광범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의 현행법제에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경찰에 의한 적극적 체포(pro-arrest policy)와 보호명령(protection order)이다(김구술, 2017).

미국에서는 미네아폴리스 실험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적극적 체포가 널리 확산되었다. 미국의 각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체포방식은 의무체포, 우선체포, 임의체포 3가지가 있다. 의무체포는 일정한 가정폭력범죄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모든 사건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영장 없이도)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하도록 경찰에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체포의 구체적 요건은 각 주의 규정마다 조금씩 다르다. 우선 체포는 경찰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체포를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임의체포는 일정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경찰은 영장 없이도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 미국은 법률로 의무체포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주는 알래스카, 애리조나, 워싱턴 DC, 메인, 네바다, 뉴저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콜로라도, 위스콘신 주 등 약 20곳이 넘는다. 우선 체포나 임의체포를 규정하고 있는 주에서도 법령의 요구와 무관하게 보다 강제적인 체포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피해자의 구제를 전제로 고안된 제도이지만 현재는 데이트폭력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 등의 피해자들을 즉각적으로 구조하고 가해자에 의한 폭행, 학대, 상해, 스토킹,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금지 기타의 명령을 의미한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특정한 혹은 그의 주거지, 직장 또는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접근금지), 메로,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꽃이나 선물배달과 같은 모든 유형의 연락을 금지할 수도 있다(연락금지). 그리고 법원은 또한 가해자에게 누군가를 해치거나 협박하지 말도록 요구할 수 있다(학대중단), 그 밖에 피해자보호를 위한 명령의 일부로서 부가되는 자녀양육권, 방문권, 치료,

구제 등에 관한 명령 역시 보호명령 개념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법 규정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영국에서 데이트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 혹은 가정폭력의 범주에서 함께 논의된다. 2012년 영국정부는 가정폭력의 정의를 확대하여 ‘사회적·생물학적 성별에 관계없이 가족구성원 또는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s)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16세 이상인 자 사이에서 행해진 통제, 강압 또는 위협적 행동, 폭력 또는 학대를 의미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법률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사이에서의 폭력도 가정폭력에 곧바로 포함된다. 영국은 2010년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종결 호소’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여기에는 폭력예방, 피해자지원, 연계활동, 가해자에 대한 사법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방지 정책도 이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으로서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와 가정폭력보호통지(DVPN: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Notices) 및 보호명령제도(DVPO: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s)를 시행함으로써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사전예방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김구슬, 2017).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의 주된 목표는 가정폭력의 전과가 있는 B의 새로운 파트너 A가 B의 과거 전과를 인지한 상황에서 B와 관계를 유지할지 여부 및 어떤 관계를 맺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개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이 위험도의 측정은 A를 보호하고 잠재적 피해의 단계를 알려주기 위해 필요한 실무조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가정폭력보호통지 및 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조치를 즉각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가정폭력피해자가 신변안전조치가 수일 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지점을 2014년 3월부터 개선 시행하고 있다.

제3절 소결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다양한 통계 및 특징 그리고 데이트폭력 관련 법·제도를 확인하였다.

우선 전국 데이트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364건, 2017년 14,136건, 2018년 18,671건으로 데이트폭력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경범죄 등 기타의 형사입건은 증가하고 살인, 성폭력, 주거침입 등의 범죄는 감소하였다. 이는 적극적 신고유도로 총 신고건수가 증가되고, 형사 입건자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는데, 결국 ‘범죄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상담’하여 나타난 통계로 판단된다.

또한 2016년 기준 강력범죄의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간의 비중이 가장 높고 연인 간에 강제추행, 방화, 살인미수 등, 살인, 강도 등의 강력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폭력범죄는 연인 간에 폭행이 가장 비중이 높고 상해, 손괴, 협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데이트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증거이며, 지난 3년간 경찰에 형사입건된 전체범죄자 중 피해자와 애인관계인 경우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살펴보면, 강력범죄와 폭력범죄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데이트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7년 경기도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4,747건으로 전국 데이트폭력 신고건수의 33.6%를 차지하였으며, 경기도 데이트폭력 관련 가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많고 30대, 4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20대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며 20대 이상의 데이트폭력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남부는 경기 북부에 비해 데이트폭력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순한 인구수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도시화 등으로 인한 문제도 수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기 남부와 수원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의 데이트폭력 상담통계를 보면 경기도의 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통계는 2014년에 143건이었던 데이트폭력 상담통계가 2017년 803건으로 거의 5.6배정도 증가했으며, 또한 경기 남부는 6.6배 증가하여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데이트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인식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폭력이라는 인식의 전환 또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인터넷 통신이 발달하여 ‘디지털 폭력’이라는 유형이 생겨났으며, 일명 스토킹이라 불리는 디지털 폭력은 심각한 폭력을 수반하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

이 강한 폭력으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은 여성에게 행해지는 또 하나 폭력의 유형이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외 데이트폭력에 관한 연구는 분노, 음란물노출, 성역할고정관념, 폭력허용도, 가정폭력, 학교폭력, 젠더감수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데이트폭력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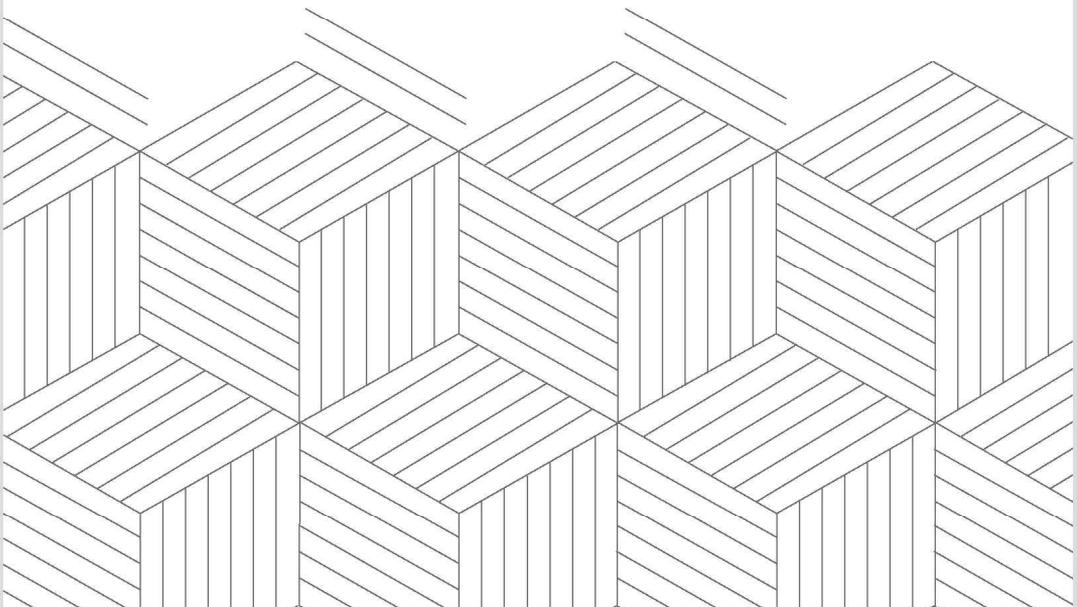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정부는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첫째, 법무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경찰청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였다. 셋째,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그리고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이러한 정책이 나타난 이유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것이며, 이것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도와 함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범죄가 아닌 데이트폭력의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제2절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분석 결과
- 제3절 전문가 심층면접조사(FGI) 분석 결과
- 제4절 소결



제4장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는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실태와 인식 그리고 예방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실시되었다. 최근 데이트폭력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데이트폭력 예방에 앞장섬으로써 ‘안전 도시 수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본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는 수원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여성폭력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이지만,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등의 ‘인식’,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폭력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의 장소적 범위인 수원시에서 데이트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설문조사 대상(표본)의 구분(추출)과 더불어 수원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지역적 특성²⁶⁾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실태조사는 연구기간 및 기타 연구제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원시민을 중심으로 ‘데이트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데이트폭력 인식’, ‘유형별 데이트폭력 경험여부’, ‘데이트폭력 피해예방 방안’ 등에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최우선 과제이자 목적은 향후 여성폭력 전반의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26) 수원시는 경기도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역 주변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는 1,242대로 시내·마을·좌석 버스와 일반 기차 및 K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구비되어 수원시민이 아니더라도 데이트 및 쇼핑·관광 등에 적합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수원시 보도자료, 사통팔달 수원시 ‘교통 허브’ 문 연다(재편집), 2017. 6. 6.).

2) 조사 설계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설계 개요는 <표 4-1>과 같다. 모집단은 수원시의 만 15세~59세 남녀로 표본크기는 988명이다. 표본배분은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따른 변형비례배분 하였다. 조사 방법에서 청소년은 수원시 내 고등학교를 수원시청과 연계하여 직접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인은 조사 전문 업체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간 진행하였다.

본 실태조사의 층화는 수원시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1차 층화변수로 활용하고 성별을 2차, 연령을 3차 층화변수로 활용하였다. 먼저 4개 권역별로 최소 표본크기를 확보하기 위해 50개 표본을 우선할당한 후, 나머지 표본에 대해서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설문별로는 조사 항목인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중 여성은 남성의 2배 수준으로 과표집하였으며, 20대 이상의 여성은 남성의 2.5배 수준으로 과표집하였다. 연령별로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표 4-1> 조사 설계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수원시 만15세~59세 남녀
표본크기	• 988명(유효 표본 기준)
표본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지역, 성, 연령)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배분 ※ 청소년과 성인 조사 표본은 조사 방법 차이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표본설계 하였음 - 청소년: 권역별 3개 학교 추출, 성별에 따른 과표집(여성과 남성의 비율 2:1) - 성인: 성별*연령별 최소 50표본 우선 배분, 성별에 따른 과표집(여성과 남성의 비율 2.5:1)
표본추출틀	• 직접방문조사(10대 고등학생) 및 조사 전문 업체의 온라인 패널 온라인조사
표본추출	• 층화표본추출
표본오차	• ±2.5%(신뢰수준 95%)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은 크게 ‘응답자 특성’, ‘인식조사’, ‘데이트폭력 경험과 대응’,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설문지 구성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와 더불어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3차(1·2차 대면 자문, 3차 서면 자문)에 걸쳐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데이트폭력 유형별 문답문항 추가 및 설문문항 문구 수정,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관련 문항에 수원시 관련 기관 반영 등 설문지 구성에 수정이 진행되었다.

세부적으로 조사영역별 설문지 구성내용은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내용

구분		내용 ²⁷⁾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역, 최종학력, 직업, 동거가족 유형, 월 수입 등 7개 문항
인식조사	데이트 관계 중 느낌이나 생각	통제와 간섭 2개 문항, 정서적 폭력 2개 문항, 신체적 폭력 7개 문항, 성적 폭력 3개 문항
	데이트 관계 중 상황별 인식	통제와 간섭 3개 문항, 언어적·정서적 폭력 3개 문항, 신체적 폭력 3개 문항, 성적 폭력 1개 문항
	행위별 데이트폭력 인식 여부	통제와 간섭 3개 문항,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4개 문항, 신체적 폭력 2개 문항, 성적 폭력 2개 문항
	데이트폭력 인식	관련 세부문항 10개
데이트폭력 경험과 대응	통제와 간섭	경험 관련 12개 문항, 시기·느낌·반응 4개 문항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경험 관련 11개 문항, 시기·느낌·반응 4개 문항
	신체적 폭력	경험 관련 10개 문항, 시기·느낌·반응 4개 문항
	성적 폭력	경험 관련 14개 문항, 시기·느낌·반응 4개 문항
	데이트폭력 이후 관계유지·변화·장애경험	데이트폭력 경험 중 가장 힘들게 한 것, 연애관계 유지 이유, 알코올 중독 및 섭식장애 경험여부, 정신적 고통 및 위협이나 공포심 경험여부 등 6개 문항
	데이트폭력 대응 기관 인지 여부 및 도움·대응 여부	가장 필요한 도움, 유관기관에 도움 요청 경험, 유관기관의 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데이트폭력 유형별 도움 요청 의향 등 6개 문항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데이트폭력 원인과 교육	‘데이트폭력’ 단어 인지 매체, 데이트폭력 교육 여부, 데이트폭력 발생 원인 등 3개 문항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	‘데이트폭력’ 예방 정책,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필요한 도움, 수원시민을 위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정책 등 4개 문항
	데이트폭력 지원 기관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요청기관, ‘데이트폭력’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인지 여부 등 2개 문항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각 세부문항에 대한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SPSS 25.0을 사용하여 응답자별 설문내용의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교차분석은 모든 분

27) 설문지 구성 및 내용별 세부문항은 본 연구보고서 뒷장에 부록 1.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석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였으며, ‘데이트폭력과 대응’ 부분은 데이트폭력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구분하여 기존 교차분석에 추가로 ‘경험자’의 응답만 별도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을 통해 각 부분별 인식정도와 경험여부 및 대응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며,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분석 기법 및 응답자 특성은 <표 4-3>과 같다.

<표 4-3>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분석기법 및 응답자 특성

구분		분석방법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SPSS 25.0	
구분	설문지 수	비율	
성별	여성(10대 여성)	673(173)	68.1(17.5)
	남성(10대 남성)	315(115)	31.9(11.6)
연령대	10대	288	29.1
	20대	166	16.8
	30대	170	17.2
	40대	186	18.8
	50대	178	18.0
거주지역	장안구	224	22.7
	권선구	280	28.3
	팔달구	193	20.0
	영통구	286	28.9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	288	29.1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9	11
	대학교 재학/졸업	460	46.6
	대학원 재학 이상	131	13.3
한 달 개인 수입	200만원 미만	165	16.7
	200만원~400만원 미만	253	25.6
	400만원~600만원 미만	142	14.4
	600만원 이상	84	8.5
	개인 수입 없음(성인+학생)	344(56+288)	34.8
데이트폭력 경험	경험자	529	53.5
	비경험자	459	46.5
데이트폭력 경험 유형	통제와 간섭	567	57.4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367	37.1
	신체적 폭력	186	18.8
	성적 폭력	268	27.1

제2절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분석 결과

1. 인식조사

데이트폭력의 발생 실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데이트 관계²⁸⁾에 대한 인식(느낌이나 생각, 데이트 상황별 인식)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상황별 데이트폭력 인지여부, 유형별 데이트폭력 인식)을 확인하고자 설문을 구성하였다. 더불어 각각의 세부문항에는 데이트폭력 유형별(통제와 간섭,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선정하여 질문하였다. 하지만 질문의 특정 항목을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답변과 본인에게 발생한 동일한 현실을 폭력으로 정의하는 것이 같은 수준일 수 없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강희영 외, 2017).

1) 데이트 관계에 대한 인식

데이트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상황별 느낌이나 생각'은 다음 <표 4-4>와 같다.

세부분항 ①과 ②는 데이트폭력 유형 중 '통제와 간섭'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문항으로 '별로 그렇지 않음'의 응답이 ① 40.4%(399명), ② 42.0%(41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음'이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질의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분항 ③과 ④는 데이트폭력 유형 중 '정서적 폭력'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문항으로 ③은 '별로 그렇지 않음'의 응답이 34.6%(342명), ④는 '대체로 그러함'의 응답이 55.7%(55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분항 ⑦~⑬는 데이트폭력 유형 중 '신체적 폭력'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문항으로 ⑧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음'의 응답이 ⑦ 58.0%(573명), ⑨ 90.3%(892명), ⑩ 63.9%(631명), ⑪ 63.4%(626명), ⑫ 69.8%(690명), ⑬ 47.4%(46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음'이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질의 문항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⑧은 다른 질문과 다르게 긍정 질의된 문항으로 애인을 때리는 사람과는 헤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매우 그러함'이 80.3%(793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세부분항 ⑤, ⑥, ⑭는 데이트폭력 유형 중 '성적 폭력'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음'의 응답이 ⑤ 49.3%(345명), ⑥ 39.9%(394명), ⑭ 68.4%(479명)로 가장 높

28) 데이트 관계에는 연인과 부부관계도 포함된다.

게 나타났으며, ‘별로 그렇지 않음’이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질의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 데이트 관계에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빈도)

(n=988)

구분	단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모름/무응답 ²⁹⁾
① 상대가 끊임없이 전화하거나 사생활을 체크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명	386	399	190	13	0
	%	39.1	40.4	19.2	1.3	0.0
②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가 불쑥 집에 찾아오거나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명	375	415	188	10	0
	%	38.0	42.0	19.0	1.0	0.0
③ 내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	명	298	342	275	73	0
	%	30.2	34.6	27.8	7.4	0.0
④ 나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명	110	249	550	79	0
	%	11.1	25.2	55.7	8.0	0.0
⑤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	345	280	64	11	288
	%	49.3	40.0	9.1	1.6	
⑥ 연인들이 1박 이상 여행을 같이 가는 것은 성관계를 동의한 것이다	명	394	288	254	52	0
	%	39.9	29.1	25.7	5.3	0.0
⑦ 바람을 피웠다면 애인에게 맞아도 된다	명	573	238	110	67	0
	%	58.0	24.1	11.1	6.8	0.0
⑧ 애인을 때리는 사람과는 헤어져야 한다	명	61	17	117	793	0
	%	6.2	1.7	11.8	80.3	0.0
⑨ 만취상태에서 한 행동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명	892	78	10	6	2
	%	90.3	7.9	1.0	0.6	0.1
⑩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폭력을 당하면 내 잘못이다	명	631	248	76	33	0
	%	63.9	25.1	7.7	3.3	0.0
⑪ 폭력적인 연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더 베풀어야 한다	명	626	246	92	24	0
	%	63.4	24.9	9.3	2.4	0.0
⑫ 연인 간 폭력은 사적인 일이므로 3자 개입이 필요 없다	명	690	235	50	12	1
	%	69.8	23.8	5.1	1.2	0.1
⑬ 폭력적인 상대와 관계를 끝내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다	명	468	308	160	52	0
	%	47.4	31.2	16.2	5.3	0.0
⑭ 싸우고 난 후의 성관계는 화해 또는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명	479	163	56	2	288
	%	68.4	23.3	8.0	0.3	

29) 세부문항 ⑤와 ⑭는 10대(고등학생)에게는 질의하지 않아 수원시 만 20세~59세 남녀의 응답결과만 반영되어 있다.

데이트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상황별 느낌이나 생각'의 성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5>와 같다.

세부문항 ①~⑭ 모두 데이트 관계에서 '상황별 느낌이나 생각'이 성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값이 높았고³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세부문항 ③ 내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t=-14.42^*$)와 ⑩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폭력을 당하면 내 잘못이다($t=11.00^*$)는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성별에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데이트 관계에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성별)

(n=988)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여성 (n=673)	남성 (n=315)	여성	남성	
① 상대가 끊임없이 전화하거나 사생활을 체크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1.75	1.98	.758	.800	-4.27*
②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가 불쑥 집에 찾아오거나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1.75	2.01	.722	.818	-5.00*
③ 내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	1.85	2.71	.808	.898	-14.42*
④ 나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2.49	2.85	.798	.708	-7.25*
⑤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1.53	1.87	.703	.690	-5.79*
⑥ 연인들이 1박 이상 여행을 같이 가는 것은 성관계를 동의한 것이다	1.89	2.12	.931	.910	-3.73*
⑦ 바람을 피웠다면 애인에게 맞아야 된다	1.49	2.04	.804	1.043	-8.34*
⑧ 애인을 때리는 사람과는 헤어져야 한다	3.71	3.57	.796	.781	2.65*
⑨ 만취상태에서 한 행동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1.10	1.20	.477	.636	-2.54*
⑩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폭력을 당하면 내 잘못이다	1.30	1.94	.590	.939	-11.00*
⑪ 폭력적인 연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더 베풀어야 한다	1.32	1.90	.616	.889	-10.42*
⑫ 연인 간 폭력은 사적인 일이므로 3자 개입이 필요 없다	1.30	1.57	.588	.824	-5.34*
⑬ 폭력적인 상대와 관계를 끝내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다	1.70	1.99	.865	.932	-4.77*
⑭ 싸우고 난 후의 성관계는 화해 또는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1.29	1.68	.572	.736	-6.60*

* $p<.05$

30) 세부문항 ⑧은 긍정문항이고 나머지 세부문항들은 역문항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데이트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상황별 느낌이나 생각’의 연령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6>과 같다.

세부분항 ①, ④, ⑤, ⑥, ⑦, ⑧, ⑩, ⑪, ⑫, ⑬은 데이트 관계에서 ‘상황별 느낌이나 생각’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세부분항 ⑥ 연인들이 1박 이상 여행을 같이 가는 것은 성관계를 동의한 것이다 ($f=39.834$)는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10대의 평균이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질의 문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데이트 관계에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연령별) (n=988)

구분	평균(표준편차)					f값
	10대 (n=288)	20대 (n=166)	30대 (n=170)	40대 (n=186)	50대 (n=178)	
① 상대가 끊임없이 전화하거나 사생활을 체크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2.09 (.824)	1.84 (.754)	1.81 (.756)	1.67 (.725)	1.58 (.677)	15.178*
②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가 불쑥 집에 찾아오거나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1.90 (.821)	1.74 (.704)	1.88 (.763)	1.83 (.737)	1.76 (.739)	1.774
③ 내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	2.23 (.900)	2.02 (.924)	2.10 (.895)	2.14 (.931)	2.07 (.995)	1.617
④ 나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2.82 (.795)	2.62 (.718)	2.63 (.736)	2.45 (.771)	2.39 (.824)	10.755*
⑤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	1.52 (.667)	1.72 (.784)	1.57 (.648)	1.71 (.740)	3.506*
⑥ 연인들이 1박 이상 여행을 같이 가는 것은 성관계를 동의한 것이다	1.52 (.787)	1.76 (.861)	2.14 (.863)	2.24 (.913)	2.42 (.937)	39.834*
⑦ 바람을 피웠다면 애인에게 맞아도 된다	1.93 (1.004)	1.64 (.854)	1.46 (.822)	1.49 (.840)	1.65 (.935)	9.771*
⑧ 애인을 때리는 사람과는 헤어져야 한다	3.60 (.789)	3.81 (.568)	3.80 (.631)	3.58 (.928)	3.57 (.925)	4.352*
⑨ 만취상태에서 한 행동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1.18 (.766)	1.16 (.531)	1.07 (.279)	1.09 (.350)	1.14 (.408)	1.647
⑩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폭력을 당하면 내 잘못이다	1.67 (.833)	1.45 (.743)	1.40 (.780)	1.40 (.715)	1.50 (.138)	5.378*
⑪ 폭력적인 연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더 베풀어야 한다	1.70 (.852)	1.37 (.681)	1.32 (.619)	1.41 (.709)	1.61 (.783)	10.514*
⑫ 연인 간 폭력은 사적인 일이므로 3자 개입이 필요 없다	1.58 (.831)	1.27 (.530)	1.32 (.610)	1.28 (.586)	1.35 (.650)	8.793*
⑬ 폭력적인 상대와 관계를 끝내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다	1.87 (.920)	1.59 (.817)	1.71 (.839)	1.75 (.861)	1.99 (.974)	5.303*
⑭ 싸우고 난 후의 성관계는 화해 또는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	1.42 (.689)	1.41 (.658)	1.33 (.545)	1.46 (.689)	1.251

*p<.05

데이트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상황별 느낌이나 생각’의 지역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7>과 같다.

세부문항 ②, ⑥은 데이트 관계에서 ‘상황별 느낌이나 생각’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성별, 연령별 평균비교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지역 간 차이가 큰 세부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데이트 관계에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지역별)

(n=988)

구분	평균(표준편차)					f값
	장안구 (n=227)	권선구 (n=269)	팔달구 (n=155)	영통구 (n=305)	기타 (n=32)	
① 상대가 끊임없이 전화하거나 사생활을 체크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1.81 (.801)	1.75 (.788)	1.79 (.721)	1.91 (.768)	2.03 (.861)	2.157
②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가 불쑥 집에 찾아오거나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1.79 (.762)	1.74 (.734)	1.80 (.715)	1.94 (.784)	2.00 (.916)	3.252*
③ 내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	1.99 (.882)	2.16 (.960)	2.21 (.926)	2.12 (.934)	2.31 (.859)	1.979
④ 나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2.57 (.825)	2.56 (.797)	2.61 (.687)	2.66 (.796)	2.72 (.851)	0.893
⑤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1.60 (.673)	1.61 (.699)	1.74 (.704)	1.61 (.767)	-	1.088
⑥ 연인들이 1박 이상 여행을 같이 가는 것은 성관계를 동의한 것이다	1.93 (.907)	2.05 (.978)	2.00 (.868)	1.95 (.932)	1.47 (.842)	3.015*
⑦ 바람을 피웠다면 애인에게 맞아도 된다	1.63 (.865)	1.65 (.929)	1.68 (.946)	1.68 (.939)	1.91 (1.027)	0.685
⑧ 애인을 때리는 사람과는 헤어져야 한다	3.62 (.861)	3.70 (.735)	3.72 (.681)	3.62 (.858)	3.75 (.622)	0.759
⑨ 만취상태에서 한 행동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1.12 (.420)	1.15 (.611)	1.14 (.448)	1.11 (.398)	1.28 (1.420)	0.845
⑩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폭력을 당하면 내 잘못이다	1.50 (.795)	1.50 (.785)	1.51 (.750)	1.50 (.744)	1.66 (1.035)	0.321
⑪ 폭력적인 연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더 베풀어야 한다	1.43 (.703)	1.48 (.775)	1.63 (.807)	1.50 (.726)	1.91 (1.027)	3.923
⑫ 연인 간 폭력은 사적인 일이므로 3자 개입이 필요 없다	1.37 (.662)	1.39 (.646)	1.42 (.701)	1.35 (.725)	1.53 (.671)	0.631
⑬ 폭력적인 상대와 관계를 끝내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다	1.78 (.891)	1.79 (.927)	1.90 (.948)	1.73 (.830)	2.00 (1.016)	1.294
⑭ 싸우고 난 후의 성관계는 화해 또는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1.40 (.604)	1.37 (.607)	1.46 (.684)	1.40 (.696)	-	0.545

*p<.05

데이트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상황별 인식'은 다음 <표 4-8>과 같다.

세부분항 ①, ②, ③은 데이트폭력 유형 중 '통제와 간섭'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문항으로 ①은 '전혀 그렇지 않음'의 응답이 51.6%(510명), ②, ③은 '별로 그렇지 않음'의 응답이 ②는 45.0%(445명), ③은 44.5%(44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질의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분항 ④, ⑤, ⑥은 데이트폭력 유형 중 '경제적·언어적 폭력'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문항으로 ④는 '전혀 그렇지 않음'의 응답이 61.4%(607명), ⑤, ⑥은 '대체로 그러함'의 응답이 ⑤는 38.2%(377명), ⑥은 37.0%(36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질의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응답 ⑦, ⑧, ⑨, ⑩은 데이트폭력 유형 중 '신체적 폭력'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문항으로 ⑦은 '별로 그렇지 않음'의 응답이 35.9%(355명), ⑧, ⑨, ⑩은 '전혀 그렇지 않음'의 응답이 ⑧은 49.2%(486명), ⑨는 60.6%(599명), ⑩은 66.2%(65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질의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응답 ⑪은 데이트폭력 유형 중 '성적 폭력'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음'의 응답이 48.8%(48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별로 그렇지 않음'의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질의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8〉 데이트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에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빈도)

(n=988)

구분	단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려함	매우 그려함	모름/ 무응답 31)
① 상대방과 통화가 되지 않을 때, 전화를 받을 때까지 시간과 횟수 상관없이 전화를 하는 것은 괜찮다	명	510	404	68	5	1
	%	51.6	40.9	6.9	0.5	0.1
② 상대방은 내가 보내는 카톡이나 문자에 바로 응답해야 한다	명	409	445	130	4	-
	%	41.4	45.0	13.2	0.4	-
③ 나 아닌 다른 이성과의 관계는 친구관계여도 용납할 수 없다	명	380	440	143	24	1
	%	38.5	44.5	14.5	2.4	0.1
④ 핸드폰, 이메일,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는 서로 공유해도 무관하다	명	607	272	100	9	-
	%	61.4	27.5	10.1	0.9	-
⑤ 상대방이 나를 속인다면 상대방에게 욕을 할 수 있다	명	339	377	231	41	-
	%	34.3	38.2	23.4	4.1	-
⑥ 상대방이 나를 가족/친구들 앞에서 우습게 만들면 상대방에 게 욕을 할 수 있다	명	334	366	237	51	-
	%	33.8	37.0	24.0	5.2	-
⑦ 논쟁 중에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면 나도 신체적 폭력으로 되갚아 줄 수 있다	명	349	355	231	53	-
	%	35.3	35.9	23.4	5.4	-
⑧ 상대방이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걸 알게 된다면 상대방을 때릴 수 있다	명	486	342	119	41	-
	%	49.2	34.6	12.0	4.1	-
⑨ 때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때릴 수 있다	명	599	263	100	26	-
	%	60.6	26.6	10.1	2.6	-
⑩ 맞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맞을 수 있다	명	654	219	89	26	-
	%	66.2	22.2	9.0	2.6	-
⑪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명	482	119	93	6	288
	%	48.8	12.0	9.4	0.6	29.1

31) 세부문항 ⑩은 10대(고등학생)에게는 질의하지 않아 수원시 20세~59세 남녀의 응답결과만 반영되어 있다.

데이트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상황별 인식’의 성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9>와 같다. 세부문항 ①, ③, ④, ⑥, ⑨, ⑩, ⑪은 데이트 관계에서 ‘상황별 인식’이 성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값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세부문항 ⑩ 맞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맞을 수 있다($t=-8.007^*$)와 ⑪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할 수 있다($t=-6.703^*$)는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성별에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 보다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데이트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에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성별)
(n=988)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여성 (n=673)	남성 (n=315)	여성	남성	
① 상대방과 통화가 되지 않을 때, 전화를 받을 때까지 시간과 횟수 상관없이 전화를 하는 것은 괜찮다	1.53	1.65	.654	.744	-2.445*
② 상대방은 내가 보내는 카톡이나 문자에 바로 응답해야 한다	1.71	1.75	.696	.703	-0.724
③ 나 아닌 다른 이성과의 관계는 친구관계여도 용납할 수 없다	1.78	1.90	.789	.825	-2.135*
④ 핸드폰, 이메일,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는 서로 공유해도 무관하다	1.45	1.61	.682	.763	-3.136*
⑤ 상대방이 나를 속인다면 상대방에게 욕을 할 수 있다	1.96	2.01	.874	.837	-0.828
⑥ 상대방이 나를 가족/친구들 앞에서 우습게 만들면 상대방에게 욕을 할 수 있다	1.96	2.10	.889	.874	-2.270*
⑦ 논쟁 중에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면 나도 신체적 폭력으로 되갚아 줄 수 있다	2.02	1.91	.928	.819	1.850
⑧ 상대방이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걸 알게 된다면 상대방을 때릴 수 있다	1.73	1.67	.853	.793	0.993
⑨ 때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때릴 수 있다	1.48	1.70	.730	.861	-3.866*
⑩ 맞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맞을 수 있다	1.33	1.80	.609	.952	-8.007*
⑪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1.33	1.80	.640	.898	-6.703*

*p<.05

데이트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상황별 인식’의 연령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10>과 같다.

세부분항 ①, ②, ⑥, ⑧, ⑨, ⑩은 데이트 관계에서 ‘상황별 인식’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세부분항 ⑩ 맞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맞을 수 있다($f=15.065^*$)는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10대의 평균이 4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대가 다른 연령대 보다 질의 문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데이트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에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연령별)
(n=988)

구분	평균(표준편차)					f값
	10대 (n=288)	20대 (n=166)	30대 (n=170)	40대 (n=186)	50대 (n=178)	
① 상대방과 통화가 되지 않을 때, 전화를 받을 때까지 시간과 횟수 상관없이 전화를 하는 것은 괜찮다	1.70 (.891)	1.61 (.649)	1.58 (.613)	1.50 (.608)	1.39 (.574)	6.552*
② 상대방은 내가 보내는 카톡이나 문자에 바로 응답해야 한다	1.68 (.715)	1.61 (.621)	1.67 (.703)	1.76 (.688)	1.92 (.709)	5.469*
③ 나 아닌 다른 이성과의 관계는 친구관계여도 용납할 수 없다	1.88 (.887)	1.67 (.748)	1.80 (.743)	1.84 (.787)	1.83 (.765)	1.863
④ 핸드폰, 이메일,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는 서로 공유해도 무관하다	1.47 (.708)	1.48 (.685)	1.55 (.730)	1.58 (.710)	1.46 (.730)	1.041
⑤ 상대방이 나를 속인다면 상대방에게 욕을 할 수 있다	2.01 (.877)	2.01 (.860)	1.91 (.858)	1.87 (.811)	2.06 (.888)	1.619
⑥ 상대방이 나를 가족/친구들 앞에서 우습게 만들면 상대방에게 욕을 할 수 있다	2.15 (.922)	1.96 (.862)	1.91 (.858)	1.85 (.850)	2.08 (.879)	4.264*
⑦ 논쟁 중에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면 나도 신체적 폭력으로 되갚아 줄 수 있다	1.95 (.896)	1.94 (.844)	1.98 (.936)	1.98 (.906)	2.11 (.892)	1.013
⑧ 상대방이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걸 알게 된다면 상대방을 때릴 수 있다	1.89 (.928)	1.80 (.898)	1.60 (.749)	1.53 (.659)	1.65 (.797)	6.978*
⑨ 때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때릴 수 있다	1.78 (.906)	1.58 (.765)	1.45 (.713)	1.38 (.649)	1.42 (.669)	10.825*
⑩ 맞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맞을 수 있다	1.76 (.918)	1.43 (.708)	1.35 (.700)	1.33 (.637)	1.35 (.767)	15.065*
⑪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	1.54 (.791)	1.46 (.778)	1.37 (.686)	1.49 (.753)	1.726

* $p<.05$

데이트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상황별 인식’의 지역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11>과 같다.

세부분항 ①~⑪은 데이트 관계에서 ‘상황별 인식’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 성별, 연령별 평균비교분석 결과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지역 간 차이가 큰 세부분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데이트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에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지역별)
(n=988)

구분	평균(표준편차)					f값
	장안구 (n=227)	권선구 (n=269)	팔달구 (n=155)	영통구 (n=305)	기타 (n=32)	
① 상대방과 통화가 되지 않을 때, 전화를 받을 때까지 시간과 횟수 상관없이 전화를 하는 것은 괜찮다	1.55 (.645)	1.58 (.786)	1.58 (.633)	1.58 (.650)	1.47 (.671)	0.259
② 상대방은 내가 보내는 카톡이나 문자에 바로 응답해야 한다	1.70 (.695)	1.73 (.671)	1.77 (.698)	1.72 (.725)	1.66 (.701)	0.331
③ 나 아닌 다른 이성과의 관계는 친구관계여도 용납할 수 없다	1.79 (.781)	1.87 (.905)	1.79 (.753)	1.80 (.745)	1.78 (.792)	0.488
④ 핸드폰, 이메일,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는 서로 공유해도 무관하다	1.52 (.731)	1.48 (.736)	1.53 (.696)	1.52 (.703)	1.31 (.535)	0.839
⑤ 상대방이 나를 속인다면 상대방에게 욕을 할 수 있다	2.00 (.887)	1.96 (.861)	1.88 (.821)	2.00 (.849)	2.06 (1.014)	0.667
⑥ 상대방이 나를 가족/친구들 앞에서 우습게 만들면 상대방에게 욕을 할 수 있다	1.96 (.894)	1.96 (.922)	2.01 (.826)	2.06 (.877)	2.13 (.907)	0.761
⑦ 논쟁 중에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면 나도 신체적 폭력으로 되갚아 줄 수 있다	1.91 (.908)	2.01 (.928)	1.95 (.844)	2.02 (.887)	2.25 (.842)	1.293
⑧ 상대방이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걸 알게 된다면 상대방을 때릴 수 있다	1.70 (.847)	1.74 (.868)	1.68 (.836)	1.70 (.775)	1.88 (1.008)	0.475
⑨ 때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때릴 수 있다	1.50 (.755)	1.53 (.770)	1.57 (.813)	1.57 (.788)	1.66 (.827)	0.520
⑩ 맞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맞을 수 있다	1.45 (.753)	1.46 (.745)	1.47 (.776)	1.51 (.787)	1.63 (.883)	0.544
⑪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1.40 (.673)	1.52 (.821)	1.53 (.786)	1.41 (.717)	-	1.455

*p<.05

2)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에서 '상황별 데이트폭력 인식'는 다음 <표 4-12>와 같다.

세부분항 ①, ②, ③은 데이트폭력 유형 중 '통제와 간섭'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문항으로 '대체로 그러함'의 응답이 ① 43.7%(432명), ② 36.3%(359명), ③ 36.5%(361명)로 가장 높았으며, ①과 ②는 '별로 그렇지 않음'의 응답이 ③은 '매우 그러함'이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지속적인 통화를 일정과 옷차림의 통제와 간섭 보다 데이트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부분항 ④, ⑤, ⑥, ⑦은 데이트폭력 유형 중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문항으로 '대체로 그러함'의 응답이 ④ 31.6%(312명), ⑤ 36.2%(358명), ⑥ 32.6%(322명), '매우 그러함'의 응답이 ⑦ 37.6%(37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폭력을 언어적·정서적 폭력 보다 데이트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부분항 ⑧, ⑨는 데이트폭력 유형 중 '신체적 폭력'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문항으로 '매우 그러함'의 응답이 ⑧ 52.9%(523명), ⑨ 61.8%(61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그러함'이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질의 문항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분항 ⑩, ⑪은 데이트 유형 중 '성적 폭력'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문항으로 '매우 그러함'의 응답이 ⑩ 59.7%(590명), ⑪ 61.5%(60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그러함'이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질의 문항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2〉 귀하는 다음의 행위가 데이트폭력이라고 생각되십니까?(빈도)

(n=988)

구분	단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모름/무응답
① 일정을 간섭하거나 통제한다	명	97	249	432	210	-
	%	9.8	25.2	43.7	21.3	-
②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한다	명	92	358	359	179	-
	%	9.3	36.2	36.3	18.1	-
③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한다	명	112	245	361	270	-
	%	11.3	24.8	36.5	27.3	-
④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는다	명	112	274	312	290	-
	%	11.3	27.7	31.6	29.4	-
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다	명	125	158	358	347	-
	%	12.7	16.0	36.2	35.1	-
⑥ 상대가 쓴 데이트 비용을 내 놓으라고 한다	명	143	245	322	278	-
	%	14.5	24.8	32.6	28.1	-
⑦ 상대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	명	142	179	296	371	-
	%	14.4	18.1	30.0	37.6	-
⑧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 잡는다	명	125	75	264	523	1
	%	12.7	7.6	26.7	52.9	0.1
⑨ 세게 밀친다	명	129	54	194	611	-
	%	13.1	5.5	19.6	61.8	-
⑩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다	명	128	59	211	590	-
	%	13.0	6.0	21.4	59.7	-
⑪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나 애무를 한다	명	131	60	189	608	-
	%	13.3	6.1	19.1	61.5	-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에서 ‘상황별 데이트폭력 인식’의 성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13>과 같다.

세부분항 ②, ③, ④, ⑤, ⑦, ⑧, ⑨, ⑩, ⑪은 ‘상황별 데이트폭력 인식’이 성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값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모든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⑧, ⑨)과 성적 폭력(⑩, ⑪) 관련 세부분항은 인식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귀하는 다음의 행위가 데이트폭력이라고 생각되십니까?(성별)

(n=988)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여성 (n=673)	남성 (n=315)	여성	남성	
① 일정을 간섭하거나 통제한다	2.80	2.68	.884	.917	1.962
②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한다	2.70	2.49	.901	.831	3.436*
③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한다	2.85	2.69	.969	.954	2.517*
④ 화가 나서 발을 세계 구르거나 문을 세계 닫는다	2.88	2.59	.991	.961	4.289*
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다	2.99	2.82	1.015	.982	2.552*
⑥ 상대가 쓴 데이트 비용을 내 놓으라고 한다	2.79	2.65	1.030	.999	1.963
⑦ 상대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	2.95	2.81	1.062	1.051	1.978*
⑧ 팔뚝이나 몸을 힘껏 움켜 잡는다	3.29	3.03	1.051	1.034	3.594*
⑨ 세계 밀친다	3.38	3.14	1.037	1.066	3.285*
⑩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다	3.35	3.12	1.047	1.035	3.185*
⑪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나 애무를 한다	3.38	3.09	1.063	1.029	4.035*

*p<.05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에서 ‘상황별 데이트폭력 인식’의 연령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14>와 같다.

세부분항 ⑤, ⑥, ⑦, ⑧, ⑨, ⑩, ⑪은 ‘상황별 데이트폭력 인식’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평균값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세부분항 ⑩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다 ($f=15.734^*$)는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10대의 평균이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대가 다른 연령대 보다 성적 폭력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귀하는 다음의 행위가 데이트폭력이라고 생각되십니까?(연령별)

(n=988)

구분	평균(표준편차)					f값
	10대 (n=288)	20대 (n=166)	30대 (n=170)	40대 (n=186)	50대 (n=178)	
① 일정을 간섭하거나 통제한다	2.84 (.840)	2.75 (.849)	2.76 (.867)	2.72 (.951)	2.70 (.989)	0.851
②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한다	2.71 (.890)	2.70 (.889)	2.58 (.820)	2.55 (.882)	2.58 (.924)	1.534
③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한다	2.84 (.881)	2.78 (.943)	2.75 (.922)	2.83 (1.025)	2.76 (1.100)	0.348
④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는다	2.92 (.935)	2.81 (.978)	2.74 (.994)	2.75 (1.031)	2.65 (1.026)	2.332
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다	3.23 (.884)	3.03 (.962)	2.87 (1.035)	2.77 (1.041)	2.62 (1.046)	12.539*
⑥ 상대가 쓴 데이트 비용을 내 놓으라고 한다	3.01 (.952)	2.74 (.990)	2.54 (1.004)	2.73 (1.053)	2.53 (1.058)	8.602*
⑦ 상대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	3.08 (.918)	2.95 (.999)	2.76 (1.116)	2.90 (1.149)	2.72 (1.139)	4.182*
⑧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 잡는다	3.45 (.882)	3.36 (.954)	3.16 (1.064)	3.06 (1.147)	2.86 (1.158)	10.868*
⑨ 세게 밀친다	3.54 (.791)	3.40 (.997)	3.32 (1.074)	3.19 (1.168)	2.93 (1.198)	10.760*
⑩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다	3.59 (.791)	3.39 (.971)	3.25 (1.066)	3.11 (1.124)	2.87 (1.048)	15.734*
⑪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나 애무를 한다	3.57 (.802)	3.37 (.962)	3.28 (1.084)	3.10 (1.156)	2.96 (1.250)	11.583*

* $p < .05$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에서 ‘상황별 데이트폭력 인식’의 지역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15>와 같다.

세부분항 ①~⑩은 ‘상황별 데이트폭력 인식’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 연령별 평균비교분석결과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지역 간 차이가 큰 세부분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귀하는 다음의 행위가 데이트폭력이라고 생각되십니까?(지역별)

(n=988)

구분	평균(표준편차)					f값
	장안구 (n=227)	권선구 (n=269)	팔달구 (n=155)	영동구 (n=305)	기타 (n=32)	
① 일정을 간섭하거나 통제한다	2.84 (.860)	2.69 (.962)	2.78 (.914)	2.76 (.864)	2.81 (.780)	0.901
②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한다	2.66 (.854)	2.56 (.943)	2.70 (.906)	2.64 (.852)	2.66 (.787)	0.748
③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한다	2.83 (.954)	2.78 (1.001)	2.75 (1.015)	2.80 (.941)	2.97 (.782)	0.430
④ 화가 나서 발을 세계 구르거나 문을 세계 닫는다	2.84 (.969)	2.71 (1.017)	2.81 (.999)	2.79 (.987)	2.91 (.928)	0.682
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다	2.97 (.977)	2.87 (1.069)	2.94 (1.021)	2.95 (.969)	3.16 (.987)	0.761
⑥ 상대가 쓴 데이트 비용을 내 놓으라고 한다	2.80 (1.015)	2.68 (1.048)	2.73 (1.028)	2.74 (1.000)	2.94 (1.045)	0.681
⑦ 상대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	2.94 (1.077)	2.81 (1.094)	2.85 (1.104)	2.97 (.993)	3.06 (1.045)	1.162
⑧ 팔뚝이나 몸을 힘껏 움켜 잡는다	3.19 (1.034)	3.16 (1.075)	3.14 (1.117)	3.28 (1.024)	3.41 (.911)	0.955
⑨ 세계 밀친다	3.32 (1.059)	3.22 (1.110)	3.21 (1.132)	3.39 (.964)	3.53 (.803)	1.638
⑩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다	3.27 (1.057)	3.23 (1.107)	3.20 (1.090)	3.33 (.982)	3.63 (.833)	1.388
⑪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나 애무를 한다	3.29 (1.062)	3.24 (1.138)	3.20 (1.095)	3.34 (.984)	3.66 (.827)	1.532

*p<.05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에서 '상황별 데이트폭력 느낌이나 생각'은 다음 <표 4-16>과 같다.

세부분항 ①은 '전혀 그렇지 않음'의 응답이 42.8%(42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별로 그렇지 않음'의 응답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였다.

세부분항 ②는 '매우 그러함'의 응답이 52.2%(51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그러함'의 응답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 데이트폭력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난다고 인식하였다.

세부분항 ③은 '대체로 그러함'의 응답이 37.1%(36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별로 그렇지 않음'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 데이트폭력은 젊은 세대에 일어난다는 인식과 동시에 전 세대에서도 일어난다는 인식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분항 ④는 '전혀 그렇지 않음'의 응답이 57.0%(56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별로 그렇지 않음'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 데이트폭력은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세부분항 ⑤는 '전혀 그렇지 않음'의 응답이 71.6%(70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별로 그렇지 않음'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 다른 여성폭력과 마찬가지로 데이트폭력의 폭력성도 위협적으로 인식하였다.

세부분항 ⑥은 '매우 그러함'의 응답이 64.3%(63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별로 그렇지 않음'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악화된다고 인식하였다.

세부분항 ⑦은 '매우 그러함'의 응답이 62.1%(614명), '대체로 그렇다'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악화된다고 인식하였다.

세부분항 ⑧은 '별로 그렇지 않음'이 38.8%(38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음'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 데이트폭력은 상호 간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세부분항 ⑨는 '전혀 그렇지 않음'이 77.2%(76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별로 그렇지 않음'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 데이트폭력이 신체폭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세부분항 ⑩은 '별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이 44.0%(43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그러함'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 가해자의 상담 및 교정치료로 데이트폭력을 없앨 수 있다는 인식과 동시에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빈도)

(n=988)

구분	단 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모름/ 무응답
①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것은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	명	423	363	190	12	-
	%	42.8	36.7	19.2	1.2	-
② 데이트폭력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난다	명	50	68	354	516	-
	%	5.1	6.9	35.8	52.2	-
③ 데이트폭력은 주로 젊은 세대(10대~30대)에서 일어난다	명	201	332	367	88	-
	%	20.3	33.6	37.1	8.9	-
④ 데이트폭력은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명	563	314	92	19	-
	%	57.0	31.8	9.3	1.9	-
⑤ 데이트폭력의 폭력성은 다른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에 비해 위협적이지 않다	명	707	219	41	21	-
	%	71.6	22.2	4.1	2.1	-
⑥ 데이트폭력 피해 시 정신적으로 악화된다	명	71	33	249	635	-
	%	7.2	3.3	25.2	64.3	-
⑦ 데이트폭력 피해 시 신체적으로 악화된다	명	69	41	263	614	1
	%	7.0	4.1	26.6	62.1	0.1
⑧ 데이트폭력은 서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명	381	383	176	48	-
	%	38.6	38.8	17.8	4.9	-
⑨ 데이트폭력은 신체폭력만 의미한다	명	763	187	31	7	-
	%	77.2	18.9	3.1	0.7	-
⑩ 가해자 상담 및 교정치료가 데이트폭력을 없앨 수 있다	명	226	435	267	60	-
	%	22.9	44.0	27.0	6.1	-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에서 ‘상황별 데이트폭력 느낌이나 생각’의 성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17>과 같다.

세부문항 ①, ②과 ④~⑩까지 ‘상황별 데이트폭력 느낌이나 생각’은 성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세부사항 ⑧ 데이트폭력은 서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t=-9.604^*$)는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성별에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 보다 데이트폭력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성별)

(n=988)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여성 (n=673)	남성 (n=315)	여성	남성	
①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것은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	1.68	2.01	.759	.810	-6.072*
② 데이트폭력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난다	3.43	3.19	.784	.867	4.372*
③ 데이트폭력은 주로 젊은 세대(10대~30대)에서 일어난다	2.32	2.41	.904	.893	-1.589
④ 데이트폭력은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1.49	1.72	.720	.761	-4.567*
⑤ 데이트폭력의 폭력성은 다른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에 비해 위협적이지 않다	1.28	1.56	.621	.717	-6.048*
⑥ 데이트폭력 피해 시 정신적으로 악화된다	3.53	3.34	.868	.845	3.226*
⑦ 데이트폭력 피해 시 신체적으로 악화된다	3.52	3.29	.880	.871	3.939*
⑧ 데이트폭력은 서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1.71	2.28	.784	.901	-9.604*
⑨ 데이트폭력은 신체폭력만 의미한다	1.20	1.43	.485	.646	-5.570*
⑩ 가해자 상담 및 교정치료가 데이트폭력을 없앨 수 있다	2.10	2.29	.843	.839	-3.297*

* $p<.05$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에서 ‘상황별 데이트폭력 느낌이나 생각’의 연령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18>과 같다.

세부문항 ①, ②, ③, ④, ⑥, ⑦, ⑧, ⑩은 ‘상황별 데이트폭력 느낌이나 생각’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세부문항 ③ 데이트폭력은 주로 젊은 세대(10대~30대)에서 일어난다($f=10.896^*$)는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10대의 평균이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대가 다른 연령대 보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연령별)

(n=988)

구분	평균(표준편차)					f값
	10대 (n=288)	20대 (n=166)	30대 (n=170)	40대 (n=186)	50대 (n=178)	
①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것은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	1.80 (.798)	1.56 (.726)	1.82 (.741)	1.89 (.812)	1.85 (.826)	4.676*
② 데이트폭력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난다	3.33 (.795)	3.56 (.766)	3.53 (.690)	3.21 (.909)	3.18 (.851)	8.370*
③ 데이트폭력은 주로 젊은 세대(10대~30대)에서 일어난다	2.62 (.855)	2.27 (.884)	2.33 (.862)	2.22 (.930)	2.12 (.900)	10.896*
④ 데이트폭력은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1.73 (.798)	1.40 (.623)	1.47 (.690)	1.50 (.722)	1.59 (.763)	6.758*
⑤ 데이트폭력의 폭력성은 다른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에 비해 위협적이지 않다	1.43 (.654)	1.35 (.686)	1.29 (.590)	1.33 (.662)	1.40 (.731)	1.617
⑥ 데이트폭력 피해 시 정신적으로 악화된다	3.55 (.687)	3.54 (.776)	3.57 (.806)	3.32 (1.025)	3.33 (1.028)	4.096*
⑦ 데이트폭력 피해 시 신체적으로 악화된다	3.52 (.769)	3.53 (.791)	3.58 (.798)	3.32 (1.019)	3.26 (1.016)	4.720*
⑧ 데이트폭력은 서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2.09 (.927)	1.81 (.892)	1.73 (.798)	1.76 (.778)	1.93 (.821)	6.882*
⑨ 데이트폭력은 신체폭력만 의미한다	1.26 (.521)	1.25 (.558)	1.32 (.600)	1.25 (.565)	1.29 (.534)	0.441
⑩ 가해자 상담 및 교정치료가 데이트폭력을 없앨 수 있다	2.11 (.844)	2.13 (.857)	2.10 (.847)	2.09 (.810)	2.41 (.841)	4.759*

* $p<.05$

데이트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상황별 데이트폭력 인지여부’의 지역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19>와 같다.

세부문항 ①~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9>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지역별)

(n=988)

구분	평균(표준편차)					f값
	장안구 (n=227)	권선구 (n=269)	팔달구 (n=155)	영통구 (n=305)	기타 (n=32)	
①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것은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	1.78 (.786)	1.79 (.793)	1.81 (.812)	1.79 (.776)	1.75 (.880)	0.073
② 데이트폭력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난다	3.30 (.872)	3.38 (.809)	3.34 (.816)	3.38 (.794)	3.31 (.780)	0.374
③ 데이트폭력은 주로 젊은 세대(10대~30대)에서 일어난다	2.32 (.886)	2.35 (.921)	2.24 (.883)	2.42 (.907)	2.31 (.859)	1.113
④ 데이트폭력은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1.53 (.742)	1.57 (.738)	1.63 (.799)	1.54 (.711)	1.66 (.745)	0.619
⑤ 데이트폭력의 폭력성은 다른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에 비해 위협적이지 않다	1.33 (.674)	1.37 (.660)	1.39 (.698)	1.38 (.664)	1.38 (.554)	0.224
⑥ 데이트폭력 피해 시 정신적으로 악화된다	3.42 (.925)	3.48 (.866)	3.45 (.869)	3.49 (.847)	3.50 (.508)	0.272
⑦ 데이트폭력 피해 시 신체적으로 악화된다	3.41 (.905)	3.47 (.875)	3.39 (.901)	3.47 (.900)	3.50 (.508)	0.387
⑧ 데이트폭력은 서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1.85 (.849)	1.84 (.824)	2.02 (.915)	1.89 (.856)	2.00 (1.078)	1.346
⑨ 데이트폭력은 신체폭력만 의미한다	1.25 (.518)	1.24 (.523)	1.33 (.604)	1.29 (.568)	1.31 (.592)	0.785
⑩ 가해자 상담 및 교정치료가 데이트폭력을 없앨 수 있다	2.11 (.829)	2.14 (.845)	2.27 (.832)	2.18 (.867)	2.06 (.840)	1.055

*p<.05

2. 데이트폭력 경험과 대응

데이트폭력의 발생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데이트폭력 유형별(통제와 간섭,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험과 대응에 대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 데이트폭력 유형별 세부문항을 구성하여 경험정도를 물어보았으며 각 유형별 데이트폭력이 발생한 시기, 데이트폭력 피해 이후의 주된 느낌, 본인의 대응, 상대방의 반응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1) 통제와 간섭

데이트 관계에서 '통제와 간섭 경험여부'는 다음 <표 4-20>과 같다.

전체 988명의 응답자 중 통제와 간섭을 경험한 응답자는 57.4%(567명)로 절반 이상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0.3%(406명)로 남성 51.1%(161명) 보다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73.6%(131명)로 경험이 가장 많으며 30대 72.9%(124명), 40대 68.3%(127명), 20대 66.3%(110명), 10대 26.0%(75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통제와 간섭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팔달구 66.5%(103명), 장안구 63.4%(144명), 권선구 57.2%(154명), 영통구 51.8%(158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0>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통제와 간섭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경험자		비경험자	
		명	%	명	%
전체	988	567	57.4	421	42.6
성 별	여성	406	60.3	267	39.7
	남성	161	51.1	154	48.9
연 령 별	10대	75	26.0	213	74.0
	20대	110	66.3	56	33.7
	30대	124	72.9	46	27.1
	40대	127	68.3	59	31.7
	50대	131	73.6	47	26.4
지 역 별	장안구	144	63.4	83	36.6
	권선구	154	57.2	115	42.8
	팔달구	103	66.5	52	33.5
	영통구	158	51.8	147	48.2

데이트 관계에서 '통제와 간섭의 경험빈도'는 다음 <표 4-21>과 같다.

통제와 간섭의 경험빈도는 '전혀 없음'이 76.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통제와 간섭을 경험한 응답자³²⁾ 중 상대적으로 경험빈도가 높은 세부문항은 ②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했다 32.4%, ⑥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 32.6%, ⑪ 나의 귀가 시간을 체크한다 32.9%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값을 보면 '1년에 1~2번'이 13.0%로 가장 높았으며, '1달에 1~2번' 5.7%, '1주에 1~2번' 2.9%, '거의 매일' 1.6%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1년에 1~2번'은 ② 19.8%, ④ 17.8%, ⑤·⑥ 15.8%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1달에 1~2번'은 ⑪ 8.1%(80명), ⑥ 7.5%(74명), ① 7.3%(72명) 순, '1주에 1~2번'은 ⑥ 5.4%(53명), ⑪ 5.0%(49명), ② 4.4%(43명) 순, '거의 매일'은 ⑪ 5.0%(49명), ⑥ 3.9%(39명), ⑦ 1.6%(16명)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세부문항 ②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했다 ⑥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 ⑪ 나의 귀가 시간을 체크한다는 통제와 간섭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에 상대적으로 시기와 관계없이 높은 경험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통제와 간섭을 경험한 응답자 = 총 응답률(100%) - 세부문항별 '전혀 없음' 응답 = 1년에 1~2번' + '1달에 1~2번' + '1주에 1~2번' + '거의 매일'

〈표 4-21〉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통제와 간섭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빈도)

(n=567)

구분	단 위	전혀 없음	1년에 1~2번	1달에 1~2번	1주에 1~2번	거의 매일	모름/ 무응답
전체 평균	%	76.8	13.0	5.7	2.9	1.6	-
① 상대방이 내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점검했다	명	759	115	72	36	5	1
	%	76.8	11.6	7.3	3.6	0.5	0.1
②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했다	명	668	196	67	43	14	-
	%	67.6	19.8	6.8	4.4	1.4	-
③ 동아리나 모임활동을 못하게 했다	명	776	117	63	19	13	-
	%	78.5	11.8	6.4	1.9	1.3	-
④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했다	명	712	176	60	25	15	-
	%	72.1	17.8	6.1	2.5	1.5	-
⑤ 내가 하는 일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두게 한 적이 있다	명	747	156	57	21	7	-
	%	75.6	15.8	5.8	2.1	0.7	-
⑥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	명	666	156	74	53	39	-
	%	67.4	15.8	7.5	5.4	3.9	-
⑦ 나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했다	명	768	128	46	30	16	-
	%	77.7	13.0	4.7	3.0	1.6	-
⑧ 다른 상대를 만나는지 의심했다	명	802	104	47	28	7	-
	%	81.2	10.5	4.8	2.8	0.7	-
⑨ 학교나 직장 등 나의 활동반경에서 지켜보거나 감시한다 (스토킹)	명	902	42	19	16	9	-
	%	91.3	4.3	1.9	1.6	0.9	-
⑩ 지출을 의심하거나 통제한다(경제적 활동 전반)	명	855	89	24	12	8	-
	%	86.5	9.0	2.4	1.2	0.8	-
⑪ 나의 귀가 시간을 체크한다	명	663	147	80	49	49	-
	%	67.1	14.9	8.1	5.0	5.0	-
⑫ 나의 친구나 직장동료에 관하여 지나치게 자주 질문을 한다	명	788	110	60	16	14	-
	%	79.8	11.1	6.1	1.6	1.4	-

데이트 관계에서 ‘통제와 간섭 경험의 성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22>와 같다.

세부문항 ⑪은 통제와 간섭 경험여부에서 성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 보다 평균값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세부 문항에서는 성별 간 평균에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22>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통제와 간섭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성별)

(n=988)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여성 (n=673)	남성 (n=315)	여성	남성	
① 상대방이 내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점검했다	1.38	1.43	.845	.862	-0.808
②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했다	1.54	1.48	.914	.883	0.996
③ 동아리나 모임활동을 못하게 했다	1.34	1.38	.800	.783	-0.754
④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했다	1.45	1.40	.849	.813	0.848
⑤ 내가 하는 일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두게 한 적이 있다	1.34	1.42	.715	.815	-1.471
⑥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	1.65	1.57	1.129	.989	1.144
⑦ 나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했다	1.38	1.37	.864	.788	0.345
⑧ 다른 상대를 만나는지 의심했다	1.31	1.32	.764	.728	-0.106
⑨ 학교나 직장 등 나의 활동반경에서 지켜보거나 감시한다(스토킹)	1.16	1.18	.607	.647	-0.629
⑩ 지출을 의심하거나 통제한다(경제적 활동 전반)	1.19	1.25	.598	.661	-1.451
⑪ 나의 귀가 시간을 체크한다	1.72	1.53	1.203	.952	2.579*
⑫ 나의 친구나 직장동료에 관하여 지나치게 자주 질문을 한다	1.32	1.37	.786	.777	-0.916

*p<.05

데이트 관계에서 ‘통제와 간섭 경험의 연령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23>과 같다. 세부문항 ②~⑪은 통제와 간섭 경험여부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세부문항 ③ 동아리나 모임활동을 못하게 하였다($f=15.003^*$)는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20대의 평균이 1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대가 동아리나 모임활동에서 통제와 간섭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통제와 간섭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연령별)
(n=988)

구분	평균(표준편차)					f값
	10대 (n=288)	20대 (n=166)	30대 (n=170)	40대 (n=186)	50대 (n=178)	
① 상대방이 내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점검했다	1.35 (.933)	1.53 (.906)	1.43 (.820)	1.37 (.733)	1.36 (.792)	1.423
②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했다	1.24 (.767)	1.71 (1.039)	1.69 (1.003)	1.61 (.930)	1.53 (.730)	11.123*
③ 동아리나 모임활동을 못하게 했다	1.07 (.416)	1.55 (.944)	1.49 (.837)	1.42 (.880)	1.46 (.851)	15.003*
④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했다	1.17 (.663)	1.47 (.865)	1.64 (.908)	1.53 (.839)	1.56 (.895)	11.875*
⑤ 내가 하는 일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두게 한 적이 있다	1.13 (.538)	1.48 (.851)	1.39 (.779)	1.43 (.755)	1.54 (.817)	11.271*
⑥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	1.40 (1.034)	1.91 (1.254)	1.82 (1.168)	1.67 (1.064)	1.50 (.825)	8.267*
⑦ 나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했다	1.11 (.519)	1.48 (.926)	1.54 (.998)	1.48 (.902)	1.46 (.857)	10.648*
⑧ 다른 상대를 만나는지 의심했다	1.17 (.621)	1.30 (.751)	1.35 (.795)	1.42 (.816)	1.41 (.806)	4.458*
⑨ 학교나 직장 등 나의 활동반경에서 지켜보거나 감시한다(스토킹)	1.06 (.360)	1.22 (.725)	1.18 (.659)	1.21 (.669)	1.23 (.727)	3.412*
⑩ 지출을 의심하거나 통제한다(경제적 활동 전반)	1.01 (.144)	1.20 (.637)	1.25 (.671)	1.33 (.776)	1.35 (.753)	12.002*
⑪ 나의 귀가 시간을 체크한다	1.45 (1.106)	1.83 (1.258)	1.91 (1.259)	1.66 (1.024)	1.60 (.953)	5.838*
⑫ 나의 친구나 직장동료에 관하여 지나치게 자주 질문을 한다	1.24 (.758)	1.39 (.791)	1.39 (.852)	1.39 (.772)	1.34 (.752)	1.618

* $p < .05$

데이트 관계에서 ‘통제와 간섭 경험의 지역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24>와 같다.

세부문항 ①, ⑤, ⑥, ⑨, ⑩은 통제와 간섭 경험여부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세부문항 ⑨ 학교나 직장 등 나의 활동반경에서 지켜보거나 감시한다(스토킹)($f=5.097^*$)는 다른 문항과 비교하면 팔달구가 다른 지역과 상대적으로 평균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팔달구가 스토킹 관련 경험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통제와 간섭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지역별)
(n=988)

구분	평균(표준편차)					f값
	장안구 (n=227)	권선구 (n=269)	팔달구 (n=155)	영통구 (n=305)	기타 (n=32)	
① 상대방이 내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점검했다	1.37 (.737)	1.33 (.728)	1.61 (1.034)	1.37 (.897)	1.44 (.982)	3.054*
②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했다	1.58 (.891)	1.49 (.921)	1.57 (.822)	1.50 (.925)	1.34 (1.035)	0.795
③ 동아리나 모임활동을 못하게 했다	1.36 (.771)	1.40 (.834)	1.39 (.793)	1.30 (.743)	1.38 (1.070)	0.653
④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했다	1.46 (.858)	1.42 (.781)	1.54 (.949)	1.39 (.762)	1.44 (1.216)	0.884
⑤ 내가 하는 일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두게 한 적이 있다	1.38 (.728)	1.37 (.750)	1.51 (.871)	1.30 (.702)	1.13 (.554)	2.936*
⑥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	1.64 (1.110)	1.65 (1.064)	1.85 (1.233)	1.48 (.960)	1.69 (1.330)	2.999*
⑦ 나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했다	1.42 (.876)	1.38 (.840)	1.50 (.983)	1.30 (.729)	1.28 (.772)	1.849
⑧ 다른 상대를 만나는지 의심했다	1.32 (.779)	1.29 (.727)	1.45 (.913)	1.26 (.645)	1.31 (.821)	1.759
⑨ 학교나 직장 등 나의 활동반경에서 지켜보거나 감시한다(스토킹)	1.15 (.610)	1.14 (.539)	1.37 (.933)	1.11 (.467)	1.09 (.530)	5.097*
⑩ 지출을 의심하거나 통제한다(경제적 활동 전반)	1.19 (.576)	1.22 (.665)	1.34 (.758)	1.16 (.550)	1.00 (.000)	3.047*
⑪ 나의 귀가 시간을 체크한다	1.73 (1.177)	1.63 (1.128)	1.81 (1.157)	1.56 (1.050)	1.66 (1.405)	1.529
⑫ 나의 친구나 직장동료에 관하여 지나치게 자주 질문을 한다	1.31 (.765)	1.35 (.771)	1.45 (.891)	1.29 (.717)	1.44 (1.014)	1.298

* $p < .05$

데이트 관계에서 ‘통제와 간섭이 시작된 시기’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25>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① 기억나지 않는다 20.1%(199명)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④ 사건 후 1개월~3개월 9.4%(93명), ⑤ 사건 후 3개월~6개월 7.4%(73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① 34.7%(141명), ④ 16.5%(67명), ③ 14.0%(57명) 순, 남성은 ① 36.0%(58명), ④ 16.1%(26명), ⑤ 15.5%(25명)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통제와 간섭 발생 시기를 기억하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성이 남성 보다 통제와 간섭이 상대적으로 빨리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③ 28.0%(21명), ① 26.7%(20명), ④ 24.0%(18명)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④ 27.3%(30명), ① 21.8%(24명), ⑤ 19.1%(21명) 순, 30대는 ① 30.6%(38명), ④ 20.2%(25명), ⑤ 12.9%(16명) 순, 40대는 ① 44.9%(57명), ⑥ 13.4%(17명), ⑤ 11.0%(14명) 순, 50대는 ① 45.8%(60명), ⑤ 11.5%(15명), ⑨ 10.7%(14명)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공통적으로 ① 기억나지 않음을 제외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통제와 간섭의 시기가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는 ① 32.6%(47명), ④ 16.0%(23명), ⑤ 12.5%(18명)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으며, 권선구 ① 36.4%(56명), ④ 19.5%(30명), ⑤ 13.6%(21명) 순, 팔달구는 ① 33.3%(37명), ④ 18.9%(21명), ③ 17.1%(19명) 순, 영통구는 ① 33.5%(53명), ③·⑤ 14.6%(23명)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표 4-25〉 상대의 통제와 간섭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567	199	20.1	12	1.2	67	6.8	93	9.4	73	7.4	
성별	여성	406	141	34.7	9	2.2	57	14.0	67	16.5	48	11.8
	남성	161	58	36.0	3	1.9	10	6.2	26	16.1	25	15.5
연령별	10대	75	20	26.7	3	4.0	21	28.0	18	24.0	7	9.3
	20대	110	24	21.8	4	3.6	13	11.8	30	27.3	21	19.1
	30대	124	38	30.6	1	0.8	14	11.3	25	20.2	16	12.9
	40대	127	57	44.9	1	0.8	10	7.9	12	9.4	14	11.0
	50대	131	60	45.8	3	2.3	9	6.9	8	6.1	15	11.5
지역별	장안구	144	47	32.6	3	2.1	14	9.7	23	16.0	18	12.5
	권선구	154	56	36.4	1	0.6	15	9.7	30	19.5	21	13.6
	팔달구	111	37	33.3	3	2.7	19	17.1	21	18.9	11	9.9
	영통구	158	53	33.5	6	3.8	23	14.6	19	12.0	23	14.6
구분	사례수 (명)	⑥		⑦		⑧		⑨		⑩		
전체	567	56	5.7	23	2.3	8	0.8	33	3.3	3	0.3	
성별	여성	406	38	9.4	12	3.0	6	1.5	25	6.2	3	0.7
	남성	161	18	11.2	11	6.8	2	1.2	8	5.0	0	0.0
연령별	10대	75	6	8.0	0	0.0	0	0.0	0	0.0	0	0.0
	20대	110	10	9.1	4	3.6	2	1.8	1	0.9	1	0.9
	30대	124	12	9.7	7	5.6	3	2.4	8	6.5	0	0.0
	40대	127	17	13.4	5	3.9	1	0.8	10	7.9	0	0.0
	50대	131	11	8.4	7	5.3	2	1.5	14	10.7	2	1.5
지역별	장안구	144	12	8.3	11	7.6	1	0.7	15	10.4	0	0.0
	권선구	154	17	11.0	3	1.9	1	0.6	8	5.2	2	1.3
	팔달구	111	11	9.9	6	5.4	1	0.9	2	1.8	0	0.0
	영통구	158	17	10.8	3	1.9	5	3.2	8	5.1	1	0.6

① 기억나지 않는다

③ 사건 후 1개월 미만

⑤ 사건 후 3개월~6개월

⑦ 사건 후 1년~2년

⑨ 사건 후 3년 이상

② 사귀기 전

④ 사건 후 1개월~3개월

⑥ 사건 후 6개월~1년

⑧ 사건 후 2년~3년

⑩ 헤어지자고 한 이후

데이트 관계에서 ‘통제와 간섭으로 인한 주된 느낌을 우선순위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4-26>과 같다.

우선순위별로 보면 1순위 ② 아무렇지도 않았다 19.6%(111명/567명), 2순위 ③ 폭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18.2%(93명/511명), 3순위 ⑫ 상대의 통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15.7%(74명/47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우선순위를 보면 여성은 ② 19.7%(80명), ③ 17.6%(64명), ⑩ 14.5%(48명) 순, 남성은 ① 20.5%(33명), ③ 19.7%(29명), ⑫ 19.1%(2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성은 통제와 간섭을 경험했을 때 데이트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했을 경우 헤어지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과 달리, 남성은 사랑으로 느끼거나 혹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 우선순위를 보면 10대는 ② 38.7%(29명), ③ 32.9%(24명), ⑫ 22.4%(15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②·③ 23.6%(26명), ⑩ 17.2%(17명), ①·③·⑩ 15.2%(14명) 순, 30대는 ③ 16.9%(21명), ②·③·⑪·⑫ 13.9%(15명), ⑫ 16.3%(16명) 순, 40대는 ③ 15.7%(20명), ③ 18.3%(21명), ⑪·⑫ 13.7%(14명) 순, 50대는 ① 16.0%(21명), ② 14.7%(17명), ⑩ 17.0%(1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10대에서 40대는 통제와 간섭을 경험하였을 때 인식하지 못하거나 폭력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50대는 사랑으로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0대와 40대는 통제와 간섭으로 인해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우선순위를 보면 장안구는 ③ 20.1%(29명), ② 18.8%(25명), ⑫ 16.9%(21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② 19.5%(30명), ③ 20.7%(29명), ⑩ 16.2%(21명) 순, 팔달구는 ② 21.4%(22명), ③ 18.7%(17명) ① 17.6%(15명) 순, 영통구는 ② 20.3%(32명), ③ 20.9%(29명), ⑫ 17.7%(2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26〉 통제와 간섭으로 인한 귀하의 주된 느낌은 어떠하였습니까?(우선순위)

구분	사례수 (명)	1순위			2순위			3순위		
		문항	명	%	문항	명	%	문항	명	%
전체	567	②	111	19.6	③	93	18.2	⑫	74	15.7
성별	여성	②	80	19.7	③	64	17.6	⑩	48	14.5
	남성	①	33	20.5	③	29	19.7	⑫	27	19.1
연령별	10대	②	29	38.7	③	24	32.9	⑫	15	22.4
	20대	②,③	26	23.6	⑩	17	17.2	①,③ ⑩	14	15.2
	30대	③	21	16.9	②,③ ⑪,⑫	15	13.9	⑫	16	16.3
	40대	③	20	15.7	③	21	18.3	⑪,⑫	14	13.7
	50대	①	21	16.0	②	17	14.7	⑩	19	17.0
지역별	장안구	③	29	20.1	②	25	18.8	⑫	21	16.9
	권선구	②	30	19.5	③	29	20.7	⑩	21	16.2
	팔달구	②	22	21.4	③	17	18.7	①	15	17.6
	영통구	②	32	20.3	③	29	20.9	⑫	22	17.7

- | | |
|--------------------------|-----------------------------|
| ①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 ② 아무렇지도 않았다 |
| ③ 폭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 ④ 내가 더 잘 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 |
| ⑤ 상대가 불쌍했다 | ⑥ 창피했다 |
| ⑦ 무기력 또는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졌다 | ⑧ 점점 무섭고 두려웠다 |
| ⑨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 ⑩ 헤어지고 싶었다 |
| ⑪ 상대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 | ⑫ 상대의 통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

데이트 관계에서 '통제와 간섭이 있었을 때 주된 반응'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27>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②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25.9%(147명)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⑥ 내 기분을 표현했다 23.1%(131명), ③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의 기분을 대항했다 13.2%(75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② 24.6%(100명), ⑥ 25.4%(103명), ⑤ 13.3%(54명) 순, 남성은 ② 29.2%(47명), ③ 20.5%(33명), ⑥ 17.4%(2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통제와 간섭이 있었을 때, 성별과 관계없이 문제 삼지 않거나 기분을 표현하는 반면 여성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남성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② 42.7%(32명), ⑥ 16.0%(12명), ③ 12.0%(9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② 28.2%(31명), ⑥ 25.5%(28명), ③ 17.3%(19명) 순, 30대는 ② 25.0%(31명), ⑥ 20.2%(25명), ⑤ 16.1%(20명) 순, 40대는 ⑥ 24.4%(31명), ② 22.0%(28명), ⑤ 16.5%(21명) 순, 50대는 ⑥ 26.7%(35명), ② 19.1%(25명), ⑤ 16.8%(2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통제와 간섭을 문제 삼지 않거나 기분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는 ② 25.0%(36명), ⑥ 21.5%(31명), ⑨ 12.5%(18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⑥ 29.9%(46명), ② 23.4%(36명), ⑤ 13.6%(21명) 순, 팔달구는 ② 28.8%(32명), ③ 18.0%(20명), ⑥ 17.1%(19명) 순, 영통구는 ② 31.6%(50명), ⑥ 20.3%(32명), ⑤ 16.5%(2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27> 귀하는 통제와 간섭이 있었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명	%	명	%	명	%	명	%	
전체	567	13	2.3	147	25.9	75	13.2	28	4.9	
성 별	여성	406	9	2.2	100	24.6	42	10.3	22	5.4
	남성	162	4	2.5	47	29.2	33	20.5	6	3.7
연 령 별	10대	75	1	1.3	32	42.7	9	12.0	6	8.0
	20대	110	4	3.6	31	28.2	19	17.3	3	2.7
	30대	124	1	0.8	31	25.0	19	15.3	7	5.6
	40대	127	3	2.4	28	22.0	16	12.6	6	4.7
	50대	131	4	3.1	25	19.1	12	9.2	6	4.6
지 역	장안구	144	5	3.5	36	25.0	17	11.8	7	4.9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명	%	명	%	명	%	명	%
별	권선구	154	4	2.6	36	23.4	16	10.4	7	4.5
	팔달구	111	2	1.8	32	28.8	20	18.0	8	7.2
	영통구	158	2	1.3	50	31.6	21	13.3	7	4.4
구분		사례수 (명)	⑤		⑥		⑦		⑧	
			명	%	명	%	명	%	명	%
전체		567	73	12.9	131	23.1	4	0.7	32	5.6
성 별	여성	406	54	13.3	103	25.4	3	0.7	26	6.4
	남성	162	19	11.8	28	17.4	1	0.6	6	3.7
연 령 별	10대	75	2	2.7	12	16.0	0	0.0	6	8.0
	20대	110	8	7.3	28	25.5	1	0.9	7	6.4
	30대	124	20	16.1	25	20.2	0	0.0	5	4.0
	40대	127	21	16.5	31	24.4	1	0.8	6	4.7
	50대	131	22	16.8	35	26.7	2	1.5	8	6.1
지 역 별	장안구	144	14	9.7	31	21.5	1	0.7	10	6.9
	권선구	154	21	13.6	46	29.9	2	1.3	9	5.8
	팔달구	111	11	9.9	19	17.1	1	0.9	4	3.6
	영통구	158	26	16.5	32	20.3	0	0.0	7	4.4
구분		사례수 (명)	⑨		⑩		⑪			
			명	%	명	%	명	%		
전체		567	43	7.6	9	1.6	2	0.4		
성 별	여성	406	35	8.6	6	1.5	2	0.5		
	남성	162	8	5.0	3	1.9	0	0.0		
연 령 별	10대	75	3	4.0	1	1.3	0	0.0		
	20대	110	6	5.5	0	0.0	0	0.0		
	30대	124	12	9.7	1	0.8	0	0.0		
	40대	127	10	7.9	5	3.9	0	0.0		
	50대	131	12	9.2	2	1.5	2	1.5		
지 역 별	장안구	144	18	12.5	2	1.4	0	0.0		
	권선구	154	6	3.9	2	1.3	1	0.6		
	팔달구	111	8	7.2	3	2.7	1	0.9		
	영통구	158	11	7.0	1	0.6	0	0.0		

- | | |
|-----------------------------|---------------------|
| ①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 ②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
| ③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줬다 | ④ 상대방이 사과하여 용서했다 |
| 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 ⑥ 내 기분을 표현했다 |
| ⑦ (몸을 사용하여) 맞서서 대항했다 | ⑧ 무시했다 |
| ⑨ 헤어지자고 했다 | ⑩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
| ⑪ 상담소나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 ⑫ 기타() |

데이트 관계에서 '통제와 간섭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의 주된 반응'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28>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38.1%(216명)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⑪ 헤어지자고 얘기하지 않아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다 28.2%(160명), ② 뭐 그런 일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 14.3%(8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① 40.1%(163명), ⑪ 26.8%(109명), ② 14.8%(60명) 순, 남성은 ① 32.9%(53명), ⑪ 31.7%(51명), ② 13.0%(2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통제와 간섭이 있었을 때, 성별과 관계없이 헤어지자고 얘기하지 않은 응답자가 많았으며, 상대방이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① 34.7%(26명), ⑪ 30.7%(23명), ③ 17.3%(13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① 40.9%(45명), ⑪ 32.7%(36명), ② 10.0%(11명) 순, 30대는 ① 36.3%(45명), ⑪ 30.6%(38명), ② 16.9%(21명) 순, 40대는 ① 38.6%(49명), ⑪ 27.6%(35명), ② 14.2%(18명) 순, 50대는 ① 38.9%(51명), ⑪ 21.4%(28명), ② 22.2%(2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와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는 ① 38.2%(55명), ⑪ 25.0%(36명), ② 15.3%(22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① 39.0%(60명), ⑪ 25.3%(39명), ② 21.4%(33명) 순, 팔달구는 ① 38.7%(43명), ⑪ 33.3%(37명), ② 7.2%(8명) 순, 영통구는 ① 38.6%(61명), ⑪ 29.1%(46명), ② 12.0%(1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28> 귀하가 통제와 간섭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의 주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명	%	명	%	명	%	명	%	
전체	567	216	38.1	81	14.3	35	6.2	33	5.8	
성 별	여성	406	163	40.1	60	14.8	26	6.4	20	4.9
	남성	162	53	32.9	21	13.0	9	5.6	13	8.1
연 령 별	10대	75	26	34.7	2	2.7	13	17.3	4	5.3
	20대	110	45	40.9	11	10.0	8	7.3	6	5.5
	30대	124	45	36.3	21	16.9	6	4.8	11	8.9
	40대	127	49	38.6	18	14.2	4	3.1	8	6.3
	50대	131	51	38.9	29	22.1	4	3.1	4	3.1
지 역 별	장안구	144	55	38.2	22	15.3	12	8.3	10	6.9
	권선구	154	60	39.0	33	21.4	6	3.9	9	5.8
	팔달구	111	43	38.7	8	7.2	7	6.3	7	6.3

2)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데이트폭력 유형 중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의 경험여부’는 다음 <표 4-29>와 같다.

전체 988명의 응답자 중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37.1%(367명)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38.5%(259명)로 남성 34.3%(108명) 보다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53.9%(96명)로 경험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40대 51.6%(96명), 30대 50.6%(86명), 20대 39.2%(65명), 10대 8.3%(24명)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팔달구 45.8%(71명), 권선구 38.7%(104명), 장안구 36.6%(83명), 영통구 34.4%(10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9>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경험자		비경험자	
		명	%	명	%
전체	988	367	37.1	621	62.9
성 별	여성	259	38.5	414	61.5
	남성	108	34.3	207	65.7
연 령 별	10대	24	8.3	264	91.7
	20대	65	39.2	101	60.8
	30대	86	50.6	84	49.4
	40대	96	51.6	90	48.4
	50대	96	53.9	82	46.1
지 역 별	장안구	83	36.6	144	63.4
	권선구	104	38.7	165	61.3
	팔달구	71	45.8	84	54.2
	영통구	105	34.4	200	65.6

데이트 관계에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의 경험빈도’는 다음 <표 4-30>과 같다.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의 경험빈도는 ‘전혀 없음’이 89.1%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³³⁾ 중 상대적으로 경험빈도가 높은 세부문항은 ②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자주 했다 22.4%, ④ 화가 나서 발을 세계 구르거나 문을 세계 닫은 적이 있다 21.0%, ①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19.4%로 나타났다.

시기별 전체 평균값으로 보면 ‘1년에 1~2번’이 7.7%로 가장 많았으며, ‘1달에 1~2번’ 2.0%, ‘1주에 1~2번’ 0.9%, ‘거의 매일’ 0.3%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1년에 1~2번’은 ④ 16.7%(165명), ② 16.5%(163명), ① 14.7%(145명)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1달에 1~2번’은 ② 3.2%(32명), ③·⑤ 3.0%(30명) 순, ‘1주에 1~2번’은 ② 2.3%(23명), ①·④ 1.5%(15명) 순, ‘거의 매일’은 ②·③ 0.4%(4명)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세부문항 ①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 있다와 ②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자주 했다, ③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④ 화가 나서 발을 세계 구르거나 문을 세계 닫은 적이 있다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에 상대적으로 시기와 관계없이 경험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통제와 경험을 경험한 응답자 = 총 응답률(100%) - 세부문항별 ‘전혀 없음’ 응답 = 1년에 1~2번 + ‘1달에 1~2번’ + ‘1주에 1~2번’ + ‘거의 매일’

〈표 4-30〉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빈도)

(n=988)

구분	단 위	전혀 없음	1년에 1~2번	1달에 1~2번	1주에 1~2번	거의 매일	모름/ 무응답
전체 평균	%	89.1	7.7	2.0	0.9	0.3	-
①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명	796	145	29	15	3	-
	%	80.6	14.7	2.9	1.5	0.3	-
②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자주 했다	명	766	163	32	23	4	-
	%	77.6	16.5	3.2	2.3	0.4	-
③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명	820	123	30	11	4	-
	%	83.0	12.4	3.0	1.1	0.4	-
④ 화가 나서 발을 세계 구르거나 문을 세계 닫은 적이 있다	명	780	165	26	15	2	-
	%	79.0	16.7	2.6	1.5	0.2	-
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한 적이 있다	명	832	110	30	11	5	-
	%	84.2	11.1	3.0	1.1	0.5	-
⑥ 나를 죽이겠다고거나 기만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명	941	21	16	7	3	-
	%	95.2	2.1	1.6	0.7	0.3	-
⑦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반려동물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명	952	17	11	6	2	-
	%	96.4	1.7	1.1	0.6	0.2	-
⑧ 상대가 쓴 데이트비용을 내 놓으라고 했다	명	943	27	11	5	2	-
	%	95.4	2.7	1.1	0.5	0.2	-
⑨ 상대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았다	명	938	29	15	1	5	-
	%	94.9	2.9	1.5	0.1	0.5	-
⑩ 나의 애완동물을 학대하거나 소중한 물건을 가져갔다	명	951	22	10	4	1	-
	%	96.3	2.2	1.0	0.4	0.1	-
⑪ 협박이나 강요로 돈, 귀중품을 가져갔다	명	959	12	11	5	1	-
	%	97.1	1.2	1.1	0.5	0.1	-

데이트 관계에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경험의 성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31>와 같다.

세부문항 간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경험여부에서 성별의 평균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모든 세부문항에서 1점대의 낮은 평균값이 나타나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은 성별과 무관하게 경험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성별)

(n=988)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여성 (n=673)	남성 (n=315)	여성	남성	
①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1.26	1.27	.602	.649	-0.233
②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자주 했다	1.31	1.32	.680	.698	-0.252
③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1.24	1.23	.595	.601	0.225
④ 화가 나서 발을 세계 구르거나 문을 세계 닫은 적이 있다	1.30	1.22	.627	.554	1.898
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한 적이 있다	1.23	1.22	.587	.637	0.351
⑥ 나를 죽이겠다고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1.08	1.11	.423	.466	-1.028
⑦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반려동물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1.05	1.09	.372	.397	-1.276
⑧ 상대가 쓴 데이트비용을 내 놓으라고 했다	1.06	1.10	.348	.441	-1.162
⑨ 상대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았다	1.08	1.10	.407	.437	-0.796
⑩ 나의 애완동물을 학대하거나 소중한 물건을 가져갔다	1.04	1.09	.285	.420	-1.697
⑪ 협박이나 강요로 돈, 귀중품을 가져갔다	1.04	1.09	.278	.443	-1.906

*p<.05

데이트 관계에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경험의 연령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32>과 같다.

세부분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⑧, ⑨, ⑩은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경험여부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세부분항 ④ 화가 나서 발을 세계 구르거나 문을 세계 닫은 적이 있다($f=17.713^*$)는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50대와 10대의 평균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의 정서적 폭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연령별)

(n=988)

구분	평균(표준편차)					f값
	10대 (n=288)	20대 (n=166)	30대 (n=170)	40대 (n=186)	50대 이상 (n=178)	
①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1.12 (.515)	1.30 (.665)	1.28 (.608)	1.35 (.668)	1.35 (.640)	6.185*
②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자주 했다	1.09 (.474)	1.28 (.668)	1.44 (.705)	1.47 (.779)	1.42 (.772)	13.206*
③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1.04 (.326)	1.24 (.644)	1.29 (.580)	1.36 (.685)	1.37 (.718)	12.933*
④ 화가 나서 발을 세계 구르거나 문을 세계 닫은 적이 있다	1.06 (.368)	1.22 (.614)	1.32 (.572)	1.42 (.702)	1.47 (.714)	17.713*
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한 적이 있다	1.04 (.342)	1.21 (.570)	1.24 (.581)	1.35 (.706)	1.39 (.768)	12.740*
⑥ 나를 죽이겠다고거나 그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1.02 (.263)	1.05 (.335)	1.09 (.396)	1.12 (.477)	1.18 (.665)	4.284*
⑦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반려동물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1.02 (.263)	1.08 (.372)	1.06 (.302)	1.09 (.457)	1.11 (.504)	1.773
⑧ 상대가 쓴 데이트비용을 내 놓으라고 했다	1.02 (.212)	1.10 (.449)	1.06 (.260)	1.12 (.484)	1.10 (.476)	2.771*
⑨ 상대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았다	1.02 (.269)	1.11 (.497)	1.05 (.272)	1.14 (.562)	1.12 (.454)	3.093*
⑩ 나의 애완동물을 학대하거나 소중한 물건을 가져갔다	1.01 (.118)	1.07 (.374)	1.06 (.321)	1.09 (.457)	1.10 (.385)	2.835*
⑪ 협박이나 강요로 돈, 귀중품을 가져갔다	1.02 (.212)	1.08 (.412)	1.04 (.286)	1.08 (.415)	1.08 (.390)	1.700

* $p < .05$

데이트 관계에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경험의 지역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33>과 같다.

세부분항 ②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경험여부에서 팔달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나머지 세부분항에서는 지역별 평균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33>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지역별)

(n=988)

구분	평균(표준편차)					f값
	장안구 (n=227)	권선구 (n=269)	팔달구 (n=155)	영통구 (n=305)	기타 (n=32)	
①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1.25 (.583)	1.25 (.601)	1.37 (.774)	1.23 (.544)	1.22 (.751)	1.568
②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자주 했다	1.32 (.664)	1.30 (.666)	1.46 (.824)	1.26 (.624)	1.22 (.751)	2.389*
③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1.26 (.642)	1.22 (.578)	1.32 (.674)	1.20 (.517)	1.13 (.707)	1.462
④ 화가 나서 발을 세계 구르거나 문을 세계 닫은 적이 있다	1.28 (.615)	1.28 (.591)	1.36 (.711)	1.23 (.527)	1.19 (.780)	1.324
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한 적이 있다	1.22 (.584)	1.23 (.608)	1.34 (.742)	1.17 (.499)	1.19 (.780)	2.052
⑥ 나를 죽이겠다고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1.09 (.442)	1.09 (.460)	1.15 (.560)	1.04 (.272)	1.13 (.707)	1.799
⑦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반려동물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1.07 (.364)	1.07 (.422)	1.12 (.488)	1.03 (.197)	1.13 (.707)	1.901
⑧ 상대가 쓴 데이트비용을 내 놓으라고 했다	1.07 (.375)	1.07 (.398)	1.12 (.426)	1.05 (.321)	1.09 (.530)	0.911
⑨ 상대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았다	1.08 (.454)	1.10 (.421)	1.13 (.437)	1.05 (.321)	1.13 (.707)	1.238
⑩ 나의 애완동물을 학대하거나 소중한 물건을 가져갔다	1.06 (.320)	1.05 (.352)	1.10 (.414)	1.05 (.300)	1.00 (.000)	1.074
⑪ 협박이나 강요로 돈, 귀중품을 가져갔다	1.07 (.450)	1.03 (.181)	1.11 (.478)	1.03 (.220)	1.09 (.530)	2.223

*p<.05

데이트 관계에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 시작된 시기’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34>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① 기억나지 않는다 38.1%(140명)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⑤·⑥ 사권 후 3개월~6개월·사권 후 6개월~1년 11.4%(42명), ④ 사권 후 1개월~3개월 10.1%(37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① 39.0%(101명), ⑥ 11.6%(30명), ④·⑤ 10.0%(26명) 순, 남성은 ① 36.1%(39명), ⑤ 14.8%(16명), ⑥ 11.1%(1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피해 발생시기를 기억하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이 빨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① 37.5%(9명), ③ 20.8%(5명), ⑥ 16.7%(4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① 33.8%(22명), ⑤ 20.0%(13명), ④ 15.4%(10명) 순, 30대는 ① 31.4%(27명), ⑤ 19.8%(17명), ④·⑥·⑦ 8.1%(7명) 순, 40대는 ① 42.7%(41명), ⑥ 17.7%(17명), ⑨ 12.5%(12명) 순, 50대는 ① 42.7%(41명), ⑨ 12.5%(12명), ④ 11.5%(1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공통적으로 ① 기억나지 않음을 제외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피해 발생 시기가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는 ① 35.7%(30명), ⑤·⑨ 13.1%(11명), ④ 9.5%(8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권선구 ① 38.5%(42명), ⑥ 15.6%(17명), ⑤ 11.0%(12명) 순, 팔달구는 ① 36.2%(25명), ④ 14.5%(10명), ⑤·⑥ 11.6%(8명) 순, 영통구는 ① 41.0%(43명), ⑥ 11.4%(12명), ⑤ 10.5%(1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34〉 상대의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367	140	38.1	6	1.6	19	5.2	37	10.1	42	11.4	
성별	여성	259	101	39.0	4	1.5	15	5.8	26	10.0	26	10.0
	남성	108	39	36.1	2	1.9	4	3.7	11	10.2	16	14.8
연령별	10대	24	9	37.5	2	8.3	5	20.8	1	4.2	1	4.2
	20대	65	22	33.8	2	3.1	2	3.1	10	15.4	13	20.0
	30대	86	27	31.4	0	0.0	6	7.0	7	8.1	17	19.8
	40대	96	41	42.7	1	1.0	3	3.1	8	8.3	4	4.2
	50대	96	41	42.7	1	1.0	3	3.1	11	11.5	7	7.3
지역별	장안구	84	30	35.7	2	2.4	2	2.4	8	9.5	11	13.1
	권선구	109	42	38.5	1	0.9	7	6.4	10	9.2	12	11.0
	팔달구	69	25	36.2	1	1.4	5	7.2	10	14.5	8	11.6
	영통구	105	43	41.0	2	1.9	5	4.8	9	8.6	11	10.5
구분	사례수 (명)	⑥		⑦		⑧		⑨		⑩		
전체	367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여성	259	30	11.6	18	6.9	6	2.3	24	9.3	9	3.5
	남성	108	12	11.1	10	9.3	4	3.7	6	5.6	4	3.7
연령별	10대	24	4	16.7	1	4.2	0	0.0	0	0.0	1	4.2
	20대	65	8	12.3	4	6.2	4	6.2	0	0.0	0	0.0
	30대	86	7	8.1	7	8.1	5	5.8	6	7.0	4	4.7
	40대	96	17	17.7	8	8.3	0	0.0	12	12.5	2	2.1
	50대	96	6	6.3	8	8.3	1	1.0	12	12.5	6	6.3
지역별	장안구	84	5	6.0	7	8.3	3	3.6	11	13.1	5	6.0
	권선구	109	17	15.6	8	7.3	1	0.9	10	9.2	1	0.9
	팔달구	69	8	11.6	6	8.7	1	1.4	2	2.9	3	4.3
	영통구	105	12	11.4	7	6.7	5	4.8	7	6.7	4	3.8

① 기억나지 않는다

③ 사건 후 1개월 미만

⑤ 사건 후 3개월~6개월

⑦ 사건 후 1년~2년

⑨ 사건 후 3년 이상

② 사귀기 전

④ 사건 후 1개월~3개월

⑥ 사건 후 6개월~1년

⑧ 사건 후 2년~3년

⑩ 헤어지자고 한 이후

데이트 관계에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으로 인한 주된 느낌을 우선순위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4-35>와 같다.

우선순위별로 보면 1순위 ⑩ 헤어지고 싶었다 17.7%(65명/367명), 2순위 ⑪ 상대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 18.5%(53명/314명), 3순위 ⑩ 헤어지고 싶었다 16.3%(43명/286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우선순위를 보면 여성은 ⑩ 19.3%(50명), ⑪ 21.3%(47명), ⑩ 17.9%(35명) 순, 남성은 ④ 16.7%(18명), ④ 18.3%(17명), ④ 16.7%(1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성은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경험했을 때 헤어지고 싶은 느낌이 들거나 상대에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본인이 더 잘 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여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 우선순위를 보면 10대는 ⑦ 20.8%(5명), ② 21.7%(5명), ③ 17.4%(4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⑩ 21.5%(14명), ⑪ 26.3%(15명), ⑩ 17.6%(9명) 순, 30대는 ⑩ 20.9%(18명), ⑩ 16.7%(11명), ④ 18.6%(11명) 순, 40대는 ⑦ 21.9%(21명), ⑪ 22.0%(18명), ⑩ 18.3%(13명) 순, 50대는 ④ 18.8%(18명), ⑦ 17.4%(15명), ⑪ 19.5%(1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10대와 40대는 무기력과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와 30대는 헤어지고 싶은 느낌, 50대는 본인이 더 잘 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우선순위를 보면 장안구는 ⑩ 20.5%(17명), ⑪ 18.5%(12명), ⑪ 12.9%(8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⑪ 18.3%(19명), ⑪ 22.1%(21명), ⑩ 18.6%(16명) 순, 팔달구는 ④ 22.5%(16명), ⑦ 21.9%(14명) ⑩ 19.0%(11명) 순, 영통구는 ⑩ 19.0%(20명), ⑪ 22.1%(19명), ⑩ 17.1%(1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35〉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으로 인한 귀하의 주된 느낌은 어떠하였습니까?(우선순위)

구분	사례수 (명)	1순위			2순위			3순위			
		문항	명	%	문항	명	%	문항	명	%	
전체	367	⑩	65	17.7	⑪	53	18.5	⑩	43	16.3	
성 별	여성	259	⑩	50	19.3	⑪	47	21.3	⑩	35	17.9
	남성	108	④	18	16.7	④	17	18.3	④	15	16.7
연 령 별	10대	24	⑦	5	20.8	②	5	21.7	③	4	17.4
	20대	65	⑩	14	21.5	⑪	15	26.3	⑩	9	17.6
	30대	86	⑩	18	20.9	⑩	11	16.7	④	11	18.6
	40대	96	⑦	21	21.9	⑪	18	22.0	⑩	13	18.3
	50대	96	④	18	18.8	⑦	15	17.4	⑪	16	19.5
지 역 별	장안구	84	⑩	17	20.5	⑪	12	18.5	⑪	8	12.9
	권선구	109	⑪	19	18.3	⑪	21	22.1	⑩	16	18.6
	팔달구	69	④	16	22.5	⑦	14	21.9	⑩	11	19.0
	영통구	105	⑩	20	19.0	⑪	19	22.1	⑩	13	17.1

- | | |
|--------------------------|-----------------------------|
| ①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 ② 아무렇지도 않았다 |
| ③ 폭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 ④ 내가 더 잘 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 |
| ⑤ 상대가 불쌍했다 | ⑥ 창피했다 |
| ⑦ 무기력 또는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졌다 | ⑧ 점점 무섭고 두려웠다 |
| ⑨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 ⑩ 헤어지고 싶었다 |
| ⑪ 상대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 | |

데이트 관계에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 있었을 때 주된 반응’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36>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⑥ 내 기분을 표현했다 20.2%(74명)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16.3%(60명), ②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13.6%(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⑥ 22.4%(58명), ⑤ 16.6%(43명), ⑨ 13.1%(34명) 순, 남성은 ② 19.4%(21명), ③ 17.6%(19명), ⑤ 15.7%(1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 있었을 때, 성별과 관계없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여성은 본인의 기분을 표현하거나 헤어지자고 하였고, 남성은 문제 삼지 않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②·③·⑥ 16.7%(4명), ⑤·⑧·⑨ 12.5%(5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⑥ 20.0%(13명), ⑨ 13.8%(9명), ②·⑤ 16.9%(11명) 순, 30대는 ⑥ 19.8%(17명), ②·⑤·⑨ 17.4%(15명), ③ 12.8%(11명) 순, 40대는 ⑥ 27.1%(26명), ⑤ 15.6%(15명), ⑧ 10.4%(10명) 순, 50대는 ⑤ 16.7%(16명), ②·⑥ 14.6%(14명), ④ 13.5%(1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에 대하여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나 본인의 기분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에서 40대까지는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는 경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는 ⑥ 21.4%(18명), ⑤ 17.9%(15명), ⑧ 11.9%(10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⑥ 25.7%(28명), ⑤ 15.6%(17명), ② 13.8%(15명) 순, 팔달구는 ②·⑤ 17.4%(12명), ③ 14.5%(10명) 순, 영통구는 ⑥ 20.0%(21명), ⑨ 17.1%(18명), ⑤ 15.2%(1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36> 귀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 있었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명	%	명	%	명	%	명	%	
전체	367	22	6.0	50	13.6	38	10.4	29	7.9	
성 별	여성	259	19	7.3	29	11.2	19	7.3	22	8.5
	남성	108	3	2.8	21	19.4	19	17.6	7	6.5
연 령 별	10대	24	0	0.0	4	16.7	4	16.7	0	0.0
	20대	65	5	7.7	11	16.9	8	12.3	2	3.1
	30대	86	3	3.5	15	17.4	11	12.8	5	5.8
	40대	96	6	6.3	6	6.3	7	7.3	9	9.4
	50대	96	8	8.3	14	14.6	8	8.3	13	13.5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명	%	명	%	명	%	명	%	
지역별	장안구	84	5	6.0	9	10.7	5	6.0	6	7.1
	권선구	109	7	6.4	15	13.8	10	9.2	8	7.3
	팔달구	69	7	10.1	12	17.4	10	14.5	6	8.7
	영통구	105	3	2.9	14	13.3	13	12.4	9	8.6
구분	사례수 (명)	⑤		⑥		⑦		⑧		
전체	367	60	16.3	74	20.2	9	2.5	23	6.3	
성별	여성	259	43	16.6	58	22.4	6	2.3	18	6.9
	남성	108	17	15.7	16	14.8	3	2.8	5	4.6
연령별	10대	24	3	12.5	4	16.7	0	0.0	3	12.5
	20대	65	11	16.9	13	20.0	2	3.1	2	3.1
	30대	86	15	17.4	17	19.8	0	0.0	1	1.2
	40대	96	15	15.6	26	27.1	4	4.2	10	10.4
	50대	96	16	16.7	14	14.6	3	3.1	7	7.3
지역별	장안구	84	15	17.9	18	21.4	2	2.4	10	11.9
	권선구	109	17	15.6	28	25.7	3	2.8	5	4.6
	팔달구	69	12	17.4	7	10.1	0	0.0	2	2.9
	영통구	105	16	15.2	21	20.0	4	3.8	6	5.7
구분	사례수 (명)	⑨		⑩		⑪				
전체	367	43	11.7	8	2.2	5	1.4			
성별	여성	259	34	13.1	4	1.5	5	1.9		
	남성	108	9	8.3	4	3.7	0	0.0		
연령별	10대	24	3	12.5	1	4.2	0	0.0		
	20대	65	9	13.8	1	1.5	0	0.0		
	30대	86	15	17.4	1	1.2	1	1.2		
	40대	96	10	10.4	2	2.1	1	1.0		
	50대	96	6	6.3	3	3.1	3	3.1		
지역별	장안구	84	9	10.7	1	1.2	3	3.6		
	권선구	109	8	7.3	4	3.7	1	0.9		
	팔달구	69	8	11.6	3	4.3	1	1.4		
	영통구	105	18	17.1	0	0.0	0	0.0		

- | | |
|-----------------------------|---------------------|
| ①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 ②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
| ③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줬다 | ④ 상대방이 사과하여 용서했다 |
| 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 ⑥ 내 기분을 표현했다 |
| ⑦ (몸을 사용하여) 맞서서 대항했다 | ⑧ 무시했다 |
| ⑨ 헤어지자고 했다 | ⑩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
| ⑪ 상담소나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 ⑫ 기타() |

데이트 관계에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의 주된 반응'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37>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38.7%(142명)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⑪ 헤어지자고 얘기하지 않아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다 24.8%(91명), ② 뭐 그런 일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 14.4%(53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① 41.7%(108명), ⑪ 22.8%(59명), ② 15.4%(40명) 순, 남성은 ① 31.5%(34명), ⑪ 29.6%(32명), ② 12.0%(1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의 주된 반응이 성별과 관계없이 헤어지자고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으며,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거나 오히려 화는 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① 41.7%(10명), ⑪ 20.8%(5명), ②·③ 12.5%(3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① 33.8%(22명), ⑪ 27.7%(18명), ②·③ 10.8%(7명) 순, 30대는 ① 32.6%(28명), ⑪ 30.2%(26명), ② 10.5%(9명) 순, 40대는 ① 45.8%(44명), ⑪ 20.8%(20명), ② 15.6%(15명) 순, 50대는 ① 39.6%(38명), ⑪ 22.9%(22명), ② 19.8%(1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 구분 없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의 주된 반응은 성별과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거나 오히려 화는 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20대는 순순히 헤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는 ① 38.1%(32명), ⑪ 25.0%(21명), ② 13.1%(11명) 순으로 가장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① 33.9%(37명), ②·⑪ 19.3%(21명), ④ 10.1%(11명) 순, 팔달구는 ① 34.8%(24명), ⑪ 31.9%(22명), ② 13.0%(9명) 순, 영통구는 ① 46.7%(49명), ⑪ 25.7%(27명), ② 11.4%(1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37> 귀하가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의 주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명	%	명	%	명	%	명	%	
전체	367	142	38.7	53	14.4	30	8.2	27	7.4	
성 별	여성	259	108	41.7	40	15.4	21	8.1	20	7.7
	남성	108	34	31.5	13	12.0	9	8.3	7	6.5
연 령 별	10대	24	10	41.7	3	12.5	3	12.5	1	4.2
	20대	65	22	33.8	7	10.8	7	10.8	5	7.7
	30대	86	28	32.6	9	10.5	7	8.1	9	10.5
	40대	96	44	45.8	15	15.6	9	9.4	3	3.1
	50대	96	38	39.6	19	19.8	4	4.2	9	9.4

3) 신체적 폭력

데이트폭력 유형 중 ‘신체적 폭력의 경험여부’는 다음 <표 4-38>와 같다.

전체 988명의 응답자 중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18.8%(186명)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19.0%(128명)로 남성 18.4%(58명) 보다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8.1%(50명)로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40대 25.3%(47명), 20대 21.7%(36명), 30대 21.2%(36명), 10대 5.9%(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팔달구 26.5%(41명), 권선구 20.4%(55명), 장안구 17.6%(40명), 영통구 15.7%(48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8>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경험자		비경험자	
		명	%	명	%
전체	988	186	18.8	802	81.2
성 별	여성	128	19.0	545	81.0
	남성	58	18.4	257	81.6
연 령 별	10대	17	5.9	271	94.1
	20대	36	21.7	130	78.3
	30대	36	21.2	134	78.8
	40대	47	25.3	139	74.7
	50대	50	28.1	128	71.9
지 역 별	장안구	40	17.6	187	82.4
	권선구	55	20.4	214	79.6
	팔달구	41	26.5	114	73.5
	영통구	48	15.7	257	84.3

데이트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의 경험빈도’는 다음 <표 4-39>과 같다.

신체적 폭력의 경험빈도는 ‘전혀 없음’이 94.6%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³⁴⁾ 중 상대적으로 경험빈도가 높은 세부문항은 ① 팔목이나 내 몸을 힘껏 움켜잡은 적이 있다 13.1%, ② 나를 세계 밀친 적이 있다 9.2%, ③ 손이나 물건을 이용해 내 몸을 아프게 찌르거나 때린 적이 있다 5.7%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전체 평균값으로 보면 ‘1년에 1~2번’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1달에 1~2번’ 1.0%, ‘1주에 1~2번’ 0.5%, ‘거의 매일’ 0.2%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1년에 1~2번’은 ① 9.8%(97명), ② 7.1%(70명), ③ 3.9%(39명)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1달에 1~2번’은 ① 2.1%(21명), ② 14%(1.4명), ③ 11%(1.1명) 순, ‘1주에 1~2번’은 ① 1.0%(10명), ④ 0.7%(7명), ③ 0.6%(6명) 순, ‘거의 매일’은 ⑧ 0.3%(3명), ①·②·⑥ 0.2%(2명)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세부문항 ① 팔목이나 내 몸을 힘껏 움켜잡은 적이 있다와 ② 나를 세계 밀친 적이 있다, ③ 손이나 물건을 이용해 내 몸을 아프게 찌르거나 때린 적이 있다는 신체적 폭력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에 상대적으로 시기와 관계없이 경험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통제와 경험을 경험한 응답자 = 총 응답률(100%) - 세부문항별 ‘전혀 없음’ 응답 = 1년에 1~2번 + ‘1달에 1~2번’ + ‘1주에 1~2번’ + ‘거의 매일’

〈표 4-39〉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빈도)

(n=988)

구분	단 위	전혀 없음	1년에 1~2번	1달에 1~2번	1주에 1~2번	거의 매일	모름/ 무응답
전체	%	94.6	3.7	1.0	0.5	0.2	-
① 팔목이나 내 몸을 힘껏 움켜잡은 적이 있다	명	858	97	21	10	2	-
	%	86.9	9.8	2.1	1.0	0.2	-
② 나를 세게 밀친 적이 있다	명	897	70	14	5	2	-
	%	90.8	7.1	1.4	0.5	0.2	-
③ 손이나 물건을 이용해 내 몸을 아프게 찌르거나 때린 적이 있다	명	931	39	11	6	1	-
	%	94.3	3.9	1.1	0.6	0.1	-
④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나에게 집어 던진 적이 있다	명	932	38	10	7	1	-
	%	94.3	3.8	1.0	0.7	0.1	-
⑤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목을 조른 적이 있다	명	947	26	10	4	1	-
	%	95.9	2.6	1.0	0.4	0.1	-
⑥ 칼(가위) 등의 흉기로 위협한 적이 있다	명	959	13	9	5	2	-
	%	97.1	1.3	0.9	0.5	0.2	-
⑦ 칼(가위) 등의 흉기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명	967	8	9	3	1	-
	%	97.9	0.8	0.9	0.3	0.1	-
⑧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뼈가 나거나 멍이 들거나 (살짝)상처가 났다	명	932	44	7	2	3	-
	%	94.3	4.5	0.7	0.2	0.3	-
⑨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뼈가 부러졌다	명	967	12	5	4	-	-
	%	97.9	1.2	0.5	0.4	-	-
⑩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명	960	17	7	4	-	-
	%	97.2	1.7	0.7	0.4	-	-

데이트 관계에 ‘신체적 폭력 경험의 성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40>과 같다.

세부문항 ⑦은 신체적 폭력 경험여부에서 성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 보다 평균값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세부 문항에서는 성별 간 평균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40>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성별)
(n=988)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여성 (n=673)	남성 (n=315)	여성	남성	
① 팔뚝이나 내 몸을 힘껏 움켜잡은 적이 있다	1.19	1.15	.540	.488	1.140
② 나를 세게 밀친 적이 있다	1.11	1.15	.409	.490	-1.088
③ 손이나 물건을 이용해 내 몸을 아프게 찌르거나 때린 적이 있다	1.07	1.12	.330	.479	-1.957
④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나에게 집어 던진 적이 있다	1.08	1.10	.376	.418	-0.970
⑤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목을 조른 적이 있다	1.05	1.09	.307	.402	-1.320
⑥ 칼(가위) 등의 흉기로 위협한 적이 있다	1.04	1.09	.306	.435	-1.846
⑦ 칼(가위) 등의 흉기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1.01	1.09	.172	.453	-2.930*
⑧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뼈거나 멍이 들거나 (살짝)상처가 났다	1.07	1.09	.338	.420	-0.703
⑨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뼈가 부러졌다	1.02	1.06	.192	.365	-1.740
⑩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1.03	1.07	.223	.380	-1.877

*p<.05

데이트 관계에 '신체적 폭력 경험의 연령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41>과 같다.

세부문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⑧은 신체적 폭력에서 연령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세부문항 ④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나에게 집어 던진 적이 있다($f=4.998^*$)는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50대와 10대의 평균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연령별)
(n=988)

구분	평균(표준편차)					f값
	10대 (n=288)	20대 (n=166)	30대 (n=170)	40대 (n=186)	50대 이상 (n=178)	
① 팔뚝이나 내 몸을 힘껏 움켜잡은 적이 있다	1.10 (.458)	1.22 (.594)	1.16 (.483)	1.23 (.581)	1.24 (.521)	2.770*
② 나를 세게 밀친 적이 있다	1.05 (.297)	1.13 (.494)	1.12 (.410)	1.17 (.487)	1.19 (.518)	3.676*
③ 손이나 물건을 이용해 내 몸을 아프게 찌르거나 때린 적이 있다	1.03 (.249)	1.07 (.390)	1.09 (.331)	1.12 (.495)	1.14 (.460)	2.957*
④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나에게 집어 던진 적이 있다	1.02 (.212)	1.07 (.351)	1.08 (.361)	1.13 (.482)	1.17 (.526)	4.998*
⑤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목을 조른 적이 있다	1.01 (.118)	1.07 (.358)	1.08 (.361)	1.09 (.407)	1.11 (.445)	3.029*
⑥ 칼(가위) 등의 흉기로 위협한 적이 있다	1.01 (.118)	1.05 (.308)	1.05 (.304)	1.09 (.485)	1.11 (.493)	2.841*
⑦ 칼(가위) 등의 흉기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1.01 (.118)	1.04 (.318)	1.03 (.201)	1.06 (.377)	1.08 (.418)	1.937
⑧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뼈거나 멍이 들거나 (살짝)상처가 났다	1.02 (.185)	1.11 (.441)	1.07 (.279)	1.09 (.407)	1.13 (.503)	3.183*
⑨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뼈가 부러졌다	1.01 (.118)	1.05 (.353)	1.03 (.201)	1.04 (.272)	1.06 (.348)	1.423
⑩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1.01 (.118)	1.04 (.289)	1.05 (.262)	1.07 (.346)	1.08 (.390)	2.337

* $p < .05$

데이트 관계에 ‘신체적 폭력 경험의 지역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42>와 같다.

세부문항 ⑦, ⑨, ⑩은 신체적 폭력 경험여부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세부문항 ⑩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f=4.091^*$)는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팔달구가 타지역과 평균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지역별)
(n=988)

구분	평균(표준편차)					f값
	장안구 (n=227)	권선구 (n=269)	팔달구 (n=155)	영통구 (n=305)	기타 (n=32)	
① 팔목이나 내 몸을 힘껏 움켜잡은 적이 있다	1.16 (.475)	1.23 (.620)	1.22 (.550)	1.13 (.432)	1.16 (.628)	1.494
② 나를 세게 밀친 적이 있다	1.13 (.486)	1.12 (.450)	1.17 (.481)	1.10 (.340)	1.13 (.554)	0.661
③ 손이나 물건을 이용해 내 몸을 아프게 찌르거나 때린 적이 있다	1.09 (.426)	1.08 (.363)	1.16 (.540)	1.04 (.218)	1.09 (.530)	2.511
④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나에게 집어 던진 적이 있다	1.11 (.456)	1.08 (.373)	1.13 (.466)	1.04 (.272)	1.09 (.530)	1.750
⑤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목을 조른 적이 있다	1.07 (.370)	1.06 (.351)	1.12 (.461)	1.04 (.234)	1.00 (.000)	1.985
⑥ 칼(가위) 등의 흉기로 위협한 적이 있다	1.06 (.383)	1.05 (.358)	1.11 (.491)	1.03 (.241)	1.00 (.000)	1.472
⑦ 칼(가위) 등의 흉기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1.07 (.440)	1.03 (.219)	1.08 (.387)	1.01 (.128)	1.00 (.000)	2.540*
⑧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뼈거나 멍이 들거나 (살짝)상처가 났다	1.11 (.472)	1.08 (.383)	1.10 (.398)	1.04 (.211)	1.06 (.354)	1.488
⑨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뼈가 부러졌다	1.07 (.388)	1.02 (.171)	1.07 (.362)	1.01 (.115)	1.00 (.000)	2.784*
⑩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1.07 (.393)	1.02 (.161)	1.11 (.435)	1.02 (.151)	1.00 (.000)	4.091*

* $p < .05$

데이트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이 시작된 시기’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43>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① 기억나지 않는다 30.1%(56명)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⑥ 사건 후 6개월~1년 12.9%(24명), ⑤ 사건 후 3개월~6개월 12.4%(23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① 29.7%(38명), ⑤·⑥ 12.5%(16명), ⑦ 10.9%(14명) 순, 남성은 ① 31.0%(18명), ④·⑥·⑦ 13.8%(8명), ⑤ 12.1%(7명) 순으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신체적 폭력 피해 발생시기를 기억하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성은 사건 후 3개월~6개월 이후부터 다양한 시기에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① 29.4%(5명), ③ 23.5%(4명), ④ 17.6%(3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① 33.3%(12명), ⑤ 19.4%(7명), ⑥ 13.9%(5명) 순, 30대는 ① 25.0%(9명), ⑥·⑨ 16.7%(6명), ⑤ 11.1%(4명) 순, 40대는 ① 29.8%(14명), ⑦ 19.1%(9명), ⑥ 17.0%(8명) 순, 50대는 ① 32.0%(16명), ⑤·⑨ 12.0%(6명), ④·⑦·⑩ 10.0%(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공통적으로 ① 기억나지 않음을 제외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체적 폭력 피해 발생 시기가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 ① 22.5%(9명), ④·⑦ 12.5%(5명), ⑤·⑧·⑨·⑩ 10.0%(4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① 31.0%(18명), ⑤ 19.0%(11명), ⑥ 15.5%(9명) 순, 팔달구는 ① 29.3%(12명), ④ 17.1%(7명), ⑦ 14.6%(6명) 순, 영통구는 ① 36.2%(17명), ⑥·⑦ 12.8%(6명), ⑨ 10.6%(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43〉 상대의 신체적 폭력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86	56	30.1	2	1.1	6	3.2	17	9.1	23	12.4	
성별	여성	128	38	29.7	1	0.8	5	3.9	9	7.0	16	12.5
	남성	58	18	31.0	1	1.7	1	1.7	8	13.8	7	12.1
연령별	10대	17	5	29.4	1	5.9	4	23.5	3	17.6	1	5.9
	20대	36	12	33.3	0	0.0	0	0.0	3	8.3	7	19.4
	30대	36	9	25.0	1	2.8	0	0.0	2	5.6	4	11.1
	40대	47	14	29.8	0	0.0	1	2.1	4	8.5	5	10.6
	50대	50	16	32.0	0	0.0	1	2.0	5	10.0	6	12.0
지역별	장안구	40	9	22.5	1	2.5	0	0.0	5	12.5	4	10.0
	권선구	58	18	31.0	0	0.0	2	3.4	3	5.2	11	19.0
	팔달구	41	12	29.3	0	0.0	2	4.9	7	17.1	5	12.2
	영통구	47	17	36.2	1	2.1	2	4.3	2	4.3	3	6.4
구분	사례수 (명)	⑥		⑦		⑧		⑨		⑩		
전체	186	24	12.9	22	11.8	8	4.3	17	9.1	11	5.9	
성별	여성	128	16	12.5	14	10.9	5	3.9	14	10.9	10	7.8
	남성	58	8	13.8	8	13.8	3	5.2	3	5.2	1	1.7
연령별	10대	17	2	11.8	1	5.9	0	0.0	0	0.0	0	0.0
	20대	36	5	13.9	4	11.1	2	5.6	1	2.8	2	5.6
	30대	36	6	16.7	3	8.3	3	8.3	6	16.7	2	5.6
	40대	47	8	17.0	9	19.1	0	0.0	4	8.5	2	4.3
	50대	50	3	6.0	5	10.0	3	6.0	6	12.0	5	10.0
지역별	장안구	40	4	10.0	5	12.5	4	10.0	4	10.0	4	10.0
	권선구	58	9	15.5	5	8.6	1	1.7	6	10.3	3	5.2
	팔달구	41	5	12.2	6	14.6	1	2.4	2	4.9	1	2.4
	영통구	47	6	12.8	6	12.8	2	4.3	5	10.6	3	6.4

① 기억나지 않는다

③ 사건 후 1개월 미만

⑤ 사건 후 3개월~6개월

⑦ 사건 후 1년~2년

⑨ 사건 후 3년 이상

② 사귀기 전

④ 사건 후 1개월~3개월

⑥ 사건 후 6개월~1년

⑧ 사건 후 2년~3년

⑩ 헤어지자고 한 이후

데이트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주된 느낌의 우선순위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4-44>와 같다.

우선순위별 보면 1순위 ⑪ 상대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 17.2%(32명/186명), 2순위 ⑩ 헤어지고 싶었다 19.6%(31명/158명), 3순위 ⑩ ‘헤어지고 싶었다’ 18.1%(27명/149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우선순위를 보면 여성은 ⑩ 21.1%(27명), ⑩ 21.7%(23명), ⑩ 17.2%(17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③ 20.7%(12명), ⑩ 15.4%(8명), ⑩ 20.0%(1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공통적으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주된 느낌이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폭력으로 느끼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연령별 우선순위를 보면 10대는 ③ 35.3%(6명), ⑩ 20.0%(3명), ⑩ 20.0%(3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⑪ 27.8%(10명), ⑩ 27.3%(9명), ⑨ 23.3%(7명) 순, 30대는 ⑩·⑪ 16.7%(6명), ⑩·⑪ 20.0%(6명), ⑨ 18.5%(5명) 순, 40대는 ⑩ 19.1%(9명), ⑦·⑩·⑪ 16.2%(6명), ⑩ 25.7%(9명) 순, 50대는 ⑦ 22.0%(11명), ⑩ 16.3%(7명), ⑦·⑩ 21.4%(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공통적으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주된 느낌이 헤어지고 싶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는 폭력이라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응답과 20대와 30대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우선순위를 보면 장안구는 ⑩·⑪ 20.0%(8명), ⑪ 18.8%(6명), ⑩ 19.4%(6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 ⑩ 20.0%(11명), ⑩ 26.5%(13명), ⑦·⑧ 17.8%(8명) 순, 팔달구는 ④ 22.0%(9명), ⑦·⑧ 19.4%(7명), ⑥ 20.0%(7명) 순, 영통구는 ⑪ 17.0%(8명), ⑩ 17.9%(7명) ⑩ 19.4%(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44〉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귀하의 주된 느낌은 어떠하였습니까?(우선순위)

구분	사례수 (명)	1순위			2순위			3순위		
		문항	명	%	문항	명	%	문항	명	%
전체	186	⑪	32	17.2	⑩	31	19.6	⑩	27	18.1
성별	여성	⑩	27	21.1	⑩	23	21.7	⑩	17	17.2
	남성	③	12	20.7	⑩	8	15.4	⑩	10	20.0
연령별	10대	③	6	35.3	⑩	3	20.0	⑩	3	20.0
	20대	⑪	10	27.8	⑩	9	27.3	⑨	7	23.3
	30대	⑩,⑪	6	16.7	⑩,⑪	6	20.0	⑨	5	18.5
	40대	⑩	9	19.1	⑦,⑩ ⑪	6	16.2	⑩	9	25.7
	50대	⑦	11	22.0	⑩	7	16.3	⑦,⑩	9	21.4
지역별	장안구	⑩,⑪	8	20.0	⑪	6	18.8	⑩	6	19.4
	권선구	⑩	11	20.0	⑩	13	26.5	⑦,⑧	8	17.8
	팔달구	④	9	22.0	⑦,⑧	7	19.4	⑥	7	20.0
	영통구	⑪	8	17.0	⑩	7	17.9	⑩	7	19.4

- | | |
|--------------------------|-----------------------------|
| ①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 ② 아무렇지도 않았다 |
| ③ 폭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 ④ 내가 더 잘 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 |
| ⑤ 상대가 불쌍했다 | ⑥ 창피했다 |
| ⑦ 무기력 또는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졌다 | ⑧ 점점 무섭고 두려웠다 |
| ⑨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 ⑩ 헤어지고 싶었다 |
| ⑪ 상대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 | |

데이트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이 있었을 때 주된 반응'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45>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⑨ 헤어지자고 했다 18.8%(35명)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14.0%(26명), ⑥ 내 기분을 표현했다 12.4%(23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⑨ 22.7%(29명), ⑥·⑦ 12.5%(16명), ⑤ 11.7%(15명) 순, 남성은 ⑤ 19.0%(11명), ③ 17.2%(10명), ② 15.5%(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체적 폭력이 있었을 때 여성은 본인의 기분을 표현하거나 헤어지자고 하거나 맞서는 등 대응하기도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 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등 주된 반응의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② 23.5%(4명), ④·⑤ 17.6%(3명), ① 11.8%(2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⑥·⑨ 16.7%(6명), ②·⑤·⑦ 13.9%(5명) 순, 30대는 ⑨ 25.0%(9명), ② 16.7%(6명), ⑤·⑦ 13.9%(5명) 순, 40대는 ⑨ 21.3%(10명), ⑥ 19.1%(9명), ⑤·⑦ 12.8%(6명) 순, 50대는 ⑨ 20.0%(10명), ③·⑤ 14.0%(7명), ④ 12.0%(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거나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는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는 ⑨ 20.0%(8명), ⑤ 15.0%(6명), ④·⑥ 12.5%(5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⑥ 20.7%(12명), ⑨ 19.0%(11명), ② 12.1%(7명) 순, 팔달구는 ③ 29.3%(12명), ⑤ 14.6%(6명), ⑨ 12.2%(5명) 순, 영통구는 ⑨ 23.4%(11명), ⑤ 19.1%(9명), ② 14.9%(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45> 귀하는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명	%	명	%	명	%	명	%	
전체	186	15	8.1	19	10.2	18	9.7	15	8.1	
성별	여성	128	12	9.4	10	7.8	8	6.3	11	8.6
	남성	58	3	5.2	9	15.5	10	17.2	4	6.9
연령별	10대	17	2	11.8	4	23.5	1	5.9	3	17.6
	20대	36	3	8.3	5	13.9	1	2.8	4	11.1
	30대	36	1	2.8	6	16.7	4	11.1	2	5.6
	40대	47	4	8.5	2	4.3	5	10.6	0	0.0
	50대	50	5	10.0	2	4.0	7	14.0	6	12.0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명	%	명	%	명	%	명	%
지역별	장안구	40	3	7.5	2	5.0	2	5.0	5	12.5
	권선구	58	5	8.6	7	12.1	3	5.2	5	8.6
	팔달구	41	4	9.8	3	7.3	12	29.3	3	7.3
	영통구	47	3	6.4	7	14.9	1	2.1	2	4.3
구분		사례수 (명)	⑤		⑥		⑦		⑧	
			명	%	명	%	명	%	명	%
전체		186	26	14.0	23	12.4	18	9.7	7	3.8
성별	여성	128	15	11.7	16	12.5	16	12.5	6	4.7
	남성	58	11	19.0	7	12.1	2	3.4	1	1.7
연령별	10대	17	3	17.6	1	5.9	1	5.9	1	5.9
	20대	36	5	13.9	6	16.7	5	13.9	0	0.0
	30대	36	5	13.9	3	8.3	5	13.9	1	2.8
	40대	47	6	12.8	9	19.1	6	12.8	1	2.1
	50대	50	7	14.0	4	8.0	1	2.0	4	8.0
지역별	장안구	40	6	15.0	5	12.5	2	5.0	2	5.0
	권선구	58	5	8.6	12	20.7	6	10.3	2	3.4
	팔달구	41	6	14.6	1	2.4	4	9.8	1	2.4
	영통구	47	9	19.1	5	10.6	6	12.8	2	4.3
구분		사례수 (명)	⑨		⑩		⑪			
			명	%	명	%	명	%		
전체		186	35	18.8	2	1.1	5	2.7		
성별	여성	128	29	22.7	1	0.8	3	2.3		
	남성	58	6	10.3	1	1.7	2	3.4		
연령별	10대	17	0	0.0	0	0.0	0	0.0		
	20대	36	6	16.7	1	2.8	0	0.0		
	30대	36	9	25.0	0	0.0	0	0.0		
	40대	47	10	21.3	1	2.1	3	6.4		
	50대	50	10	20.0	0	0.0	2	4.0		
지역별	장안구	40	8	20.0	2	5.0	3	7.5		
	권선구	58	11	19.0	0	0.0	2	3.4		
	팔달구	41	5	12.2	0	0.0	0	0.0		
	영통구	47	11	23.4	0	0.0	0	0.0		

- | | |
|-----------------------------|---------------------|
| ①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 ②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
| ③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줬다 | ④ 상대방이 사과하여 용서했다 |
| 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 ⑥ 내 기분을 표현했다 |
| ⑦ (몸을 사용하여) 맞서서 대항했다 | ⑧ 무시했다 |
| ⑨ 헤어지자고 했다 | ⑩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
| ⑪ 상담소나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 ⑫ 기타() |

데이트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의 주된 반응'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46>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43.5%(81명)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② 뭐 그런 일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 14.0%(26명), ⑩ 헤어지자고 얘기하지 않아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다 13.4%(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① 48.4%(62명), ② 12.5%(16명), ⑩ 11.7%(15명) 순, 남성은 ① 32.8%(19명), ②·⑩ 17.2%(10명), ④ 8.6%(5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신체적 폭력이 있었을 때, 성별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헤어지자고 얘기하지 않아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① 35.3%(6명), ③·⑩ 23.5%(4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① 38.9%(14명), ② 16.7%(6명), ④ 13.9%(5명) 순, 30대는 ① 38.9%(14명), ⑩ 22.2%(8명), ⑤ 13.9%(5명) 순, 40대는 ① 53.2%(25명), ② 10.6%(5명), ⑩ 8.5%(4명) 순, 50대는 ① 44.0%(22명), ② 22.0%(11명), ④ 12.0%(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상대방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대와 50대는 오히려 화를 내거나 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애원하는 등의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는 ① 42.5%(17명), ⑩ 15.0%(6명), ②·④ 12.5%(5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① 44.8%(26명), ② 22.4%(13명), ⑩ 10.3%(6명) 순, 팔달구는 ① 41.5%(17명), ⑩ 14.6%(6명), ④ 12.2%(5명) 순, 팔달구는 ① 44.7%(21명), ⑩ 14.9%(7명), ⑤ 10.6%(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46> 귀하가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의 주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명	%	명	%	명	%	명	%	
전체	186	81	43.5	26	14.0	12	6.5	16	8.6	
성 별	여성	128	62	48.4	16	12.5	10	7.8	11	8.6
	남성	58	19	32.8	10	17.2	2	3.4	5	8.6
연 령 별	10대	17	6	35.3	1	5.9	4	23.5	0	0.0
	20대	36	14	38.9	6	16.7	3	8.3	5	13.9
	30대	36	14	38.9	3	8.3	1	2.8	4	11.1
	40대	47	25	53.2	5	10.6	3	6.4	1	2.1
	50대	50	22	44.0	11	22.0	1	2.0	6	12.0

4) 성적 폭력

데이트폭력 유형 중 ‘성적 폭력 경험여부’는 다음 <표 4-47>과 같다.

전체 988명의 응답자 중 성적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27.1%(268명)로 신체적 폭력 응답자 18.8%(186명)와 비교하여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30.8%(207명)로, 남성 19.4%(61명) 보다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41.0%(73명)로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30대 37.1%(63명), 40대 32.8%(61명), 20대 32.5%(54명), 10대 5.9%(17명)³⁵⁾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팔달구 32.3%(50명), 권선구 31.6%(85명), 장안구 26.9%(61명), 영통구 22.6%(6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7>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경험자		비경험자		무응답		
		명	%	명	%	명	%	
전체	988	268	27.1	719	72.8	1	0.1	
성 별	여성	673	207	30.8	465	69.1	1	0.1
	남성	315	61	19.4	254	80.6	0	0.0
연 령 별	10대	288	17	5.9	270	93.8	1	0.3
	20대	166	54	32.5	112	67.5	0	0.0
	30대	170	63	37.1	107	62.9	0	0.0
	40대	186	61	32.8	125	67.2	0	0.0
	50대	178	73	41.0	105	59.0	0	0.0
지 역 별	장안구	227	61	26.9	166	73.1	0	0.0
	권선구	269	85	31.6	184	68.4	0	0.0
	팔달구	155	50	32.3	105	67.7	0	0.0
	영통구	305	69	22.6	235	77.0	1	0.3

35) 10대는 성과 관련하여 자극적이거나 아직 경험·판단하기 어려운 세부 문항들은 제외한 별도의 설문지로 구성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기에 다른 연령대와 경험여부를 비교하는데 제약이 있다.

데이트 관계에서 ‘성적 폭력의 경험빈도’는 다음 <표 4-48>과 같다.

성적 폭력의 경험빈도는 ‘전혀 없음’이 90.0%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적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³⁶⁾ 중 상대적으로 경험빈도가 높은 세부문항은 ④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 20.2%, ⑦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18.7%, ⑥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다 18.2%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전체 평균값으로 보면 ‘1년에 1~2번’이 6.4%로 가장 많았으며, ‘1달에 1~2번’ 2.2%, ‘1주에 1~2번’ 0.8%, ‘거의 매일’ 0.5%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1년에 1~2번’은 ④ 12.4%(87명), ⑦ 12.1%(85명), ⑥ 12.0%(84명)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1달에 1~2번’은 ④·⑦ 4.9%(34명), ⑥ 3.9%(27명), ③ 3.3%(33명) 순, ‘1주에 1~2번’은 ④ 1.9%(13명), ⑥ 1.4%(10명), ③·⑦ 1.0%(10명, 7명) 순, ‘거의 매일’은 ④ 1.0%(7명), ⑥·⑭ 0.9%(6명), ⑦·⑫·⑬ 0.7%(5명)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세부문항 ④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 ⑥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다, ⑦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성적 폭력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에 상대적으로 시기와 관계없이 경험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6) 통제와 경험을 경험한 응답자 = 총 응답률(100%) - 세부문항별 ‘전혀 없음’ 응답 = 1년에 1~2번 + ‘1달에 1~2번’ + ‘1주에 1~2번’ + ‘거의 매일’

〈표 4-48〉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빈도)

(①~③번 문항 n=988 / ④~⑭번 문항 n=700)

구분	단 위	전혀 없음	1년에 1~2번	1달에 1~2번	1주에 1~2번	거의 매일	모름/ 무응답
전체	%	90.0	6.4	2.2	0.8	0.5	0.1
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음담패설을 들은 적이 있다	명	882	75	20	7	3	1
	%	89.3	7.6	2.0	0.7	0.3	0.1
② 데이트 상대의 친구들 단체카톡방에서 나에게 대한 성적 표현과 평가를 한 것을 본적 있다	명	946	24	11	5	1	1
	%	95.7	2.4	1.1	0.5	0.1	0.1
③ 내가 원하지 않는 키스를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명	846	92	33	10	6	1
	%	85.6	9.3	3.3	1.0	0.6	0.1
④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	명	559	87	34	13	7	-
	%	79.8	12.4	4.9	1.9	1.0	-
⑤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여 성관계를 유도한 적이 있다	명	644	38	12	3	3	-
	%	92.0	5.4	1.7	0.4	0.4	-
⑥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다	명	573	84	27	10	6	-
	%	81.8	12.0	3.9	1.4	0.9	-
⑦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명	569	85	34	7	5	-
	%	81.3	12.1	4.9	1.0	0.7	-
⑧ 신체적 폭력을 쓰지 않았으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체위를 강요한 적이 있다	명	613	57	22	6	2	-
	%	87.6	8.1	3.1	0.9	0.3	-
⑨ 섹스를 하기 위해 때리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명	678	14	5	1	2	-
	%	96.9	2.0	0.7	0.1	0.3	-
⑩ 내가 원하지 않는 섹스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명	674	17	5	2	2	-
	%	96.3	2.4	0.7	0.3	0.3	-
⑪ 동의에 의한 사진 혹은 영상을 촬영했지만, 인터넷 및 가족·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받은 적이 있다	명	682	8	5	4	1	-
	%	97.4	1.1	0.7	0.6	0.1	-
⑫ 피임을 하자는 나의 요구를 거부한 적 있다	명	639	37	15	4	5	-
	%	91.3	5.3	2.1	0.6	0.7	-
⑬ 내 몸에 보이는 곳에 강제로 키스 마크를 남긴 적이 있다	명	647	37	7	4	5	-
	%	92.4	5.3	1.0	0.6	0.7	-
⑭ 성관계시 피임은 여자 몫이라 한 적이 있다	명	652	31	6	5	6	-
	%	93.1	4.4	0.9	0.7	0.9	-

데이트 관계에 ‘성적 폭력의 성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49>와 같다.

세부문항 ③은 성적 폭력 경험여부에서 성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 보다 평균값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세부문항에서는 성별 간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49>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성별)
(①~③번 문항 n=988 / ④~⑭번 문항 n=700)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여성 (n=673)	남성 (n=315)	여성	남성	
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음담패설을 들은 적이 있다	1.16	1.14	.568	.531	0.581
② 데이트 상대의 친구들 단체카톡방에서 나에 대한 성적표현과 평가를 한 것을 본적 있다	1.07	1.09	.432	.446	-0.896
③ 내가 원하지 않는 키스를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1.26	1.15	.712	.511	2.712*
④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	1.34	1.25	.787	.599	1.706
⑤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여 성관계를 유도한 적이 있다	1.10	1.16	.426	.550	-1.178
⑥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다	1.29	1.24	.695	.650	0.964
⑦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1.30	1.23	.682	.624	1.184
⑧ 신체적 폭력을 쓰지 않았으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체위를 강요한 적이 있다	1.19	1.16	.550	.535	0.657
⑨ 섹스를 하기 위해 때리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1.03	1.09	.270	.428	-2.073
⑩ 내가 원하지 않는 섹스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1.05	1.08	.316	.418	-1.720
⑪ 동의에 의한 사진 혹은 영상을 촬영했지만, 인터넷 및 가족·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받은 적이 있다	1.03	1.09	.292	.423	-1.031
⑫ 피임을 하지는 나의 요구를 거부한 적 있다	1.14	1.14	.535	.531	-0.916
⑬ 내 몸에 보이는 곳에 강제로 키스 마크를 남긴 적이 있다	1.10	1.17	.467	.556	-1.824
⑭ 성관계시 피임은 여자 몫이라 한 적이 있다	1.12	1.12	.517	.517	-1.564

*p<.05

데이트 관계에 '성적 폭력의 연령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50>과 같다.

세부문항 ③은 성적 폭력 경험여부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세부문항 ③ 내가 원하지 않는 키스를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f=5.213^*$)는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50대와 10대의 평균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0>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연령별)

(①~③번 문항 n=988 / ④~⑭번 문항 n=700)

구분	평균(표준편차)					f값
	10대 (n=288)	20대 (n=166)	30대 (n=170)	40대 (n=186)	50대 (n=178)	
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음담패설을 들은 적이 있다	1.12 (.663)	1.19 (.578)	1.15 (.474)	1.14 (.467)	1.22 (.501)	1.073
② 데이트 상대의 친구들 단체카톡방에서 내에 대한 성적 표현과 평가를 한 것을 본적 있다	1.08 (.578)	1.12 (.514)	1.02 (.187)	1.08 (.352)	1.06 (.322)	1.110
③ 내가 원하지 않는 키스를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1.09 (.621)	1.27 (.689)	1.23 (.576)	1.27 (.700)	1.35 (.674)	5.213*
④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	-	1.25 (.694)	1.32 (.717)	1.33 (.783)	1.36 (.755)	0.641
⑤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여 성관계를 유도한 적이 있다	-	1.12 (.548)	1.07 (.386)	1.10 (.382)	1.18 (.522)	1.715
⑥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다	-	1.24 (.689)	1.28 (.679)	1.29 (.729)	1.29 (.631)	0.185
⑦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	1.27 (.717)	1.23 (.576)	1.28 (.720)	1.32 (.641)	0.551
⑧ 신체적 폭력을 쓰지 않았으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체위를 강요한 적이 있다	-	1.15 (.579)	1.13 (.415)	1.19 (.562)	1.25 (.600)	1.723
⑨ 섹스를 하기 위해 때리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	1.05 (.362)	1.03 (.201)	1.08 (.415)	1.04 (.268)	0.851
⑩ 내가 원하지 않는 섹스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	1.08 (.440)	1.05 (.239)	1.05 (.324)	1.06 (.364)	0.254
⑪ 동의에 의한 사진 혹은 영상을 촬영했지만, 인터넷 및 가족·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받은 적이 있다	-	1.04 (.299)	1.05 (.284)	1.05 (.356)	1.05 (.387)	0.038
⑫ 피임을 하지는 나의 요구를 거부한 적 있다	-	1.16 (.572)	1.18 (.612)	1.13 (.514)	1.10 (.426)	0.749
⑬ 내 몸에 보이는 곳에 강제로 키스 마크를 남긴 적이 있다	-	1.10 (.512)	1.12 (.477)	1.16 (.584)	1.08 (.381)	0.811
⑭ 성관계시 피임은 여자 몫이라 한 적이 있다	-	1.12 (.559)	1.11 (.480)	1.14 (.571)	1.10 (.447)	0.231

* $p < .05$

데이트 관계에 ‘성적 폭력의 지역별’ 평균비교분석은 다음 <표 4-51>과 같다.

세부문항 ①~⑭는 지역별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결과와는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 성별, 연령별 평균비교분석결과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지역 간 평균차이가 큰 세부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1>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지역별)
(①~③번 문항 n=988 / ④~⑭번 문항 n=700)

구분	평균(표준편차)				f값
	장안구 (n=227)	권선구 (n=269)	팔달구 (n=155)	영통구 (n=305)	
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음담패설을 들은 적이 있다	1.13	1.19	1.19	1.13	0.937
② 데이트 상대의 친구들 단체카톡방에서 나에 대한 성적표현과 평가를 한 것을 본적 있다	1.06	1.07	1.08	1.07	0.635
③ 내가 원하지 않는 키스를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1.22	1.23	1.26	1.20	0.377
④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	1.31	1.34	1.34	1.29	0.204
⑤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여 성관계를 유도한 적이 있다	1.13	1.14	1.13	1.08	0.777
⑥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다	1.24	1.31	1.31	1.25	0.547
⑦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1.27	1.29	1.32	1.25	0.353
⑧ 신체적 폭력을 쓰지 않았으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체위를 강요한 적이 있다	1.23	1.21	1.17	1.13	1.157
⑨ 섹스를 하기 위해 때리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1.06	1.07	1.06	1.02	0.669
⑩ 내가 원하지 않는 섹스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1.06	1.06	1.06	1.06	0.005
⑪ 동의에 의한 사진 혹은 영상을 촬영했지만, 인터넷 및 가족·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받은 적이 있다	1.07	1.04	1.07	1.03	0.483
⑫ 피임을 하지는 나의 요구를 거부한 적 있다	1.16	1.11	1.19	1.14	0.726
⑬ 내 몸에 보이는 곳에 강제로 키스 마크를 남긴 적이 있다	1.14	1.12	1.14	1.09	0.473
⑭ 성관계시 피임은 여자 몫이라 한 적이 있다	1.13	1.10	1.15	1.10	0.351

*p<.05

데이트 관계에서 ‘성적 폭력이 시작된 시기’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52>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① 기억나지 않는다 29.5%(79명)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④·⑥ 사귀 후 1개월~3개월·사귀 후 6개월~1년 13.4%(36명), ⑤ 사귀 후 3개월~6개월 13.1%(35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① 30.0%(62명), ④ 14.0%(29명), ③ 13.0%(27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① 27.9%(17명), ⑥ 16.4%(10명), ⑤ 13.1%(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적 폭력 피해 발생시기를 기억하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성적 폭력이 빨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①·②·③ 23.5%(4명), ⑤ 17.6%(3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① 25.9%(14명), ⑤·⑥ 18.5%(10명), ④ 13.0%(7명) 순, 30대는 ① 28.6%(18명), ④ 23.8%(15명), ⑦ 12.7%(8명) 순, 40대는 ① 32.8%(20명), ⑥ 16.4%(10명), ⑤ 14.8%(9명) 순, 50대는 ① 31.5%(23명), ⑦ 13.7%(10명), ⑧ 12.3%(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공통적으로 ① 기억나지 않음을 제외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성적 폭력 피해 발생시기가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는 ① 27.4%(17명), ⑤ 17.7%(11명), ⑥ 14.5%(9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① 32.1%(27명), ⑥ 16.7%(14명), ④ 15.5%(13명) 순, 팔달구는 ① 17.9%(10명), ③·⑤ 16.1%(9명), ④ 14.3%(8명) 순, 영통구는 ① 37.9%(25명), ⑦ 18.2%(12명), ④ 12.1%(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52〉 상대의 성적 폭력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부터 입니까?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268	79	29.5	6	2.2	14	5.2	36	13.4	35	13.1	
성별	여성	207	62	30.0	4	1.9	8	3.9	29	14.0	27	13.0
	남성	61	17	27.9	2	3.3	6	9.8	7	11.5	8	13.1
연령별	10대	17	4	23.5	4	23.5	4	23.5	1	5.9	3	17.6
	20대	54	14	25.9	0	0.0	6	11.1	7	13.0	10	18.5
	30대	63	18	28.6	1	1.6	1	1.6	15	23.8	6	9.5
	40대	61	20	32.8	1	1.6	1	1.6	6	9.8	9	14.8
	50대	73	23	31.5	0	0.0	2	2.7	7	9.6	7	9.6
지역별	장안구	62	17	27.4	1	1.6	1	1.6	7	11.3	11	17.7
	권선구	84	27	32.1	1	1.2	2	2.4	13	15.5	11	13.1
	팔달구	56	10	17.9	4	7.1	9	16.1	8	14.3	9	16.1
	영통구	66	25	37.9	0	0.0	2	3.0	8	12.1	4	6.1
구분	사례수 (명)	⑥		⑦		⑧		⑨		⑩		
전체	268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여성	207	26	12.6	23	11.1	7	3.4	14	6.8	7	3.4
	남성	61	10	16.4	3	4.9	3	4.9	4	6.6	1	1.6
연령별	10대	17	1	5.9	0	0.0	0	0	0	0	0	0
	20대	54	10	18.5	4	7.4	2	3.7	0	0.0	1	1.9
	30대	63	8	12.7	7	11.1	3	4.8	3	4.8	1	1.6
	40대	61	10	16.4	5	8.2	2	3.3	6	9.8	1	1.6
	50대	73	7	9.6	10	13.7	3	4.1	9	12.3	5	6.8
지역별	장안구	62	9	14.5	5	8.1	2	3.2	7	11.3	2	3.2
	권선구	84	14	16.7	6	7.1	3	3.6	5	6.0	2	2.4
	팔달구	56	7	12.5	3	5.4	2	3.6	3	5.4	1	1.8
	영통구	66	6	9.1	12	18.2	3	4.5	3	4.5	3	4.5

① 기억나지 않는다

③ 사건 후 1개월 미만

⑤ 사건 후 3개월~6개월

⑦ 사건 후 1년~2년

⑨ 사건 후 3년 이상

② 사귀기 전

④ 사건 후 1개월~3개월

⑥ 사건 후 6개월~1년

⑧ 사건 후 2년~3년

⑩ 헤어지자고 한 이후

데이트 관계에서 ‘성적 폭력으로 인한 주된 느낌의 우선순위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53>과 같다.

우선순위별로 보면 ⑩ 헤어지고 싶었다 12.3%(33명/268명), ⑪ 상대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 15.0%(35명/234명), ⑩ 헤어지고 싶었다 16.4%(35명/2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우선순위를 보면 여성은 ⑩ 13.5%(28명), ⑫ 17.0%(31명), ⑩ 18.4%(30명) 순, 남성은 ①,② 16.4%(10명), ② 19.2%(10명), ③ 13.7%(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성은 성적 폭력을 경험했을 때 헤어지고 싶은 느낌을 가장 강하게 받거나 오직 본인의 몸만 원하는 것으로 느꼈던 반면, 남성은 사랑으로 느끼거나 아무렇지 않다고 느껴 성별에 따른 응답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⑪ 35.3%(6명), ③ 31.3%(5명), ⑩ 20.0%(3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③·⑫ 16.7%(9명), ⑪ 20.8%(10명), ⑫ 18.6%(8명) 순, 30대는 ⑩ 17.5%(11명), ⑪ 22.4%(11명), ⑫ 19.5%(8명) 순, 40대는 ⑪ 14.8%(9명), ⑪ 15.7%(8명), ⑩ 18.8%(9명) 순, 50대는 ⑦ 17.8%(13명), ⑦ 17.1%(12명), ⑪ 13.4%(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공통적으로 상대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거나 헤어지고 싶은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는 무기력과 우울감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는 ③·⑩ 13.1%(8명), ③ 14.3%(8명), ⑩ 18.2%(10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 ⑩ 17.6%(15명), ⑪ 20.5%(16명), ⑩·⑫ 19.1%(13명) 순, 팔달구는 ③ 14.0%(7명), ⑪ 16.3%(7명), ④·⑥·⑩·⑫ 12.2%(5명) 순, 영통구는 ②·⑫ 13.0%(9명), ④·⑩ 14.8%(8명) ⑫ 18.8%(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53〉 성적 폭력으로 인한 귀하의 주된 느낌은 어떠하였습니까?(우선순위)

구분	사례수 (명)	1순위			2순위			3순위		
		문항	명	%	문항	명	%	문항	명	%
전체	268	⑩	33	12.3	⑪	35	15.0	⑩	35	16.4
성별	여성	⑩	28	13.5	⑫	31	17.0	⑩	30	18.4
	남성	①,②	10	16.4	②	10	19.2	③	7	13.7
연령별	10대	⑪	6	35.3	③	5	31.3	⑩	3	20.0
	20대	③,⑫	9	16.7	⑪	10	20.8	⑫	8	18.6
	30대	⑩	11	17.5	⑪	11	22.4	⑫	8	19.5
	40대	⑪	9	14.8	⑪	8	15.7	⑩	9	18.8
	50대	⑦	13	17.8	⑦	12	17.1	⑪	9	13.4
지역별	장안구	③,⑩	8	13.1	③	8	14.3	⑩	10	18.2
	권선구	⑩	15	17.6	⑪	16	20.5	⑩,⑫	13	19.1
	팔달구	③	7	14.0	⑪	7	16.3	④,⑥ ⑩,⑫	5	12.2
	영통구	②,⑫	9	13.0	④,⑩	8	14.8	⑫	9	18.8

- | | |
|--------------------------|-----------------------------|
| ①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 ② 아무렇지도 않았다 |
| ③ 폭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 ④ 내가 더 잘 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 |
| ⑤ 상대가 불쌍했다 | ⑥ 창피했다 |
| ⑦ 무기력 또는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졌다 | ⑧ 점점 무섭고 두려웠다 |
| ⑨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 ⑩ 헤어지고 싶었다 |
| ⑪ 상대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 | ⑫ 오직 나의 몸을 원하는 것으로만 느껴졌다 |
| ⑬ 임신이 될까봐 두려웠다 | ⑭ 성폭력이라고 생각했다 |

데이트 관계에서 '성적 폭력이 있었을 때 주된 반응'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54>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②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16.0%(43명)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⑥ 내 기분을 표현했다 19.0%(51명), ⑤·⑨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헤어지자고 했다 13.8%(37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⑥ 20.8%(43명), ⑨ 15.0%(31명), ⑤ 14.0%(29명) 순, 남성은 ② 27.9%(17명), ③ 14.8%(9명), ⑤·⑥ 13.1%(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적 폭력이 있었을 때, 여성은 본인의 기분을 표현하거나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헤어지자고 한 반면, 남성은 문제 삼지 않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본인의 기분을 표현하는 등 성별에 따른 주된 반응에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② 29.4%(5명), ⑥ 17.6%(3명), ⑤ 11.8%(2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⑥ 22.2%(12명), ⑨ 18.5%(10명), ②·⑤ 14.8%(8명) 순, 30대는 ⑤ 19.0%(12명), ②·⑥ 17.5%(11명), ⑨ 12.7%(8명) 순, 40대는 ⑥ 18.0%(11명), ②·③ 14.8%(9명), ④·⑨ 11.5%(7명) 순, 50대는 ⑥ 19.2%(14명), ⑨ 15.1%(11명), ② 13.7%(1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성적 폭력을 문제 삼지 않거나 기분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는 ⑥ 19.7%(12명), ② 14.8%(9명), ③·⑨ 13.1%(8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⑥ 24.7%(21명), ② 15.3%(13명), ⑨ 12.9%(11명) 순, 팔달구는 ⑤ 22.0%(11명), ⑨ 18.0%(9명), ② 16.0%(8명) 순, 영통구는 ② 18.8%(13명), ⑥ 17.4%(12명), ⑤ 14.5%(1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54> 귀하는 성적 폭력이 있었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268	19	7.1	43	16.0	31	11.6	19	7.1	37	13.8	
성 별	여성	207	17	8.2	26	12.6	22	10.6	15	7.2	29	14.0
	남성	61	2	3.3	17	27.9	9	14.8	4	6.6	8	13.1
연 령 별	10대	17	1	5.9	5	29.4	1	5.9	0	0.0	2	11.8
	20대	54	5	9.3	8	14.8	6	11.1	3	5.6	8	14.8
	30대	63	3	4.8	11	17.5	7	11.1	3	4.8	12	19.0
	40대	61	3	4.9	9	14.8	9	14.8	7	11.5	6	9.8
	50대	73	7	9.6	10	13.7	8	11.0	6	8.2	9	12.3
지 역	장안구	61	7	11.5	9	14.8	8	13.1	4	6.6	7	11.5
	권선구	85	5	5.9	13	15.3	9	10.6	3	3.5	8	9.4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명	%	명	%	명	%	명	%	명	%	
별	팔달구	50	2	4.0	8	16.0	7	14.0	4	8.0	11	22.0
	영통구	69	4	5.8	13	18.8	7	10.1	8	11.6	10	14.5
구분	사례수 (명)	⑥		⑦		⑧		⑨		⑩		
전체	268	51	19.0	7	2.6	10	3.7	37	13.8	1	0.4	
성 별	여성	207	43	20.8	5	2.4	7	3.4	31	15.0	1	0.5
	남성	61	8	13.1	2	3.3	3	4.9	6	9.8	0	0.0
연 령 별	10대	17	3	17.6	0	0.0	0	0.0	1	5.9	0	0.0
	20대	54	12	22.2	0	0.0	1	1.9	10	18.5	0	0.0
	30대	63	11	17.5	2	3.2	3	4.8	8	12.7	1	1.6
	40대	61	11	18.0	4	6.6	2	3.3	7	11.5	0	0.0
	50대	73	14	19.2	1	1.4	4	5.5	11	15.1	0	0.0
지 역 별	장안구	61	12	19.7	2	3.3	3	4.9	8	13.1	0	0.0
	권선구	85	21	24.7	3	3.5	2	2.4	11	12.9	1	1.2
	팔달구	50	5	10.0	1	2.0	1	2.0	9	18.0	0	0.0
	영통구	69	12	17.4	1	1.4	4	5.8	9	13.0	0	0.0
구분	사례수 (명)	⑪		⑫		⑬		⑭				
전체	268	1	0.4	3	1.1	4	1.5	2	0.7			
성 별	여성	207	1	0.5	2	1.0	4	1.9	2	1.0		
	남성	61	0	0.0	1	1.6	0	0.0	0	0.0		
연 령 별	10대	17	0	0.0	1	5.9	0	0.0	0	0.0		
	20대	54	0	0.0	0	0.0	1	1.9	0	0.0		
	30대	63	1	1.6	0	0.0	0	0.0	1	1.6		
	40대	61	0	0.0	1	1.6	2	3.3	0	0.0		
	50대	73	0	0.0	1	1.4	1	1.4	1	1.4		
지 역 별	장안구	61	1	1.6	0	0.0	0	0.0	0	0.0		
	권선구	85	0	0.0	2	2.4	4	4.7	1	1.2		
	팔달구	50	0	0.0	1	2.0	0	0.0	0	0		
	영통구	69	0	0.0	0	0.0	0	0.0	1	1.4		

- | | |
|-----------------------------|---------------------------|
| ①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 ②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
| ③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줬다 | ④ 상대방이 사과하여 용서했다 |
| 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 ⑥ 내 기분을 표현했다 |
| ⑦ (몸을 사용하여) 맞서서 대항했다 | ⑧ 무시했다 |
| ⑨ 헤어지자고 했다 | ⑩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
| ⑪ 상담소나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 ⑫ 증거자료를 모았다(사진 및 문자 캡처 등) |
| ⑬ 사후 피임약을 먹었다 | ⑭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 |
| ⑮ 기타() | |

데이트 관계에서 '성적 폭력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의 주된 반응'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55>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40.3%(108명)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⑪ 헤어지자고 얘기하지 않아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다 21.3%(57명), ② 뭐 그런 일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 15.3%(4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① 43.0%(89명), ⑪ 21.3%(44명), ② 15.0%(31명) 순, 남성은 ① 31.1%(19명), ⑪ 21.3%(13명), ②·④ 16.4%(1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적 폭력이 있었을 때, 성별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공통적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와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① 58.8%(10명), ⑪ 17.6%(3명), ④ 11.8%(2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① 37.0%(20명), ⑪ 22.2%(12명), ② 16.7%(9명) 순, 30대는 ① 31.7%(20명), ⑪ 22.2%(14명), ② 17.5%(11명) 순, 40대는 ① 44.3%(27명), ⑪ 21.3%(13명), ② 13.1%(8명) 순, 50대는 ① 42.5%(31명), ⑪ 20.5%(15명), ② 16.4%(1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상대방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와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는 ① 37.7%(23명), ⑪ 27.9%(17명), ④ 13.1%(8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① 37.6%(32명), ② 21.2%(18명), ⑪ 18.8%(16명) 순, 팔달구는 ① 40.0%(20명), ⑪ 18.0%(9명), ④ 14.0%(7명) 순, 영통구는 ① 46.4%(32명), ⑪ 21.7%(15명), ② 15.9%(1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55> 귀하가 성적 폭력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의 주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명	%	명	%	명	%	명	%	
전체	268	108	40.3	41	15.3	14	5.2	30	11.2	
성 별	여성	207	89	43.0	31	15.0	11	5.3	20	9.7
	남성	61	19	31.1	10	16.4	3	4.9	10	16.4
연 령 별	10대	17	10	58.8	1	5.9	0	0.0	2	11.8
	20대	54	20	37.0	9	16.7	2	3.7	7	13.0
	30대	63	20	31.7	11	17.5	7	11.1	5	7.9
	40대	61	27	44.3	8	13.1	4	6.6	5	8.2
	50대	73	31	42.5	12	16.4	1	1.4	11	15.1

5) 데이트폭력 이후 관계 및 대응

‘데이트폭력 경험으로 인해 겪은 피해 중 힘들게 한 것’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56>과 같다.

우선순위별로 보면 1순위 ①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 46.1%(292명/633명), 2순위 ③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사회적 불신 26.3%(97명/369명), 3순위 ③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사회적 불신 19.3%(63명/326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우선순위를 보면 여성은 ① 48.4%(221명), ③ 28.0%(73명), ③ 16.5%(37명) 순, 남성은 ① 40.3%(71명), ③ 22.2%(24명), ③ 25.5%(2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관계없이 데이트폭력 경험이 힘들게 한 것 중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사회적 불신이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령별 우선순위를 보면 10대는 ① 37.0%(30명), ③ 27.8%(10명), ② 25.8%(8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① 45.0%(54명), ③ 24.4%(20명), ③ 20.6%(14명) 순, 30대는 ① 47.8%(65명), ③ 22.9%(16명), ③ 26.6%(17명) 순, 40대는 ① 43.1%(62명), ③ 28.8%(23명), ③·⑥ 14.3%(10명) 순, 50대는 ① 53.3%(81명), ③ 27.7%(28명), ③ 19.4%(1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동일하게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힘들게 한 것 중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사회적 불신이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더불어 10대는 일상생활 지속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는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우선순위를 보면 장안구는 ① 45.4%(69명), ③ 31.5%(29명), ③ 19.8%(16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① 47.0%(86명), ③ 23.9%(27명), ③ 20.6%(21명) 순, 팔달구는 ① 45.5%(56명), ③ 21.4%(15명), ③ 18.5%(12명) 순, 영통구는 ① 46.3%(81명), ③ 27.7%(26명) ③·⑥ 17.9% 순으로 응답하였다.

‘데이트폭력 발생 이후 연애관계를 유지한 이유’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57>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②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 33.6%(178명)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① 연애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헤어짐) 25.0%(132명), ③ 좋을 때는 잘 해주니까 20.4%(108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② 31.0%(118명), ① 30.4%(116명), ⑧ 19.9%(76명) 순, 남성은 ② 40.5%(60명), ④ 33.8%(50명), ⑤ 31.1%(4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성은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거나, 좋을 땐 잘 해주기 때문에 연애를 유지한 경우, 헤어짐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남성은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고 본인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며, 상대방을 계속 사랑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연애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② 47.8%(32명), ⑥ 28.4%(19명), ③ 26.9%(18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② 34.3%(36명), ① 27.6%(29명), ⑤ 26.7%(28명) 순, 30대는 ② 29.4%(32명), ① 25.7%(28명), ⑤ 22.0%(24명) 순, 40대는 ② 31.1%(38명), ① 25.4%(31명), ⑧ 18.0%(22명) 순, 50대는 ② 31.7%(40명), ① 24.6%(31명), ⑧ 23.0%(2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1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는 헤어진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20대와 30대를 계속 사랑해서와 40대와 50대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여 연애관계가 유지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는 ② 32.8%(42명), ① 25.8%(33명), ⑤ 19.5%(25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② 34.6%(53명), ① 23.5%(36명), ③ 22.9%(35명) 순, 팔달구는 ② 36.4%(39명), ⑤ 23.4%(25명), ⑧ 22.4%(24명) 순, 영통구는 ② 31.2%(44명), ① 28.4%(40명), ③ 19.1%(2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57> 연애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주십시오.(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명	%	명	%	명	%	명	%	
전체	529	132	25.0	178	33.6	108	20.4	84	15.9	
성별	여성	381	116	30.4	118	31.0	71	18.6	34	8.9
	남성	148	16	10.8	60	40.5	37	25.0	50	33.8
연령별	10대	67	13	19.4	32	47.8	18	26.9	11	16.4
	20대	105	29	27.6	36	34.3	25	23.8	16	15.2
	30대	109	28	25.7	32	29.4	22	20.2	21	19.3
	40대	122	31	25.4	38	31.1	20	16.4	14	11.5
	50대	126	31	24.6	40	31.7	23	18.3	22	17.5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명	%	명	%	명	%	명	%	
지역별	장안구	128	33	25.8	42	32.8	24	18.8	20	15.6
	권선구	153	36	23.5	53	34.6	35	22.9	24	15.7
	팔달구	107	23	21.5	39	36.4	22	20.6	21	19.6
	영동구	141	40	28.4	44	31.2	27	19.1	19	13.5
구분	사례수 (명)	⑤		⑥		⑦		⑧		
전체	529	106	20.0	73	13.8	75	14.2	101	19.1	
성별	여성	381	60	15.7	42	11.0	45	11.8	76	19.9
	남성	148	46	31.1	31	20.9	30	20.3	25	16.9
연령별	10대	67	13	19.4	19	28.4	5	7.5	9	13.4
	20대	105	28	26.7	7	6.7	17	16.2	21	20.0
	30대	109	24	22.0	17	15.6	13	11.9	20	18.3
	40대	122	15	12.3	16	13.1	18	14.8	22	18.0
	50대	126	26	20.6	14	11.1	22	17.5	29	23.0
지역별	장안구	128	25	19.5	23	18.0	13	10.2	24	18.8
	권선구	153	30	19.6	19	12.4	23	15.0	28	18.3
	팔달구	107	25	23.4	21	19.6	16	15.0	24	22.4
	영동구	141	26	18.4	10	7.1	23	16.3	25	17.7
구분	사례수 (명)	⑨		⑩		⑪		⑫		
전체	529	16	3.0	45	8.5	39	7.4	7	1.3	
성별	여성	381	10	2.6	27	7.1	31	8.1	4	1.0
	남성	148	6	4.1	18	12.2	8	5.4	3	2.0
연령별	10대	67	1	1.5	0	0.0	4	6.0	2	3.0
	20대	105	3	2.9	8	7.6	8	7.6	2	1.9
	30대	109	3	2.8	8	7.3	5	4.6	1	0.9
	40대	122	4	3.3	15	12.3	9	7.4	0	0.0
	50대	126	5	4.0	14	11.1	13	10.3	2	1.6
지역별	장안구	128	6	4.7	16	12.5	7	5.5	2	1.6
	권선구	153	6	3.9	10	6.5	20	13.1	4	2.6
	팔달구	107	3	2.8	13	12.1	6	5.6	1	0.9
	영동구	141	1	0.7	6	4.3	6	4.3	0	0.0

- | | |
|-----------------------|----------------------------------|
| ① 연애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헤어짐) | ②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 |
| ③ 좋을 때는 잘 해주니까 | ④ 나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
| ⑤ 상대방을 계속 사랑한다고 느껴서 | ⑥ 사귀는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
| ⑦ 상대방이 변화될 것 같아서 | ⑧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서 |
| ⑨ 가족이나 지인에게 잘해줘서 | ⑩ 결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
| ⑪ 갈등 없이 헤어지고 싶어서 | ⑫ 상대방의 위협과 협박 때문에(사진, 동영상 유포 포함) |
| ⑬ 기타() | |

‘데이트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도움 우선순위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4-58>과 같다.

우선순위별로 보면 1순위 ① 주위 사람들의 조언과 위로 37.1%(196명/529명), 2순위 ③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및 지원해 주는 것 28.6%(115명/402명), 3순위 ③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및 지원해 주는 것 21.8%(76명/348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우선순위를 보면 여성은 ① 32.8%(125명), ③ 30.8%(88명), ③ 20.7%(51명) 순, 남성은 ① 48.0%(71명), ③ 23.3%(27명), ③ 24.5%(2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관계없이 주위 사람들의 조언과 위로를 가장 필요로 하였으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제도적)이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령별 우선순위를 보면 10대는 ① 53.7%(36명), ② 33.3%(15명), ③ 38.9%(14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① 33.3%(35명), ②·③·⑤ 22.6%(19명), ⑥ 18.2%(14명) 순, 30대는 ① 39.4%(43명), ③ 39.7%(29명), ③ 27.9%(17명) 순, 40대는 ① 32.8%(40명), ③ 28.7%(27명), ⑤ 27.8%(22명) 순, 50대는 ① 33.3%(42명), ③ 30.2%(32명), ⑥ 30.5%(2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동일하게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주위 사람들의 조언과 위로를 가장 필요로 하였으며, 10대와 20대는 가해자 처벌과 제재가 필요성이 우선인 반면, 20대에서 50대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제도적)을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우선순위를 보면 장안구는 ① 32.0%(41명), ③ 33.3%(32명), ⑤ 19.3%(16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① 34.0%(52명), ③ 27.1%(32명), ③ 23.6%(25명) 순, 팔달구는 ① 46.7%(50명), ③ 23.1%(18명), ③ 25.4%(17명) 순, 영통구는 ① 37.6%(53명), ③ 30.0%(33명) ③ 20.7%(1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58〉 귀하는 데이트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도움이 가장 필요하었습니까?(우선순위)

구분	사례수 (명)	1순위			2순위			3순위		
		문항	명	%	문항	명	%	문항	명	%
전체	529	①	196	37.1	③	115	28.6	③	76	21.8
성별	여성	①	125	32.8	③	88	30.8	③	51	20.7
	남성	①	71	48.0	③	27	23.3	③	25	24.5
연령별	10대	①	36	53.7	②	15	33.3	③	14	38.9
	20대	①	35	33.3	②,③, ⑤	19	22.6	⑥	14	18.2
	30대	①	43	39.4	③	29	39.7	③	17	27.9
	40대	①	40	32.8	③	27	28.7	⑤	22	27.8
	50대	①	42	33.3	③	32	30.2	⑥	29	30.5
지역별	장안구	①	41	32.0	③	32	33.3	⑤	16	19.3
	권선구	①	52	34.0	③	32	27.1	③	25	23.6
	팔달구	①	50	46.7	③	18	23.1	③	17	25.4
	영통구	①	53	37.6	③	33	30.0	③	19	20.7

- | | |
|--|------------------------|
| ① 주위 사람들의 조언과 위로 | ② 가해자 처벌과 제재 |
| ③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및 지원해 주는 것 | ④ 나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
| ④ 신고 이후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 ⑤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 |
| ⑥ 피해자 지원 기관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 ⑦ 기타() |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 및 과정의 인지여부’는 다음 <표 4-59>와 같다. 대처 방법 및 과정의 인지여부는 ‘모름’이 48.4%(256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알고 있음’ 27.4%(145명), ‘전혀 모름’ 19.1%(101명), ‘잘 알고 있음’ 5.1%(27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모름’의 응답이 여성 48.6%(185명), 남성 48.0%(71명)로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에 대한 대처 방법 및 과정에 대해 절반 이상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모름’의 응답이 40대 52.5%(64명), 30대 51.4%(56명), 50대 50.0%(63명), 10대 43.3%(29명), 20대 41.9%(4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구분 없이 거의 모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여부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모름’의 응답이 장안구 53.9%(69명), 팔달구 53.3%(57명), 영통구 46.1%(65명), 권선구 42.5%(6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9>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방법, 과정 등)해야 하는지 여부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름		모름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명	%	명	%	명	%	명	%	
전체	529	101	19.1	256	48.4	145	27.4	27	5.1	
성 별	여성	381	78	20.5	185	48.6	101	26.5	17	4.5
	남성	148	23	15.5	71	48.0	44	29.7	10	6.8
연 령 별	10대	67	12	17.9	29	43.3	20	29.9	6	9.0
	20대	105	20	19.0	44	41.9	35	33.3	6	5.7
	30대	109	27	24.8	56	51.4	21	19.3	5	4.6
	40대	122	24	19.7	64	52.5	28	23.0	6	4.9
	50대	126	18	14.3	63	50.0	41	32.5	4	3.2
지 역 별	장안구	128	18	14.1	69	53.9	33	25.8	8	6.3
	권선구	153	29	19.0	65	42.5	52	34.0	7	4.6
	팔달구	107	18	16.8	57	53.3	27	25.2	5	4.7
	영통구	141	36	25.5	65	46.1	33	23.4	7	5.0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돕거나 지원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인지여부’는 다음 <표 4-60>과 같다.

지원단체 및 기관의 인지여부는 ‘모름’이 50.1%(265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전혀 모름’ 28.7%(152명), ‘알고 있음’ 18.5%(98명), ‘잘 알고 있음’ 2.6%(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모름’의 응답이 여성 50.4%(192명), 남성 49.3%(73명)로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자 지원단체 및 기관에 대해 80% 이상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모름’의 응답이 50대 57.1%(72명), 10대 52.2%(35명), 40대 50.8%(72명), 30대 45.0%(49명), 20대 44.8%(47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상관없이 인지여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모름’의 응답이 장안구 56.3%(72명), 팔달구 50.5%(54명), 권선구 47.7%(73명), 영통구 46.8%(6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0>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돕거나 지원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 여부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름		모름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명	%	명	%	명	%	명	%	
전체	529	152	28.7	265	50.1	98	18.5	14	2.6	
성별	여성	381	115	30.2	192	50.4	65	17.1	9	2.4
	남성	148	37	25.0	73	49.3	33	22.3	5	3.4
연령별	10대	67	19	28.4	35	52.2	10	14.9	3	4.5
	20대	105	35	33.3	47	44.8	20	19.0	3	2.9
	30대	109	37	33.9	49	45.0	19	17.4	4	3.7
	40대	122	36	29.5	62	50.8	22	18.0	2	1.6
	50대	126	25	19.8	72	57.1	27	21.4	2	1.6
지역별	장안구	128	30	23.4	72	56.3	21	16.4	5	3.9
	권선구	153	48	31.4	73	47.7	29	19.0	3	2.0
	팔달구	107	29	27.1	54	50.5	20	18.7	4	3.7
	영통구	141	45	31.9	66	46.8	28	19.9	2	1.4

‘데이트폭력 피해로 인해 타인 또는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여부’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4-61>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65.0%(344명)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③ 친구 23.3%(123명), ② 가족 11.2%(59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① 66.4%(253명), ③ 21.8%(83명), ② 10.0%(38명) 순, 남성은 ① 61.5%(91명), ③ 27.0%(40명), ② 14.2%(21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성별과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① 76.1%(51명), ③ 22.4%(15명), ②·⑤ 1.5%(1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① 62.9%(66명), ③ 28.6%(30명), ② 9.5%(10명) 순, 30대는 ① 63.3%(69명), ③ 27.5%(30명), ② 11.0%(12명) 순, 40대는 ① 62.3%(76명), ③ 19.7%(24명), ② 15.6%(19명) 순, 50대는 ① 65.1%(82명), ③ 19.0%(24명), ② 13.5%(1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동일하게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는 ① 61.7%(79명), ③ 25.0%(32명), ② 10.9%(14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① 66.0%(101명), ③ 20.9%(32명), ② 11.8%(18명) 순, 팔달구는 ① 64.5%(69명), ③ 25.2%(27명), ② 7.5%(8명) 순, 영통구는 ① 67.4%(95명), ① 22.7%(32명), ② 13.5%(1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도움을 요청받은 타인 또는 유관기관의 태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62>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⑦ 피해사실에 대한 위로는 받았으나, 방법을 제시받지 못했다 35.7%(66명)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⑨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지원했다 18.4%(34명), ③·④ 사소한 일로 취급했다·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16.8%(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⑦ 41.4%(53명), ⑨ 22.7%(29명), ④ 12.5%(16명) 순, 남성은 ③ 31.6%(18명), ④ 26.3%(15명), ⑦ 22.8%(13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도움을 받은 타인 또는 유관기관에 의해 여성은 피해사실에 대한 위로를 받았으나 방법을 제시받지 못했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남성은 사소한 일로 취급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사실에 대한 위로는 받았으나 방법을 제시받지 못한 느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⑦ 43.8%(7명), ⑨ 31.3%(5명), ① 12.5%(2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⑦ 33.3%(13명), ③ 25.6%(10명), ④ 23.1%(9명) 순, 30대는 ⑦ 40.0%(16명), ④ 22.5%(9명), ③ 15.0%(6명) 순, 40대는 ⑦ 39.1%(18명), ③·⑨ 21.7%(10명), ①·⑥ 10.9%(5명) 순, 50대는 ⑦ 27.3%(12명), ④ 20.5%(9명), ⑨ 18.2%(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위로는 받았으나, 방법을 제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소한 일로 취급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0대와 40대, 50대는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지원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는 ⑦·⑨ 26.5%(13명), ③·⑤ 14.3%(7명), ④·⑥·⑧ 12.2%(6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⑦ 38.5%(20명), ③ 23.1%(12명), ④·⑨ 17.3%(9명) 순, 팔달구는 ④ 28.9%(11명), ⑦ 26.3%(10명), ①·⑧ 15.8%(6명) 순, 영통구는 ⑦ 50.0%(23명), ⑨ 19.6%(9명), ③ 15.2%(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62〉 도움을 요청받은 타인 또는 유관기관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85	17	9.2	10	5.4	31	16.8	31	16.8	18	9.7	
성별	여성	128	11	8.6	4	3.1	13	10.2	16	12.5	7	5.5
	남성	57	6	10.5	6	10.5	18	31.6	15	26.3	11	19.3
연령별	10대	16	2	12.5	0	0.0	1	6.3	1	6.3	0	0.0
	20대	39	3	7.7	3	7.7	10	25.6	9	23.1	7	17.9
	30대	40	4	10.0	4	10.0	6	15.0	9	22.5	3	7.5
	40대	46	5	10.9	1	2.2	10	21.7	3	6.5	2	4.3
	50대	44	3	6.8	2	4.5	4	9.1	9	20.5	6	13.6
지역별	장안구	49	4	8.2	3	6.1	7	14.3	6	12.2	7	14.3
	권선구	52	4	7.7	1	1.9	12	23.1	9	17.3	5	9.6
	팔달구	38	6	15.8	5	13.2	5	13.2	11	28.9	4	10.5
	영통구	46	3	6.5	1	2.2	7	15.2	5	10.9	2	4.3
구분	사례수 (명)	⑥		⑦		⑧		⑨				
전체	185	11	5.9	66	35.7	19	10.3	34	18.4			
성별	여성	128	5	3.9	53	41.4	13	10.2	29	22.7		
	남성	57	6	10.5	13	22.8	6	10.5	5	8.8		
연령별	10대	16	1	6.3	7	43.8	1	6.3	5	31.3		
	20대	39	1	2.6	13	33.3	6	15.4	8	20.5		
	30대	40	2	5.0	16	40.0	4	10.0	3	7.5		
	40대	46	5	10.9	18	39.1	4	8.7	10	21.7		
	50대	44	2	4.5	12	27.3	4	9.1	8	18.2		
지역별	장안구	49	6	12.2	13	26.5	6	12.2	13	26.5		
	권선구	52	3	5.8	20	38.5	4	7.7	9	17.3		
	팔달구	38	2	5.3	10	26.3	6	15.8	3	7.9		
	영통구	46	0	0.0	23	50.0	3	6.5	9	19.6		

- | | |
|------------------------------------|---|
| ① 참으라고 했다 | ② 본인의 탓으로 돌렸다 |
| ③ 사소한 일로 취급했다 | ④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
| ⑤ 합의를 종용했다 | ⑥ 고소하라고만 했다 |
| ⑦ 피해사실에 대한 위로는 받았으나, 방법을 제시 받지 못했다 | ⑧ 도움을 주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지원(법, 제도, 지침)이 없다고 했다 |
| ⑨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지원했다 | ⑩ 기타() |

‘데이트폭력 피해 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우선순위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4-63>과 같다.

우선순위별로 보면 1순위 ①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55.3%(192명/344명), 2순위 ② 48.9%(133명/272명), 3순위 ③·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23.9%(54명/226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우선순위를 보면 여성은 ① 54.2%(137명), ② 45.5%(92명), ④ 24.8%(41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① 60.4%(55명), ② 58.6%(41명), ③ 36.1%(2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데이트폭력 피해 이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유를 들었으며, 여성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라는 이유를 들었고, 남성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우선순위를 보면 10대는 ① 60.8%(31명), ② 47.5%(19명), ②·⑦ 22.2%(6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① 59.1%(39명), ② 46.3%(25명), ④ 24.5%(12명) 순, 30대는 ① 72.5%(50명), ② 66.7%(36명), ③ 30.2%(13명) 순, 40대는 ① 52.6%(40명), ② 45.0%(27명), ④ 27.7%(13명) 순, 50대는 ① 39.0%(32명), ② 40.6%(26명), ③ 25.0%(1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 구분 없이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10대는 그 외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대와 40대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30대와 50대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같아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우선순위를 보면 장안구는 ① 57.0%(45명), ② 52.7%(29명), ④ 21.3%(10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 ① 55.4%(56명), ② 50.6%(43명), ④ 25.6%(20명) 순, 팔달구는 ① 58.0%(40명), ② 49.1%(27명), ③ 27.3%(12명) 순, 영통구는 ① 53.7%(51명), ② 44.2%(34명) ③·④ 26.3%(1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63〉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우선순위)

구분	사례수 (명)	1순위			2순위			3순위		
		문항	명	%	문항	명	%	문항	명	%
전체		①	192	55.3	②	133	48.9	③,④	54	23.9
성 별	여성	①	137	54.2	②	92	45.5	④	41	24.8
	남성	①	55	60.4	②	41	58.6	③	22	36.1
연 령 별	10대	①	31	60.8	②	19	47.5	②,⑦	6	22.2
	20대	①	39	59.1	②	25	46.3	④	12	24.5
	30대	①	50	72.5	②	36	66.7	③	13	30.2
	40대	①	40	52.6	②	27	45.0	④	13	27.7
	50대	①	32	39.0	②	26	40.6	③	15	25.0
지 역 별	장안구	①	45	57.0	②	29	52.7	④	10	21.3
	권선구	①	56	55.4	②	43	50.6	④	20	25.6
	팔달구	①	40	58.0	②	27	49.1	③	12	27.3
	영통구	①	51	53.7	②	34	44.2	③,④	15	26.3

- | | |
|---|------------------------|
| ①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 ②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 ③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아서) | ④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
| ⑤ 증거가 없어서 | ⑥ 상대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해서 |
| ⑦ 그 외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어서 | ⑧ 상대가 처벌받을까봐 |
| ⑨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서 | ⑩ 비용이 발생할까봐 부담스러워서 |
| ⑪ 내 잘못 같아서 | ⑫ 법적 절차가 두려워서 |
| ⑬ 유관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 ⑭ 기타() |

‘데이트폭력 피해로 알코올 중독 경험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64>와 같다.

전체 462명의 응답자 중 알코올 중독을 경험한 응답자는 3.7%(17명)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4.6%(6명), 여성 3.3%(11명)로 남성이 여성 보다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측 모두 응답률이 적기 때문에 성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7.3%(8명)로 가장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50대 4.0%(5명), 40대 2.5%(3명), 20대 1.0%(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팔달구 8.0%(7명), 권선구 3.6%(5명), 영통구 2.4%(3명), 장안구 1.8%(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4> 데이트폭력 피해로 알코올 중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명	%	명	%
전체	462	17	3.7	445	96.3
성 별	여성	11	3.3	321	96.7
	남성	6	4.6	124	95.4
연 령 별	10대	-	-	-	-
	20대	1	1.0	104	99.0
	30대	8	7.3	101	92.7
	40대	3	2.5	119	97.5
	50대	5	4.0	121	96.0
지 역 별	장안구	2	1.8	107	98.2
	권선구	5	3.6	135	96.4
	팔달구	7	8.0	80	92.0
	영통구	3	2.4	123	97.6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섭식장애 경험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65>와 같다.

전체 529명의 응답자 중 섭식장애를 경험한 응답자는 10.4%(55명)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11.3%(43명)로, 남성 8.1%(12명) 보다 경험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5.1%(19명)로 경험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40대 11.5%(14명), 20대 10.5%(11명), 30대 7.3%(8명), 10대 4.5%(3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팔달구 13.1%(14명), 권선구 12.4%(19명), 영통구 8.5%(12명), 장안구 7.8%(1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5> 데이트폭력 피해로 섭식장애(음식을 못 먹거나 너무 많이 먹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명	%	명	%
전체	529	55	10.4	474	89.6
성 별	여성	43	11.3	338	88.7
	남성	12	8.1	136	91.9
연 령 별	10대	3	4.5	64	95.5
	20대	11	10.5	94	89.5
	30대	8	7.3	101	92.7
	40대	14	11.5	108	88.5
	50대	19	15.1	107	84.9
지 역 별	장안구	10	7.8	118	92.2
	권선구	19	12.4	134	87.6
	팔달구	14	13.1	93	86.9
	영통구	12	8.5	129	91.5

‘데이트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경험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66>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① 겪어 본 적 없다 55.0%(291명)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②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23.3%(123명), ② 불안, 우울 21.7%(1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① 53.5%(204명), ③ 24.7%(94명), ② 23.6%(90명) 순, 남성은 ① 58.8%(87명), ② 22.3%(33명), ③ 14.2%(21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성별과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겪어 본 적 없다’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그리고 불안, 우울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① 79.1%(53명), ⑤ 11.9%(8명), ③ 9.0%(6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① 52.4%(55명), ③ 24.8%(26명), ② 22.9%(24명) 순, 30대는 ① 55.0%(60명), ② 27.5%(30명), ③ 24.8%(27명) 순, 40대는 ① 50.0%(61명), ② 27.9%(34명), ③ 20.5%(25명) 순, 50대는 ① 49.2%(62명), ②·③ 24.6%(31명), ⑤ 19.0%(2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동일하게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겪어 본 적 없다’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그리고 불안, 우울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10대와 50대는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와 같은 정신적 고통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는 ① 57.0%(73명), ② 23.4%(30명), ③ 21.9%(28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① 47.1%(72명), ③ 26.8%(41명), ② 26.1%(40명) 순, 팔달구는 ① 58.9%(63명), ② 18.7%(20명), ⑤ 17.8%(19명) 순, 영통구는 ① 58.9%(83명), ② 23.4%(33명), ③ 19.9%(2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66〉 데이트폭력 피해로 다음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명	%	명	%	명	%	명	%	
전체	529	291	55.0	123	23.3	115	21.7	10	1.9	
성별	여성	381	204	53.5	90	23.6	94	24.7	8	2.1
	남성	148	87	58.8	33	22.3	21	14.2	2	1.4
연령별	10대	67	53	79.1	4	6.0	6	9.0	0	0.0
	20대	105	55	52.4	24	22.9	26	24.8	3	2.9
	30대	109	60	55.0	30	27.5	27	24.8	2	1.8
	40대	122	61	50.0	34	27.9	25	20.5	2	1.6
	50대	126	62	49.2	31	24.6	31	24.6	3	2.4
지역별	장안구	128	73	57.0	30	23.4	28	21.9	4	3.1
	권선구	153	72	47.1	40	26.1	41	26.8	2	1.3
	팔달구	107	63	58.9	20	18.7	18	16.8	3	2.8
	영통구	141	83	58.9	33	23.4	28	19.9	1	0.7
구분	사례수 (명)	⑤		⑥		⑦		⑧		
전체	529	93	17.6	62	11.7	30	5.7	47	8.9	
성별	여성	381	70	18.4	48	12.6	17	4.5	39	10.2
	남성	148	23	15.5	14	9.5	13	8.8	8	5.4
연령별	10대	67	8	11.9	5	7.5	2	3.0	2	3.0
	20대	105	20	19.0	21	20.0	8	7.6	16	15.2
	30대	109	17	15.6	9	8.3	2	1.8	7	6.4
	40대	122	24	19.7	13	10.7	11	9.0	8	6.6
	50대	126	24	19.0	14	11.1	7	5.6	14	11.1
지역별	장안구	128	24	18.8	14	10.9	9	7.0	12	9.4
	권선구	153	28	18.3	22	14.4	9	5.9	18	11.8
	팔달구	107	19	17.8	12	11.2	6	5.6	5	4.7
	영통구	141	22	15.6	14	9.9	6	4.3	12	8.5

- | | |
|--------------------|----------------------------|
| ① 겪어 본 적 없다 | ②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
| ③ 불안, 우울 | ④ 폭력으로 죽을 것 같은 생각 |
| ⑤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 ⑥ 피해 당시와 관련한 모든 사항들에 대한 기억 |
| ⑦ 죽고 싶다는 생각 | ⑧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대인기피, 공황장애) |
| ⑨ 기타() | |

‘데이트폭력 피해로 인한 위협이나 공포심 경험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67>과 같다.

전체 529명의 응답자 중 위협이나 공포심을 경험한 응답자는 20.0%(106명)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22.8%(87명)로, 남성 12.8%(19명) 보다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3.0%(29명)로 경험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20대 22.9%(24명), 30대 20.2%(22명), 40대 19.7%(24명), 10대 10.4%(7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권선구 24.8%(38명), 영통구 19.1%(27명), 팔달구 18.7%(20명), 장안구 16.4%(2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7> 데이트폭력 피해가 있었던 당시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명	%	명	%
전체	529	106	20.0	423	80.0
성별	여성	87	22.8	294	77.2
	남성	19	12.8	129	87.2
연령별	10대	7	10.4	60	89.6
	20대	24	22.9	81	77.1
	30대	22	20.2	87	79.8
	40대	24	19.7	98	80.3
	50대	29	23.0	97	77.0
지역별	장안구	21	16.4	107	83.6
	권선구	38	24.8	115	75.2
	팔달구	20	18.7	87	81.3
	영통구	27	19.1	114	80.9

‘통제와 간섭을 경험할 경우 타인과 유관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의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68>과 같다.

통제와 간섭 시 타인과 유관기관의 도움 요청 의향은 ‘별로 그렇지 않음’이 45.4%(240명)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대체로 그러함’ 28.2%(149명), ‘전혀 그렇지 않음’ 16.6%(88명), ‘매우 그러함’ 9.8%(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음’의 응답이 남성 54.7%(81명)로 여성 41.7%(159명) 보다 요청 의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음’의 응답이 20대 52.4%(55명), 30대 52.3%(57명), 40대 46.7%(57명), 10대 43.3%(29명), 50대 33.3%(42명) 순으로 나타나 20대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음’의 응답이 팔달구 48.6%(52명), 권선구 47.7%(73명), 장안구 43.8%(56명), 영통구 41.8%(5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8> 통제와 간섭을 경험하게 될 경우 타인과 유관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명	%	명	%	명	%	명	%	
전체	529	88	16.6	240	45.4	149	28.2	52	9.8	
성 별	여성	381	62	16.3	159	41.7	115	30.2	45	11.8
	남성	148	26	17.6	81	54.7	34	23.0	7	4.7
연 령 별	10대	67	12	17.9	29	43.3	21	31.3	5	7.5
	20대	105	24	22.9	55	52.4	21	20.0	5	4.8
	30대	109	16	14.7	57	52.3	31	28.4	5	4.6
	40대	122	15	12.3	57	46.7	35	28.7	15	12.3
	50대	126	21	16.7	42	33.3	41	32.5	22	17.5
지 역 별	장안구	128	18	14.1	56	43.8	39	30.5	15	11.7
	권선구	153	29	19.0	73	47.7	42	27.5	9	5.9
	팔달구	107	11	10.3	52	48.6	32	29.9	12	11.2
	영통구	141	30	21.3	59	41.8	36	25.5	16	11.3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경험할 경우 타인과 유관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의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69>와 같다.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시 타인과 유관기관의 도움 요청 의향은 ‘대체로 그러함’이 40.8%(216명)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별로 그렇지 않음’ 25.0%(132명), ‘매우 그러함’ 22.9%(121명), ‘전혀 그렇지 않음’ 11.3%(60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대체로 그러함’의 응답이 여성 42.8%(163명)로 남성 35.8%(53명) 보다 요청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대체로 그러함’의 응답이 30대 49.5%(54명), 10대 44.8%(30명), 40대 39.3%(48명), 20대 39.0%(41명), 50대 34.1%(43명) 순으로 나타나, 30대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대체로 그러함’의 응답이 장안구 43.8%(56명), 팔달구 42.1%(45명), 권선구 39.2%(60명), 영통구 39.0%(5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9>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경험하게 될 경우 타인과 유관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명	%	명	%	명	%	명	%
전체	529	60	11.3	132	25.0	216	40.8	121	22.9
성별	여성	36	9.4	79	20.7	163	42.8	103	27.0
	남성	24	16.2	53	35.8	53	35.8	18	12.2
연령별	10대	8	11.9	10	14.9	30	44.8	19	28.4
	20대	14	13.3	23	21.9	41	39.0	27	25.7
	30대	10	9.2	27	24.8	54	49.5	18	16.5
	40대	12	9.8	32	26.2	48	39.3	30	24.6
	50대	16	12.7	40	31.7	43	34.1	27	21.4
지역별	장안구	11	8.6	28	21.9	56	43.8	33	25.8
	권선구	20	13.1	47	30.7	60	39.2	26	17.0
	팔달구	10	9.3	24	22.4	45	42.1	28	26.2
	영통구	19	13.5	33	23.4	55	39.0	34	24.1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경우 타인과 유관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의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70>과 같다.

신체적 폭력 시 타인과 유관기관의 도움 요청 의향은 ‘매우 그러함’이 55.4%(293명)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대체로 그러함’ 27.8%(147명), ‘전혀 그렇지 않음’ 10.2%(54명), ‘별로 그렇지 않음’ 6.6%(35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매우 그러함’의 응답이 여성 65.1%(248명)로 남성 30.4%(45명) 보다 요청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매우 그러함’의 응답이 40대 62.3%(76명), 30대 60.6%(66명), 20대 56.2%(59명), 50대 48.4%(61명), 10대 46.3%(31명) 순으로 나타나 40대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매우 그러함’의 응답이 영통구 57.4%(81명), 팔달구 56.1%(60명), 권선구 54.2%(83명), 장안구 53.9%(6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0>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게 될 경우 타인과 유관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명	%	명	%	명	%	명	%	
전체	529	54	10.2	35	6.6	147	27.8	293	55.4	
성 별	여성	381	30	7.9	15	3.9	88	23.1	248	65.1
	남성	148	24	16.2	20	13.5	59	39.9	45	30.4
연 령 별	10대	67	4	6.0	8	11.9	24	35.8	31	46.3
	20대	105	13	12.4	6	5.7	27	25.7	59	56.2
	30대	109	8	7.3	8	7.3	27	24.8	66	60.6
	40대	122	12	9.8	7	5.7	27	22.1	76	62.3
	50대	126	17	13.5	6	4.8	42	33.3	61	48.4
지 역 별	장안구	128	12	9.4	9	7.0	38	29.7	69	53.9
	권선구	153	13	8.5	12	7.8	45	29.4	83	54.2
	팔달구	107	11	10.3	11	10.3	25	23.4	60	56.1
	영통구	141	18	12.8	3	2.1	39	27.7	81	57.4

‘성적 폭력을 경험할 경우 타인과 유관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의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71>과 같다.

성적 폭력 시 타인과 유관기관의 도움 요청 의향은 ‘매우 그러함’이 53.7%(284명)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대체로 그러함’ 27.0%(143명), ‘전혀 그렇지 않음’ 10.6%(56명), ‘별로 그렇지 않음’ 8.7%(46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매우 그러함’ 63.5%(242명)로 요청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대체로 그러함’ 37.2%(55명)로 여성 보다 요청 의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매우 그러함’의 응답이 30대 63.3%(69명), 40대 55.7%(68명), 20대 51.4%(54명), 10대 49.3%(33명), 50대 47.6%(60명) 순으로 나타나 30대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매우 그러함’의 응답이 영통구 58.9%(83명), 장안구 53.9%(69명), 권선구 52.3%(80명), 팔달구 48.6%(5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1> 성적 폭력을 경험하게 될 경우 타인과 유관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명	%	명	%	명	%	명	%	
전체	529	56	10.6	46	8.7	143	27.0	284	53.7	
성 별	여성	381	29	7.6	22	5.8	88	23.1	242	63.5
	남성	148	27	18.2	24	16.2	55	37.2	42	28.4
연 령 별	10대	67	5	7.5	10	14.9	19	28.4	33	49.3
	20대	105	11	10.5	9	8.6	31	29.5	54	51.4
	30대	109	11	10.1	9	8.3	20	18.3	69	63.3
	40대	122	13	10.7	10	8.2	31	25.4	68	55.7
	50대	126	16	12.7	8	6.3	42	33.3	60	47.6
지 역 별	장안구	128	13	10.2	8	6.3	38	29.7	69	53.9
	권선구	153	13	8.5	18	11.8	42	27.5	80	52.3
	팔달구	107	11	10.3	15	14.0	29	27.1	52	48.6
	영통구	141	19	13.5	5	3.5	34	24.1	83	58.9

3.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데이트폭력이란 말을 어디서 들어보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72>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① TV 방송이나 인터넷 96.8%(956명)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③ 신문이나 잡지 39.1%(386명), ④ 친구나 가족 26.2%(259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① 97.3%(655명), ③ 39.2%(264명), ④ 28.7%(193명) 순, 남성은 ① 95.6%(301명), ③ 38.7%(122명), ④ 21.0%(66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성별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각종 매체와 가족, 지인에게서 ‘데이트폭력’이란 말을 주로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① 95.1%(274명), ④ 35.8%(103명), ③ 28.5%(82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① 95.2%(158명), ④ 45.8%(76명), ③ 42.8%(71명) 순, 30대는 ① 97.6%(166명), ③ 39.4%(67명), ④ 21.2%(36명) 순, 40대는 ① 98.4%(183명), ③ 39.4%(67명), ② 29.6%(55명) 순, 50대는 ① 98.3%(175명), ③ 41.6%(74명), ③ 16.3%(2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동일하게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데이트폭력’이란 말을 주로 듣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에서 30대는 가족, 지인에게, 40대와 50대는 여성단체(상담소)의 홍보물을 통해서도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는 ① 97.3%(218명), ③ 39.3%(88명), ④ 28.1%(63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① 97.1%(272명), ③ 38.2%(107명), ④ 25.7%(72명) 순, 팔달구는 ① 93.4%(185명), ③ 44.9%(89명), ④ 30.3%(60명) 순, 영통구는 ① 98.3%(281명), ③ 35.7%(102명), ④ 22.4%(6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72〉 '데이트폭력'이란 말을 어디서 들어 보았습니까? 모두 선택해주시시오.(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명	%	명	%	명	%	
전체	988	956	96.8	237	24.0	386	39.1	
성별	여성	673	655	97.3	172	25.6	264	39.2
	남성	315	301	95.6	65	20.6	122	38.7
연령별	10대	288	274	95.1	67	23.3	82	28.5
	20대	166	158	95.2	61	36.7	76	45.8
	30대	170	166	97.6	25	14.7	67	39.4
	40대	186	183	98.4	55	29.6	87	46.8
	50대	178	175	98.3	29	16.3	74	41.6
지역별	장안구	224	218	97.3	62	27.7	88	39.3
	권선구	280	272	97.1	71	25.4	107	38.2
	팔달구	198	185	93.4	49	24.7	89	44.9
	영통구	286	281	98.3	55	19.2	102	35.7
구분	사례수 (명)	④		⑤		⑥		
전체	988	259	26.2	162	16.4	8	0.8	
성별	여성	673	193	28.7	106	15.8	4	0.6
	남성	315	66	21.0	56	17.8	4	1.3
연령별	10대	288	103	35.8	59	20.5	4	1.4
	20대	166	71	42.8	39	23.5	1	0.6
	30대	170	36	21.2	11	6.5	1	0.6
	40대	186	24	12.9	24	12.9	2	1.1
	50대	178	25	14.0	29	16.3	0	0.0
지역별	장안구	224	63	28.1	47	21.0	1	0.4
	권선구	280	72	25.7	48	17.1	3	1.1
	팔달구	198	60	30.3	33	16.7	1	0.5
	영통구	286	64	22.4	34	11.9	3	1.0

① TV 방송이나 인터넷

② 여성단체(상담소)의 홍보물

③ 신문이나 잡지

④ 친구나 가족

⑤ 공공기관(수원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⑥ 기억나지 않는다

⑦ 기타()

‘다음의 기관에서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교육을 들어본 적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73>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들어본 적 있음’ 응답이 초·중·고등학교 26.0%(257명), 여성단체(상답소) 20.0%(198명), 관공서 및 공공기관 18.5%(183명), 대학교 15.0%(148명), 민간기업 및 민간기관 14.5%(1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들어본 적 있음’ 응답이 여성은 초·중·고등학교 22.1%(149명), 여성단체(상답소) 21.1%(142명), 관공서 및 공공기관 17.5%(11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초·중·고등학교 34.3%(108명), 관공서 및 공공기관 20.6%(65명), 민간기업 및 민간기관 19.0%(60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들어본 적 있음’이 10대 초·중·고등학교 65.3%(188명), 20대 대학교 44.6%(74명), 30대 대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 17.6%(30명), 40대 여성단체(상답소) 28.0%(52명), 50대 여성단체(상답소) 27.0%(48명)로 연령별 데이트폭력 관련 교육을 다양하게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들어본 적 있음’이 초·중·고등학교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장안구 28.6%(64명), 권선구 22.9%(64명), 팔달구 33.3%(66명), 영통구 22.0%(63.0명)로 나타났다.

〈표 4-73〉 다음의 기관에서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교육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명)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들어본 적 있음	들어본 적 없음	들어본 적 있음	들어본 적 없음	들어본 적 있음	들어본 적 없음	
전체	988	257(26.0)	731(74.0)	148(15.0)	839(84.9)	183(18.5)	805(81.5)	
성 별	여성	673	149(22.1)	524(77.9)	90(13.4)	582(86.5)	118(17.5)	555(82.5)
	남성	315	108(34.3)	207(65.7)	58(18.4)	257(81.6)	65(20.6)	250(79.4)
연 령 별	10대	288	188(65.3)	100(34.7)	-	-	34(11.8)	254(88.2)
	20대	166	36(21.7)	130(78.3)	74(44.6)	92(55.4)	40(24.1)	126(75.9)
	30대	170	10(5.9)	160(94.1)	30(17.6)	140(82.4)	30(17.6)	140(82.4)
	40대	186	13(7.0)	173(93.0)	22(11.8)	164(88.2)	42(22.6)	144(77.4)
	50대	178	10(5.6)	168(94.4)	18(10.1)	160(89.9)	37(20.8)	141(79.2)
지 역 별	장안구	224	64(28.6)	160(71.4)	39(17.4)	185(82.6)	56(25.0)	168(75.0)
	권선구	280	64(22.9)	216(77.1)	41(14.6)	239(85.4)	49(17.5)	231(82.5)
	팔달구	198	66(33.3)	132(66.7)	32(16.2)	165(83.3)	38(19.2)	160(80.8)
	영통구	286	63(22.0)	223(78.0)	36(12.6)	250(87.4)	40(14.0)	246(86.0)
구분	사례수 (명)	민간기업 및 민간기관		여성단체(상담소)				
		들어본 적 있음	들어본 적 없음	들어본 적 있음	들어본 적 없음			
전체	988	143(14.5)	845(85.5)	198(20.0)	790(80.0)			
성 별	여성	673	83(12.3)	590(87.7)	142(21.1)	531(78.9)		
	남성	315	60(19.0)	255(81.0)	56(17.8)	259(82.2)		
연 령 별	10대	288	20(6.9)	268(93.1)	29(10.1)	259(89.9)		
	20대	166	30(18.1)	136(81.9)	41(24.7)	125(75.3)		
	30대	170	26(15.3)	144(84.7)	28(16.5)	142(83.5)		
	40대	186	31(16.7)	155(83.3)	52(28.0)	134(72.0)		
	50대	178	36(20.2)	142(79.8)	48(27.0)	130(73.0)		
지 역 별	장안구	224	47(21.0)	177(79.0)	53(23.7)	171(76.3)		
	권선구	280	38(13.6)	242(86.4)	51(18.2)	229(81.8)		
	팔달구	198	26(13.1)	172(86.9)	45(22.7)	153(77.3)		
	영통구	286	32(11.2)	254(88.8)	49(17.1)	237(82.9)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4-74>와 같다.

우선순위별로 보면 1순위 ① 데이트 상대의 개인적 성향 31.7%(313명/988명), 2순위 ⑦ 데이트폭력이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해서 24.7%(235명/952명), 3순위 ⑦ 데이트폭력이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해서 23.7%(216명/9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우선순위를 보면 여성은 ① 28.8%(194명), ④ 25.5%(167명), ⑦ 24.8%(155명) 순, 남성은 ① 37.8%(119명), ⑦ 27.2%(81명), ④ 21.8%(6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성별과 관계없이 데이트 상대의 개인적 성향이란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데이트폭력이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해서 등의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연령별 우선순위를 보면 10대는 ⑦ 33.0%(95명), ④ 27.9%(78명), ④ 22.4%(61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① 31.3%(52명), ④ 26.6%(42명), ⑦ 24.8%(38명) 순, 30대는 ① 34.1%(58명), ④ 24.2%(40명), ⑦ 23.8%(38명) 순, 40대는 ① 32.3%(60명), ⑦ 26.1%(47명), ⑦ 26.8%(44명) 순, 50대는 ① 31.5%(56명), ⑦ 28.4%(48명), ⑦ 29.2%(4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동일하게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데이트 상대의 개인적 성향,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데이트폭력이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지역별 우선순위를 보면 장안구는 ⑦ 29.0%(65명), ④ 24.4%(52명), ⑦ 23.3%(48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 ① 31.8%(89명), ④ 25.6%(70명), ⑦ 22.6%(59명) 순, 팔달구는 ① 32.3%(64명), ④ 25.5%(48명), ④ 24.7%(44명) 순, 영통구는 ① 33.9%(97명), ⑦ 28.4%(79명) ⑦ 25.3%(6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74〉 귀하는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

구분	사례수 (명)	1순위			2순위			3순위			
		문항	명	%	문항	명	%	문항	명	%	
전체	988	①	313	31.7	⑦	235	24.7	⑦	216	23.7	
성별	여성	673	①	194	28.8	④	167	25.5	⑦	155	24.8
	남성	315	①	119	37.8	⑦	81	27.2	④	62	21.8
연령별	10대	288	⑦	95	33.0	④	78	27.9	④	61	22.4
	20대	166	①	52	31.3	④	42	26.6	⑦	38	24.8
	30대	170	①	58	34.1	④	40	24.2	⑦	38	23.8
	40대	186	①	60	32.3	⑦	47	26.1	⑦	44	26.8
	50대	178	①	56	31.5	⑦	48	28.4	⑦	47	29.2
지역별	장안구	224	⑦	65	29.0	④	52	24.4	⑦	48	23.3
	권선구	280	①	89	31.8	④	70	25.6	⑦	59	22.6
	팔달구	198	①	64	32.3	④	48	25.5	④	44	24.7
	영통구	286	①	97	33.9	⑦	79	28.4	⑦	67	25.3

- | | |
|-----------------------------|-----------------------|
| ① 데이트 상대의 개인적 성향 | ② 데이트폭력 관련 근거 법령이 없어서 |
| ③ 피해자 보호 및 예방대책이 없어서(정부 정책) | ④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
| ⑤ 성평등의식부재(여성혐오 분위기 확산) | ⑥ 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
| ⑦ 데이트폭력이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해서 | ⑧ 기타() |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4-75>와 같다.

우선순위별로 보면 1순위 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38.6%(381명/988명), 2순위 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22.7%(220명/969명), 3순위 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12.9%(122명/947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우선순위를 보면 여성은 ⑤ 41.9%(282명), ⑤ 22.0%(146명), ⑤ 13.5%(88명) 순, 남성은 ⑤ 31.4%(99명), ⑤ 24.3%(74명), ② 14.3%(4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관계 없이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데이트폭력 예방의 최우선 정책으로 생각하였으며, 남성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우선순위를 보면 10대는 ⑤ 49.3%(142명), ⑤ 20.3%(58명), ② 13.4%(38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⑤ 45.2%(75명), ⑦ 19.9%(32명), ⑤ 14.0%(22명) 순, 30대는 ⑤ 42.4%(72명), ⑤ 25.5%(42명), ① 14.3%(23명) 순, 40대는 ⑤ 28.0%(52명), ⑤ 27.2%(49명), ⑤ 14.0%(24명) 순, 50대는 ② 28.7%(51명), ⑤ 22.6%(40명), ⑤ 22.4%(3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데이트폭력 인식전환 등 예방교육 실시 및 강화를 높게 응답하였으며, 20대는 경찰의 공정한 수사, 30대는 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우선순위를 보면 장안구는 ⑤ 33.9%(76명), ⑤ 28.3%(62명), ② 14.2%(31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 ⑤ 43.2%(121명), ⑤ 20.6%(57명), ①·⑤ 13.2%(36명) 순, 팔달구는 ⑤ 38.4%(76명), ⑤ 22.1%(42명), ① 12.0%(22명) 순, 영통구는 ⑤ 37.8%(108명), ⑤ 20.8%(59명) ⑤ 15.8%(4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75〉 귀하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

구분	사례수 (명)	1순위			2순위			3순위			
		문항	명	%	문항	명	%	문항	명	%	
전체	988	⑤	381	38.6	⑤	220	22.7	⑤	122	12.9	
성별	여성	673	⑤	282	41.9	⑤	146	22.0	⑤	88	13.5
	남성	315	⑤	99	31.4	⑤	74	24.3	②	42	14.3
연령별	10대	288	⑤	142	49.3	⑤	58	20.3	②	38	13.4
	20대	166	⑤	75	45.2	⑦	32	19.9	⑤	22	14.0
	30대	170	⑤	72	42.4	⑤	42	25.5	①	23	14.3
	40대	186	⑤	52	28.0	⑤	49	27.2	⑤	24	14.0
	50대	178	②	51	28.7	⑤	40	22.6	⑤	39	22.4
지역별	장안구	224	⑤	76	33.9	⑤	62	28.3	②	31	14.2
	권선구	280	⑤	121	43.2	⑤	57	20.6	①,⑤	36	13.2
	팔달구	198	⑤	76	38.4	⑤	42	22.1	①	22	12.0
	영통구	286	⑤	108	37.8	⑤	59	20.8	⑤	43	15.8

- | | |
|------------------------------|--|
| ① 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의 개선 | ②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전환 등 예방교육 실시 및 강화 |
| ③ 성평등 의식교육 | ④ 기존의 여성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강화 |
| 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 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제공 |
| ⑦ 경찰의 공정한 수사 | ⑧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 ⑨ 수원시의 데이트폭력 및 여성폭력 관련 예산 확보 | ⑩ 경찰(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
| ⑪ 데이트폭력 전담수사기관 설치 | ⑫ 기타() |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4-76>과 같다.

우선순위별로 보면 1순위 ③ 가해자 접근 금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33.4%(330명/988명), 2순위 ③ 가해자 접근 금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23.6%(229명/970명), 3순위 ③ 가해자 접근 금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16.1%(153명/949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우선순위를 보면 여성은 ③ 37.9%(255명), ③ 24.6%(164명), ⑧ 16.7%(109명) 순, 남성은 ③ 23.8%(75명), ② 23.4%(71명), ③ 20.8%(6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관계 없이 가해자 접근 금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최우선 정책으로 생각하였으며, 여성은 촬영·유포된 영상 피해 삭제 지원을 남성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우선순위를 보면 10대는 ③ 38.2%(110명), ② 22.8%(65명), ⑧ 23.0%(65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③ 27.7%(46명), ③ 25.5%(41명), ③ 19.5%(31명) 순, 30대는 ② 33.5%(57명), ③ 34.1%(57명), ③ 17.8%(29명) 순, 40대는 ③ 35.5%(56명), ② 25.8%(47명), ③·④ 15.5%(27명) 순, 50대는 ③ 31.5%(56명), ③·④ 23.4%(41명), ③ 15.3%(2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동일하게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가해자 접근 금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되었으며, 10대는 가해자 처벌 근거 법령 제정, 촬영·유포된 영상 피해 삭제 지원, 40대와 50대는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피해자 의료지 지원 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우선순위를 보면 장안구는 ③ 38.8%(87명), ② 21.4%(47명), ④ 19.7%(42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 ③ 33.2%(93명), ③ 26.8%(74명), ③ 17.2%(47명) 순, 팔달구는 ③ 29.3%(58명), ③ 21.4%(41명), ⑧ 16.7%(31명) 순, 영통구는 ③ 32.2%(92명), ③ 24.1%(68명) ③ 16.7%(4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76〉 귀하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

구분	사례수 (명)	1순위			2순위			3순위			
		문항	명	%	문항	명	%	문항	명	%	
전체	988	③	330	33.4	③	229	23.6	③	153	16.1	
성 별	여성	673	③	255	37.9	③	164	24.6	⑧	109	16.7
	남성	315	③	75	23.8	②	71	23.4	③	62	20.8
연 령 별	10대	288	③	110	38.2	②	65	22.8	⑧	65	23.0
	20대	166	③	46	27.7	③	41	25.5	③	31	19.5
	30대	170	②	57	33.5	③	57	34.1	③	29	17.8
	40대	186	③	66	35.5	②	47	25.8	③,④	27	15.5
	50대	178	③	56	31.5	③,④	41	23.4	③	26	15.3
지 역 별	장안구	224	③	87	38.8	②	47	21.4	④	42	19.7
	권선구	280	③	93	33.2	③	74	26.8	③	47	17.2
	팔달구	198	③	58	29.3	③	41	21.4	⑧	31	16.7
	영동구	286	③	92	32.2	③	68	24.1	③	46	16.7

- | | |
|---------------------------|----------------------------------|
| ① 피해자 보호에 따른 근거 법령 제정 | ② 가해자 처벌 근거 법령 제정 |
| ③ 가해자 접근 금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 ④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피해자 의료비 지원 |
| ⑤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 ⑥ 수사 및 법적 절차에서 지원 ³⁷⁾ |
| ⑦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 ⑧ 촬영·유포된 영상 피해 삭제 지원 |
| ⑧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홍보 | ⑩ 기타() |

37)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구조, 국선번호인제도, 진술조력(수사지원, 소송지원)

‘데이트폭력 피해자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우선순위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4-77>과 같다.

우선순위별로 보면 1순위 ①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34.0%(336명/988명), 2순위 ⑦ 경찰 26.7%(220명/825명), 3순위 ⑦ 경찰 27.6%(197명/7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우선순위를 보면 여성은 ① 31.9%(215명), ⑥ 29.5%(164명), ⑦ 30.3%(145명) 순, 남성은 ① 38.4%(121명), ② 27.9%(75명), ⑦ 22.0%(5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관계 없이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과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여성은 여성단체(상담소)를 남성은 친한 친구 및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우선순위를 보면 10대는 ① 40.6%(117명), ⑦ 25.7%(71명), ⑦ 22.2%(56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① 31.3%(52명), ⑦ 28.8%(38명), ⑦ 36.4%(39명) 순, 30대는 ① 32.4%(55명), ⑦ 29.0%(36명), ⑦ 26.0%(26명) 순, 40대는 ① 36.0%(67명), ② 23.3%(35명), ⑦ 32.0%(41명) 순, 50대는 ① 25.3%(45명), ⑦ 30.1%(43명), ⑦ 27.6%(3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동일하게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과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40대는 친한 친구 및 선배에게도 요청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우선순위를 보면 장안구는 ① 33.0%(74명), ⑦ 26.9%(52명), ⑦ 27.1%(45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 ① 34.3%(96명), ⑦ 28.1%(63명), ⑦ 25.1%(48명) 순, 팔달구는 ① 28.3%(56명), ⑦ 24.5%(40명), ⑦ 25.7%(37명) 순, 영통구는 ① 38.5%(110명), ⑦ 26.5%(65명) ⑦ 31.5%(6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77〉 귀하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까?(우선순위)

구분	사례수 (명)	1순위			2순위			3순위			
		문항	명	%	문항	명	%	문항	명	%	
전체	988	①	336	34.0	⑦	220	26.7	⑦	197	27.6	
성 별	여성	673	①	215	31.9	⑥	164	29.5	⑦	145	30.3
	남성	315	①	121	38.4	②	75	27.9	⑦	52	22.0
연 령 별	10대	288	①	117	40.6	⑦	71	25.7	⑦	56	22.2
	20대	166	①	52	31.3	⑦	38	28.8	⑦	39	36.4
	30대	170	①	55	32.4	⑦	36	29.0	⑦	26	26.0
	40대	186	①	67	36.0	②	35	23.3	⑦	41	32.0
	50대	178	①	45	25.3	⑦	43	30.1	⑦	35	27.6
지 역 별	장안구	224	①	74	33.0	⑦	52	26.9	⑦	45	27.1
	권선구	280	①	96	34.3	⑦	63	28.1	⑦	48	25.1
	팔달구	198	①	56	28.3	⑦	40	24.5	⑦	37	25.7
	영통구	286	①	110	38.5	⑦	65	26.5	⑦	67	31.5

①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② 친한 친구 및 선배 ③ 소속 학교 및 소속 기관

④ 종교기관 ⑤ 직장동료 ⑥ 여성단체(상담소)

⑦ 경찰 ⑧ 모르겠다 ⑨ 기타()

‘만약 데이트폭력 피해자라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78>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④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 75.8%(749명)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⑤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피해 예방 및 지원 55.8%(551명), ⑦ 무료 법률 상담 등 법적 지원 49.9%(493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④ 79.9%(538명), ⑤ 61.2%(412명), ⑦ 53.9%(363명) 순, 남성은 ④ 67.0%(211명), ① 46.3%(146명), ⑤ 44.1%(139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성별과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와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피해 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를 남성은 지인, 가족 등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고민토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④ 68.8%(198명), ⑤ 53.5%(154명), ① 47.2%(136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④ 77.7%(129명), ⑤ 65.7%(109명), ⑦ 57.2%(95명) 순, 30대는 ④ 75.3%(128명), ⑤ 60.6%(103명), ⑦ 54.1%(92명) 순, 40대는 ④ 82.3%(153명), ⑤ 52.7%(98명), ⑦ 50.5%(94명) 순, 50대는 ④ 79.2%(141명), ⑦ 51.1%(91명), ⑤ 48.9%(8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동일하게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와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피해 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0대는 지인, 가족 등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고민 토로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는 ④ 72.8%(163명), ⑤ 56.3%(126명), ⑦ 50.0%(112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④ 78.6%(220명), ⑤ 55.4%(155명), ⑦ 50.4%(141명) 순, 팔달구는 ④ 75.8%(150명), ⑤ 54.0%(107명), ① 50.0%(99명) 순, 영통구는 ④ 75.5%(216명), ⑤ 57.0%(163명), ⑦ 50.3%(14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78〉 만약 귀하가 '데이트폭력' 피해자라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명	%	명	%	명	%	명	%	
전체	988	426	43.1	338	34.2	210	21.3	749	75.8	
성별	여성	673	280	41.6	234	34.8	152	22.6	538	79.9
	남성	315	146	46.3	104	33.0	58	18.4	211	67.0
연령별	10대	288	136	47.2	77	26.7	49	17.0	198	68.8
	20대	166	76	45.8	71	42.8	45	27.1	129	77.7
	30대	170	71	41.8	70	41.2	45	26.5	128	75.3
	40대	186	71	38.2	60	32.3	43	23.1	153	82.3
	50대	178	72	40.4	60	33.7	28	15.7	141	79.2
지역별	장안구	224	103	46.0	76	33.9	56	25.0	163	72.8
	권선구	280	104	37.1	92	32.9	56	20.0	220	78.6
	팔달구	198	99	50.0	62	31.3	36	18.2	150	75.8
	영통구	286	120	42.0	108	37.8	62	21.7	216	75.5
구분	사례수 (명)	⑤		⑥		⑦				
전체	988	551	55.8	312	31.6	493	49.9			
성별	여성	673	412	61.2	228	33.9	363	53.9		
	남성	315	139	44.1	84	26.7	130	41.3		
연령별	10대	288	154	53.5	106	36.8	121	42.0		
	20대	166	109	65.7	66	39.8	95	57.2		
	30대	170	103	60.6	55	32.4	92	54.1		
	40대	186	98	52.7	44	23.7	94	50.5		
	50대	178	87	48.9	41	23.0	91	51.1		
지역별	장안구	224	126	56.3	62	27.7	112	50.0		
	권선구	280	155	55.4	110	39.3	141	50.4		
	팔달구	198	107	54.0	67	33.8	96	48.5		
	영통구	286	163	57.0	73	25.5	144	50.3		

- ① 지인, 가족 등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고민 토로 ②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담소
 ③ 데이트폭력을 인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④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
 ⑤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피해 예방 및 지원 ⑥ 피해자 의료비 지원
 ⑦ 무료 법률 상담 등 법적 지원 ⑧ 기타()

‘수원시에서 데이트폭력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중 알고 있는 기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79>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⑦ 112 52.6%(520명)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④ 1366(여성긴급전화) 37.1%(367명), ① 수원여성의전화 23.7%(234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⑦ 50.5%(340명), ④ 43.4%(292명), ① 28.2%(190명) 순, 남성은 ⑦ 57.1%(180명), ⑨ 24.1%(76명), ④ 23.8%(7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관계없이 수원시에서 데이트폭력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중 112와 1366(여성긴급전화)을 가장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에 여성은 수원여성의전화, 남성은 알고 있는 기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⑦ 76.0%(219명), ④ 38.2%(110명), ⑤ 34.7%(100명)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⑦ 52.4%(87명), ④ 39.2%(65명), ⑨ 23.5%(39명) 순, 30대는 ⑦ 45.3%(77명), ⑨ 32.4%(55명), ④ 25.3%(43명) 순, 40대는 ④ 38.2%(71명), ⑦ 35.5%(66명), ① 33.3%(62명) 순, 50대는 ① 48.9%(87명), ④ 43.8%(78명), ⑦ 39.9%(7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112와 1366(여성긴급전화)을 가장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는 학교, 20대와 30대는 알고 있는 기관이 전혀 없으며, 40대와 50대는 수원여성의전화 등의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구는 ⑦ 53.1%(119명), ④ 38.4%(86명), ① 27.2%(61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는 ⑦ 53.2%(149명), ④ 38.9%(109명), ① 23.9%(67명) 순, 팔달구는 ⑦ 55.6%(110명), ④ 36.4%(72명), ① 22.7%(45명) 순, 영통구는 ⑦ 49.7%(142명), ④ 35.0%(100명), ⑨ 25.2%(7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79〉 귀하는 수원시에서 ‘데이트폭력’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중 알고 있는 기관을 모두 응답해주시시오.(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988	234	23.7	116	11.7	120	12.1	367	37.1	122	12.3	
성별	여성	673	190	28.2	70	10.4	72	10.7	292	43.4	74	11.0
	남성	315	44	14.0	46	14.6	48	15.2	75	23.8	48	15.2
연령별	10대	288	37	12.8	48	16.7	31	10.8	110	38.2	100	34.7
	20대	166	22	13.3	15	9.0	16	9.6	65	39.2	11	6.6
	30대	170	26	15.3	14	8.2	16	9.4	43	25.3	6	3.5
	40대	186	62	33.3	15	8.1	20	10.8	71	38.2	4	2.2
	50대	178	87	48.9	24	13.5	37	20.8	78	43.8	1	0.6
지역별	장안구	224	61	27.2	24	10.7	24	10.7	86	38.4	27	12.1
	권선구	280	67	23.9	31	11.1	33	11.8	109	38.9	31	11.1
	팔달구	198	45	22.7	34	17.2	27	13.6	72	36.4	34	17.2
	영통구	286	61	21.3	27	9.4	36	12.6	100	35.0	30	10.5
구분	사례수 (명)	⑥		⑦		⑧		⑨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988	119	12.0	520	52.6	104	10.5	220	22.3			
성별	여성	673	79	11.7	340	50.5	78	11.6	144	21.4		
	남성	315	40	12.7	180	57.1	26	8.3	76	24.1		
연령별	10대	288	64	22.2	219	76.0	25	8.7	35	12.2		
	20대	166	16	9.6	87	52.4	23	13.9	39	23.5		
	30대	170	7	4.1	77	45.3	26	15.3	55	32.4		
	40대	186	14	7.5	66	35.5	21	11.3	55	29.6		
	50대	178	18	10.1	71	39.9	9	5.1	36	20.2		
지역별	장안구	224	33	14.7	119	53.1	25	11.2	42	18.8		
	권선구	280	27	9.6	149	53.2	25	8.9	64	22.9		
	팔달구	198	36	18.2	110	55.6	23	11.6	42	21.2		
	영통구	286	23	8.0	142	49.7	31	10.8	72	25.2		

① 수원여성의전화

③ 수원가정법률상담소

⑤ 학교

⑦ 112

⑨ 알고 있는 기관이 전혀 없다

②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④ 1366(여성긴급전화)

⑥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⑧ 해바라기센터

⑩ 기타()

‘수원시민을 위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에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4-80>과 같다.

우선순위별로 보면 1순위 ② 수원시 데이트폭력 전담기관 설치 58.7%(580명/988명), 2순위 ② 수원시 데이트폭력 전담기관 설치 20.3%(190명/936명), 3순위 ④ 기존 데이트폭력 상담기관의 지원 확대 16.7%(145명/867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우선순위를 보면 여성은 ② 61.5%(414명), ② 19.9%(129명), ④ 17.6%(105명) 순, 남성은 ② 52.7%(166명), ② 21.1%(61명), ⑥ 17.1%(4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관계 없이 수원시 데이트폭력 전담기관 설치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성은 기존 데이트폭력 상담기관의 지원 확대를 남성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우선순위를 보면 10대는 ② 62.8%(181명), ② 24.4%(69명), ④ 18.1%(50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는 ② 55.4%(92명), ② 20.8%(32명), ④ 17.1%(24명) 순, 30대는 ② 60.0%(102명), ② 23.3%(37명), ⑥ 18.8%(26명) 순, 40대는 ② 55.4%(103명), ② 21.1%(36명), ⑤ 18.7%(29명) 순, 50대는 ② 57.3%(102명), ⑤ 20.1%(34명), ④ 15.9%(2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수원시 데이트폭력 전담기관의 설치를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0대, 20대, 50대는 기존 데이트폭력 상담기관의 지원 확대, 40대와 50대는 피해자 보호시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우선순위를 보면 장안구는 ② 56.7%(127명), ② 20.1%(42명), ④ 15.6%(30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권선구 ② 63.6%(178명), ② 20.7%(55명), ⑤ 20.2%(50명) 순, 팔달구는 ② 56.6%(112명), ② 20.6%(39명), ⑤ 17.2%(30명) 순, 영통구는 ② 57.0%(163명), ② 19.9%(54명) ④ 19.4%(4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80〉 수원시민을 위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에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

구분	사례수 (명)	1순위			2순위			3순위			
		문항	명	%	문항	명	%	문항	명	%	
전체	988	②	580	58.7	②	190	20.3	④	145	16.7	
성 별	여성	673	②	414	61.5	②	129	19.9	④	105	17.6
	남성	315	②	166	52.7	②	61	21.1	⑥	46	17.1
연 령 별	10대	288	②	181	62.8	②	69	24.4	④	50	18.1
	20대	166	②	92	55.4	②	32	20.8	④	24	17.1
	30대	170	②	102	60.0	②	37	23.3	⑥	26	18.8
	40대	186	②	103	55.4	②	36	21.1	⑤	29	18.7
	50대	178	②	102	57.3	⑤	34	20.1	④	25	15.9
지 역 별	장안구	224	②	127	56.7	②	42	20.1	④	30	15.6
	권선구	280	②	178	63.6	②	55	20.7	⑤	50	20.2
	팔달구	198	②	112	56.6	②	39	20.6	⑤	30	17.2
	영통구	286	②	163	57.0	②	54	19.9	④	49	19.4

- ① 수원시 데이트폭력 관련 조례제정
③ 수원시 데이트폭력 예방 및 지원 예산 확보
⑤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⑦ 수원시 데이트폭력 지원 정책 홍보

- ② 수원시 데이트폭력 전담기관 설치
④ 기존 데이트폭력 상담기관의 지원 확대
⑥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⑧ 기타()

제3절 전문가 심층면접조사(FGI) 분석 결과

1. 조사 개요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와 더불어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 FGI)를 통해 조사되지 않은 세부 사례들과 문제점 그리고 정책제언 등을 함께 도출할 필요가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제언을 통한 연구의 질적 향상이 담보될 수 있으나 직접 면담이 어려워 데이트폭력 상담 및 피해자 보호시설 실무자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전문가를 통해 데이트폭력 관련 다양한 사례를 전해 들음으로써 기존 문헌연구 및 실태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들과 현황들을 확인하여,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 및 수원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 내용

데이트폭력 관련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는 2019년 7월 17일, 1회에 걸쳐 총 3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전문가용 질문지(가이드라인)를 별도로 구성하여 시행하였으며, 직접 만나 인터뷰를 수행하는 라운드테이블 회의방식을 통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심층면접조사에 활용한 구조화된 질문지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이론적 검토 및 설문지 문항구성에 활용한 주요 분석 영역과 변수를 질문의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수원시 데이트폭력 전문가 집단의 구조화된 조사내용은 다음 <표 4-81>과 같다.

〈표 4-81〉 심층면접조사(FGI) 집단구분 및 조사내용

집단구분	주요내용	
전문가	데이트폭력 유형 및 피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트폭력 유형 • 데이트폭력 발생시기 • 데이트폭력 성별 피해 수준 • 기관별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데이트폭력 예방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트폭력 관련 법·제도·조례 등의 노력 여부 • 기관별 데이트폭력 대응 매뉴얼 • 주기적인 데이트폭력 실태 조사 현황 및 데이트폭력 상담 통계 조사 현황 •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사 교육훈련 •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피해자·가해자 교육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및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 데이트폭력 지원 전반에 대한 전문가 개별 의견 청취

3. 분석 결과

1) 데이트폭력 유형 및 피해 현황

데이트폭력이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대 초반으로 주로 신체폭력에 한정되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신체폭력은 물론 스토킹, 성적 폭력, 채무관계, 주거침입, 디지털성폭력 등 다면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여성폭력 유형 전반에 걸쳐 데이트폭력이란 이름하에 자행되고 있다. 실제 피해자 중에는 각각의 개별적 유형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들도 존재하지만 통합적 피해자(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도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대체로 이와 같은 통합적 피해자들은 피해충격으로 인해 스스로를 실종상태로 만들어 사회와 격리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에서도 도움 및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지속적이고 인지하기 쉽게 홍보되어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

데이트폭력 발생시기에 있어 보통 통제와 간섭으로 시작하여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발생시기를 규정짓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 상담을 통해 경험적으로 느끼는 주된 발생시기는 대개 1년 미만으로 한국여성의전화 2016년 조사에서도 통제와 간섭은 1개월 미만, 신체적 폭력은 6개월 즈음, 복합적 폭력은 1년에서 2년 미만 내에 대체로 발생한다고 조사되었다.

데이트폭력 성별 피해 수준에는 대부분의 폭력 피해자가 여성으로 남성 피해자도 존재하지만 그 비율은 여성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쌍방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남성 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정서적 폭력을 겪다가 감정이 폭발하여 쌍방폭력이 발생하거나, 폭력에 대응하다가 쌍방폭력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전문가 A) 최근 데이트폭력에서 쌍방폭력의 증가는 남성 피해자의 증가로 판단한 언론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쌍방이 폭력을 행사한 표면적인 모습만 가지고 해석하면 남성의 피해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담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의 언어적·정서적 폭력으로 인해 감정이 폭발하거나 혹은 신체적·성적 폭력을 당하여 폭력행사가 아닌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남성 피해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데이트폭력이 한 가지 유형에만 국한되어 발생하지 않고 여러 유형으로 발생하며, 점차 강도가 강해지면서 쌍방으로 문제가 전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데이트폭력 예방체계 구축

데이트폭력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며, 인식개선만으로도 많은 데이트폭력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즉, 데이트폭력 유형이 통제와 간섭을 통해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신체 폭력, 성적 폭력으로 발전된다고 가정했을 때, 통제와 간섭이 발생하는 1개월 미만 이전에 데이트폭력이 무엇이고 폭력 유형에는 무엇이 있으며,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다면 다수의 데이트 관계의 여성과 남성이 친근한 관계에서 무심코 표현되거나 행동되는 것에 대한 주의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므로 충분히 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원시에서 데이트폭력 인식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트폭력 관련 수원시 내 조례가 우선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조례를 통해 수원시 차원에서 데이트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주기적인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의 근거를 명시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데이트폭력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잠재적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데이트폭력을 인식할 수 있고 피해자 예방, 가해자 처벌, 도움·상담·지원 기관 안내, 지원 제도 안내 등 데이트폭력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수원시가 매뉴얼을 작성할 때 경찰청의 데이트폭력 신고서 초기 대응 매뉴얼과 동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매뉴얼 개발 이전에 경찰청과 협조하여 일치한 예방·대응방식을 보여야 피해자들이 피해 발생 신고 혹은 상담·지원을 요청할 때, 서로 전가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전 연령층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성인의 경우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주변 공공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청소년의 경우 기존 교육방식인 설명식의 데이트폭력 교육과 더불어 대화형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어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폭력 안심마을 및 독신여성 아파트 거주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해 인프라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폭력과 관련한 안전 서비스 및 정책 등을 시범마을 선정을 통해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유사 정책 및 서비스를 도입하고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 B)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중·고등학교에 데이트폭력 및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면, 강당에 1개 학년 전 학생들을 모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최근에는 집합교육은 거의 사라지고 학급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실시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들의 집중도가 매우 떨어지고, 제가 전달하고자하는 교육내용들이 5%도 전달되지 못하는 것으로 느낄 정도로 교육효과가 미미합니다. 상대적으로 학급중심의 교육을 진행하면 교육효과는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순 설명식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학생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수업하기에는 교육 횟수가 매우 적다고 느껴집니다.

만약 교육 횟수를 당장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데이트폭력 및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사례중심적이고, 질문과 상담 그리고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교육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데이트폭력 및 여성폭력 교육 가이드라인이 개발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손쉽게 이해하기도 좋으며 데이트폭력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및 체계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데이트폭력 피해사건이 기소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 피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시간적으로도 즉각 기소 받기가 매우 어려워 피해자는 지원 대상자는 많으나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소를 통한 피해사실 인정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관련 기관(상담소)의 상담을 통해 발급되는 ‘피해상담 사실확인증’으로도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면 피해자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에 있어 개인마다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피해 유형이 각기

다르므로, 기존의 지원체계인 법률·상담·의료지원과 더불어 피해자 개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지원(예: 생계비 지원, 학원비 지원, 이사비 지원)체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데이트폭력 유형 중 채무관계(경제적 폭력) 관련 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법률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은 매우 적어 수원시 차원에서 법률상담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수원시청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데이트폭력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배너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데이트폭력 예방 및 데이트폭력 관련 기관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데이트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수원시민 모두가 데이트폭력 관련 기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방문이 잦은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C) 우리 단체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두 단체 모두 데이트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수원시의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상담하고, 지원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데이트폭력도 그렇고 여성폭력 전반에 있어 상담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원시에서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만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기관들의 인지도가 높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원단체의 홈페이지를 수원시청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등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앱 등에 배너를 설치하여 자주 눈에 띄고, 관심 갖게 해주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대체로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검색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40대부터는 기관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없으면 자발적인 검색으로 상담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인과 가족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지만, 데이트폭력과 여성폭력의 경우 피해사실을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연령과 상관없이 공공기관이면 어디서든 지원기관의 배너가 설치되어 상담요청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절 소결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와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내용을 확인하였다.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는 ‘인식조사’, ‘데이트폭력 경험과 대응’,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각 파트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식조사에서 ‘데이트 관계에 대한 인식’은 신체적 폭력과 연관된 문항에서 다른 데이트폭력의 유형(통제와 간섭,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보다 데이트폭력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높았으며, 통제와 간섭을 데이트폭력이라기보다는 사랑하

기 때문이거나 데이트 관계에 있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부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평균간 차이에서는 데이트 관계에 대한 인식이 성별, 연령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데이트 관계에서 인식’은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 그리고 경제적 폭력과 연관된 문항에서 데이트폭력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데이트 관계에서 데이트폭력 유형별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평균간 차이에서는 데이트 관계에서 인식이 성별에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차이는 전체 문항의 절반 이상의 차이를 보였으며, 지역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에서는 통제와 간섭과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관련 문항에 ‘대체로 그러함’의 응답이 높아 데이트폭력으로 인식하거나 동의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 관련 문항에는 ‘매우 그러함’의 응답이 높아 데이트폭력으로 정확히 인지하고 있거나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평균간 차이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차이는 전체 문항의 절반 이상이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데이트폭력 경험과 대응에서 데이트폭력이 시작된 시기는 ‘통제와 간섭’,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순으로 나타나 신체적 폭력이 가장 늦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주된 느낌은 ‘통제와 간섭’이 아무렇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많아 데이트폭력의 다른 유형 보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과 성적 폭력에는 헤어지고 싶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적 폭력은 상대의 통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이 있었을 때 주된 반응으로는 ‘신체적 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강하게 반응이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통제와 간섭’,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에서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헤어지자고 얘기하지 않아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다’의 응답과 ‘뭐 그런 일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의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이후에도 헤어지지 않고 데이트 관계를 유지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대체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히려 화를 내는 상대방의 비율도 적지 않아 상대방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데이트폭력 대응에 있어서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뒤 헤어진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으나 연애 관계를 유지한 이유로는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거나 좋을 때는 잘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데이트폭력이 발생할 경우 주위 사람들의 조언과 위로를 가장 필요로 하였고, 데이트폭력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방법, 과정) 혹은 지원 단체,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과 관계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로 인해 타인 또는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의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관계없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경찰의 공정한 수사'와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전환 등 예방교육 실시 및 강화' 등이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하였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가해자 접근 금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가 공통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으며, '가해자 처벌 근거 법령 제정',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도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민을 위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수원시 데이트폭력 전담기관 설치'가 공통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으며, '기존 데이트폭력 상담기관의 지원 확대',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등이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하였다.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현재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은 과거 신체적 폭력으로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남성 보다는 여성이 데이트폭력의 주요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쌍방폭력의 발생이 증가하여 남성의 데이트폭력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성이 정서적 폭력을 겪고 견고 참다가 폭발하여 쌍방폭력이 발생하거나 폭력에 대응하다가 쌍방폭력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별 피해수준에서 여성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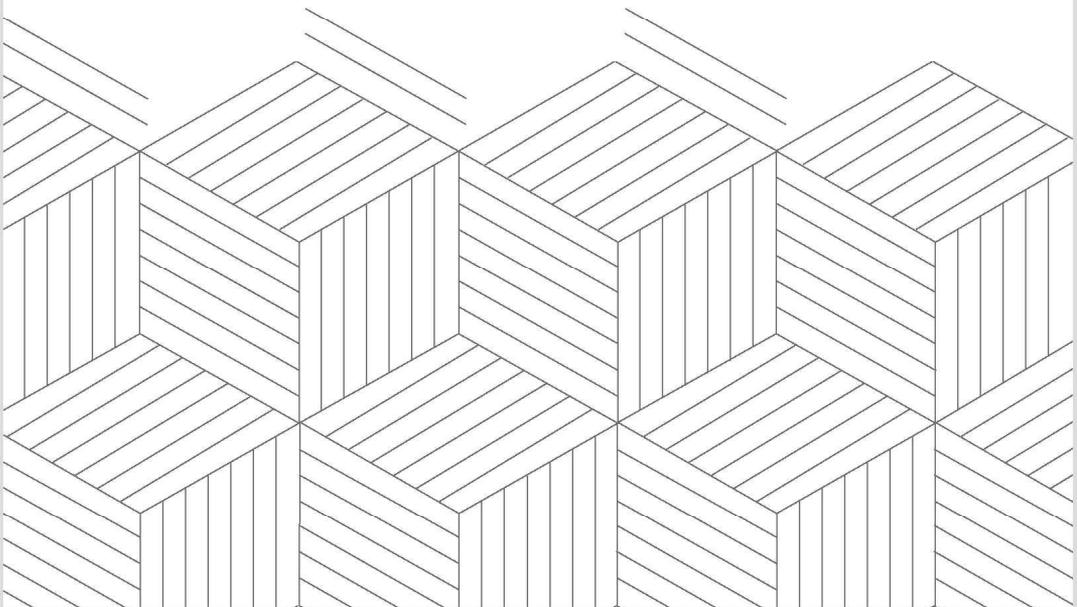
두 번째, 데이트폭력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트폭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수원시가 데이트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주기적인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원시 차원에서 데이트폭력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잠재적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데이트폭력을 인식할 수 있고 피해자 예방, 가해자 처벌, 도움·상담·지원 기관 안내, 지원제도 안내 등 데이트폭력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이 전 연령층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성인의 경우 접근성 좋은 공간을 활용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은 단순 설명식

교육이 아닌 대화형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어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및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전문가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기소 받지 못한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데이트폭력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소를 통한 피해사실 인정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관련 기관(상담소)의 상담을 통해 발급되는 ‘피해상담 사실확인증’으로도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데이트폭력 예방 및 데이트폭력 기관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수원시청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데이트폭력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배너를 추가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수원시민 모두가 데이트폭력 관련 기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여성폭력에 대한 논의

여성폭력의 개념은 연구자들 사이에 일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그 유형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폭력은 단일 범죄유형으로 처벌되는 폭행과도 달라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라는 의미보다는 “성적 차별”을 바탕으로 한 폭력행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여성폭력의 개념은 성적 차별을 바탕으로 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을 주로 다루게 될 것이나, 성적인 폭력행위라면 그 대상을 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성 폭력의 다양한 배경과 원인으로는 첫째, 여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요소나 실업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 둘째, 경제적 불평등은 여성폭력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갈등해결을 위한 폭력의 사용은 여성폭력의 원인이 된다. 넷째, 사생활 주위에 대한 강조는 여성폭력과 연관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방조는 여성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 여성폭력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는 개인 차원, 부부와 가족 차원, 지역공동체 차원, 국가 차원 등으로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여성폭력의 주요한 구조적 원인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들과 합쳐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폭력의 요인은 사회 및 경제적 지위,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과거, 개인적인 행동 형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선진국에서 실시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에 의한 폭력, 낯선 사람에 의한 아동 성적 학대와 성폭행, 강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의 유형을 가정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스토킹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지원체계까지 확인하였다.

더불어 국외의 다양한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는 주로 가족폭력에 대한 내용을 필두로 하여 그 외의 다양한 아동·여성관련 폭력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적용과 제재를 다루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아직까지 시행 이전(2019.12.25. 시행)이며, 외국의 법·제도 내용을 통해 향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데이트폭력 현황 및 정책

전국 데이트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364건 2017년 14,136건, 2018년 18,671건으로 데이트폭력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경범죄 등의 형사입건은 증가하고 살인, 성폭력, 주거침입 등의 범죄는 감소하였다. 이는 적극적인 신고유도로 총 신고건수가 증가되고, 형사 입건자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결국 '범죄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상담'하여 나타난 통계로 판단된다.

경기도의 2017년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4,747건으로 전국 데이트폭력 신고건수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데이트폭력 관련 가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20대, 30대, 4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경기 남부는 경기 북부에 비해 데이트폭력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순한 인구수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도시화로 인한 문제도 수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기 남부와 수원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첫째, 법무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경찰청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였다. 셋째,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그리고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나타난 이유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것이며, 이것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도와 함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단순한 범죄가 아닌 데이트폭력의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또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조사(FGI)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는 수원시의 만 15세~59세 남녀 9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배분은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따른 변형비례배분하였다. 조사 방법에서 청소년은 직접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인은 조사 전문 업체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을 실시하였으며, 2개월 간 진행하였다. 더불어 FGI(심층면접조사)는 전문 가용 질문지(가이드라인)를 별도로 구성하여 라운드테이블 회의방식을 통하여 자유롭게 발언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데이트폭력 관련 기관 실무자 3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는 첫째,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에서는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데이트폭력으로 정확히 인지하거나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간 응답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데이트폭력이 시작된 시기는 ‘통제와 간섭’,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주된 느낌은 ‘통제와 간섭’의 경우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응답자가 많아 데이트폭력으로서의 인식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데이트폭력이 있었을 때 주된 반응은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 부분 존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당했을 때 응답자의 주된 반응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헤어지자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에서는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아 데이트폭력 인식이 낮은 상대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데이트폭력 대응에는 데이트폭력을 경험하였음에도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거나 좋을 때는 잘해주기 때문에 연애관계를 유지한 경우가 많았으며, 데이트폭력이 발생할 경우 주위 사람들의 조언과 위로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에서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경찰의 공정한 수사,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예방교육 실시 및 강화 등을 응답하였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가해자 접근 금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가해자 처벌 근거 법령 제정,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신변보호를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민을 위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수원시 데이트폭력 전담기관 설치, 기존 데이트폭력 상담기관의 지원 확대,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등을 응답되어 수원시가 직접적으로 데이트폭력 예방에 관여하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조사(FGI) 분석결과는 첫째, 데이트폭력이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쌍방폭력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쌍방폭력으로 인해 남성의 데이트폭력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성이 정서적 폭력에 대한 대응 혹은 신체적·성적 폭력에 대응하다가 쌍방폭력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성별 피해수준에서 여성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데이트폭력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차원의 데이트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주기적인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원시 차원에서 데

이트폭력 매뉴얼 개발 및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전 연령층 시민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성인의 경우 접근성 좋은 공간을 활용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청소년은 단순 설명식의 데이트폭력 교육이 아닌 대화형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어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및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기소를 통한 피해사실 인정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관련 기관(상담소)의 상담을 통해 발급되는 ‘피해상담 사실확인증’으로도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데이트폭력 예방 및 데이트폭력 기관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수원시청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데이트폭력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배너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정책제언

1. 단기적 과제

1) 수원시 데이트폭력(여성폭력) 관련 조례의 개정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수원시민 중 데이트폭력 유형별 경험여부는 ‘통제와 간섭’ 57.4%, 언어적·경제적·정서적 폭력 37.1%, 신체적 폭력 18.8%, 성적 폭력 27.1%로 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폭력이란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두 적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현재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단체,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및 보호를 받고 있지만, 다양하게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확인하기 어렵다. <표 2-3> 여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에서 범죄가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데이트폭력이 포함될 수 있는 법률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홍미영·박지영, 2018). 2018년 12월 24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어 2019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보호되지 못하는 법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국가,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조례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으며,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의해서만 전략적으로 지원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폭력과 관련해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82개의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수원시는 2017년에 제정하였다. 대부분의 조례는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와 그 보호 지원, 지역연대의 설치·운영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데이트폭력과 디지털성범죄 등의 여성폭력 유형은 빠져 있고 실태조사 실시를 조례에 지정한 곳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특히 폭력의 범위를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한정하여 여성폭력의 범위가 좁으며,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결국 현재의 「수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로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있어 올바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존 조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여성폭력의 정의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당할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은 편의상 개별적으로 명명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조례에서의 정의나 정책적 접근에서는 그 공통 속성인 ‘젠더폭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 역시 예외일 수 없다(강희영 외, 2017). 따라서 「수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폭력의 정의를 젠더폭력에 기반한 폭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조례상의 지역연대를 설치, 사례관리팀 운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또는 시설에 사업비 지원 등의 사항이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및 관련 전문가(실무자)에게도 지원과 의견수렴, 성과관리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다.

2) 수원시 데이트폭력(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

현재 중앙정부는 각각의 법률적 근거를 통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국 법적 근거가 없는 데이트폭력은 국책연구기관 혹은 지역의 연구기관 등에서 실태를 파악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

수원시도 데이트폭력 및 여성폭력과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본 연구는 수원시에 시민단체와 여성단체가 지속적으로 조사를 요구하고 정책과제로 추진된 일시적인 연구에 속한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광역시·도까지만 조사대상의 범위를 설정하여 수원시의 실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경기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너무 많고 설문조사 샘플수도 다소 적어 한계가 있다. 수원시는 120만 이상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대 도시(metropolis)로서 대다

수 광역시와 비슷한 인구현황을 지니고 있어 데이트폭력 및 여성폭력에서 타지방자치단체들보다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책추진을 위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에서도 ‘수원시 차원에서 데이트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주기적인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기적인 실태조사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제안한 「수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에 주기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년도에 실시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여성폭력 유형을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2019년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202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21년 ‘(온라인)성폭력 실태조사’ 순으로 순환주기를 지정하여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참고로 법적 근거 마련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요인으로 작용되며, 주기적 실태조사는 수원시와 여성폭력 관련 전문가·실무자, 수원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태조사의 주제의 선정 및 순환주기 설정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3) 수원시 데이트폭력 예방 및 지원의 홍보 확대

수원시 데이트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홍보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며 다양하게 전파될 필요가 있다.

첫째, TV 방송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데이트폭력’이란 말을 어디서 들어 보았습니까?의 질의에 TV 방송이나 인터넷 96.8%(956명)을 통해 가장 많이 들어본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과 관계없이 모두 높은 응답률을 보이므로, 향후 정책지원 및 인식개선 등의 홍보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정보전달은 지역 TV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온라인 기사, 블로그, YouTube 등)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데이트폭력의 개념, 데이트폭력 사례, 데이트폭력의 유형 등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될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트폭력 관련 가이드북이나 체크리스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자들은 잠재적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데이트폭력을 인식할 수 있고 피해자 예방, 가해자 처벌, 도움·상담·지원, 기관 안내 등 데이트폭력의 전반적인 내용인 담긴 메뉴

얼을 적극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권리고지와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서’(관련절차, 지원기관 등 수록)를 서면교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수원시는 데이트폭력 전반에 대한 설명과 정부부처(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가 제시하는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의 행정정보 그리고 수원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위치 및 지원정보를 수록한 자체적인 가이드북 개발 및 발간이 요구된다. 더불어 수원시민 스스로가 데이트폭력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학교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안내·배포할 필요가 있다.

부수적으로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가이드북이나 체크리스트를 개발할 경우, 수원시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 스마트폰 앱 개발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며, 해당 사이트 및 앱에 데이트폭력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자료집,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혜원·정요한, 2018).

4) 수원시 공공기관 홈페이지 내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기관) 배너 설치

본 연구의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및 체계’에 관한 질의에서 피해자 지원단체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데이트폭력 전반에 대한 교육·홍보·예방·지원·보호 등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현재에도 어디선가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를 최대한 노출시킬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수원시에서 데이트폭력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지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112(경찰) 52.6%(520명), 1366(여성긴급전화) 37.1%(367명), 수원여성의전화 23.7%(23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경찰이 시민들이 피해 발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신고하는 대표성을 가진 기관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반면, 1366(여성긴급전화)과 수원여성의전화는 아직까지 데이트폭력 피해 지원단체로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종사자 및 활동가의 전문성이 높고, 피해자 지원 노력과 성과가 뛰어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시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안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원시청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홈페이지 배너를 설치하는 것이다. 향후 중장기적인 홍보 및 인지도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앞서 수원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표적인 홈페이지에 해당 배너를 설치하여 인지도를 향

설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수원시 주도 하의 데이트폭력(여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여 수원시 내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1366(여성긴급전화), 경찰, 학계 전문가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상호간의 정보공유 및 의견청취, 지원 등을 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기구를 신설하고 모임을 주도하며, 각 지원단체에게 수원시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매년 각 기관 및 단체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원단체는 수원시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를 통해 상담가 및 활동가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단체의 운영비용 외로 데이트폭력(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협력적 거버넌스에 속한 기관 및 단체들과 협업하여 피해자 지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간 정보공유를 통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예방·대응책 마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데이트폭력(여성폭력) 전담기구의 신설은 상주할 수 있는 오프라인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과 재정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능률적인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기구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와해되기도 쉽기 때문에 주도하는 수원시가 해당 기구 신설에 있어 명확한 지침과 규칙 그리고 역할정립 등 상호의견 일치를 위한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2) 수원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혼인 관계가 아니어서 가정폭력에도 해당하지 않다보니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중심으로 한 현행 지원체계 안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성폭력으로 고소했거나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적인 문제, 치정문제, 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보고 제도적 사각지대로 존재하게 되므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폭력피해 사건이 기소되어야만 지원대상으로 분류된다고 하면서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 피해를 즉각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기소 받기가 어려워 피해자는 맞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을 통해서 발급되는 ‘피해상담사실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의

38) 협력적 거버넌스란 기존의 거버넌스와 차이를 보이는 몇 가지 특성으로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문제해결 상호작용’, ‘비정부조직의 참여’,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참여’, ‘공식적 집합행동’, ‘상호의견일치의 추구’ 등이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협력적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사회문제 해결기제로서 탁월성을 가지는 것은 물론, 실제 네트워크의 활용능력을 강조하고 있다(이명석, 2010).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 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사례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피해지원 대상자의 범위 확대가 주요한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현재 별도의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책이 마련되어있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원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수립이 요구되므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기소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수원시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활성화

수원시민이 지닌 데이트폭력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게 분석되었으며, 설문문항에 따라 성별·연령별 인식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데이트폭력이 있었을 때 주된 반응에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의 데이트폭력 유형별 응답률은 통제와 간섭 25.9%(147명),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13.6%(50명), 신체적 폭력 10.2%(19명), 성적 폭력 16.0%(43명) 등 데이트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데이트폭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크게 문제로 삼지 않는 응답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제와 간섭 그리고 성적 폭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데이트 상대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트폭력 인식이 낮다는 것은 지속적인 데이트 관계의 유지 중 새로운 유형의 데이트폭력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있거나, 데이트폭력이 발생된 이후 뒤늦게 인지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 발생률을 증가시켜 피해예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실태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에서도 강조하였다. 데이트폭력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은 아동·청소년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제고는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공공부문 성폭력·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톱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아동·청소년기에 올바른 성평등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 등에 성평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당 의견을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으로 수원시가 전달되는 지침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제고를 위해 먼저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톱킹·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방침을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원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나 주변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수원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청소년 및 성인 모두에게 시행되는 데이트폭력 인식 및 예방교육은 집단교육과 1회성 교육을 최대한 지양하고 사례제공과 대화형 교육방식이 결합된 형태로 교육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실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수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데이트폭력 및 여성폭력 관련 예방·인식교육의 실시를 필수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강희영·박순주(2017), 서울시 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구혜영(2017), 대학생 데이트폭력 허용성 영향요인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8(1), 37-68
- 국가인권위원회(2018. 11. 28),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 무엇이 필요한가(토론회 자료집)
- 김경신·박옥임·정혜정(1999), 가부장적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4, 213-239
- 김구슬(2017),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이화젠더법학, 9(3), 135
- 김기홍(2017), 아동의 성 고정관념 및 자기애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3년 종단연구: 잠재성장모형의 분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난주(201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도연·이기은·이종현(2017), 데이트폭력 피해 및 실태조사결과,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 김동일(1993), 한국인의 성 고정관념과 권위주의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 연구원, 63(2-3), 45-58
- 김민정(2017),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실태 및 정책과제, 경북여성가족개발원
- 김소영(2010), 가정폭력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 외(2008a),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_____(2008b),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시원·박경(20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10), 121-141
- 김영철·조현옥(2016),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 해당 여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법학연구 57(3), 151-177
- 김엘림·윤덕경·박현미(2000),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 한국여성개발원
- 김예정·김득성(1999),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1): 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0), 27-41
- 김유정(2008), 분노 및 분노조절과 데이트폭력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최지현·이현·김수빈(2015), 음란물 이용과 사회적 교류가 성인 남성의 강간통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6, 55-80
- 김재엽·최지현·이효정·김기현(2010), 자기통제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이용과 성폭력 가해간 관계 분석: 성별에 따른 경로차이분석, 한국아동복지학, 31, 79-106

- 김정내(2018), 대학생의 데이트폭력과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란(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아(2017),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9(2), 4
- 김화영(2014),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위험 성행동의 관계에서 자기 통제력과 성비행의 매개효과 검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지혜(2015), 대학생이 지각한 성장기 폭력 경험과 폭력허용도 및 데이트 폭력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금식·이승렬·한동희·장순남·김혜정(2010), 부산시 여성폭력 실태 및 예방체계 구축,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박선영(2017),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방안, 제4차 가정폭력방지 월례포럼: 2017 가정폭력 방지정책 토론회 자료, 한국여성진흥원
- 박영주(2018), 대구지역 데이트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대구여성가족재단
- 박현정(2015), 데이트폭력의 위험요소와 대책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2(2), 499-521
- 박혜림(2017), 데이트폭력 관련 연구동향에 대한 메타분석,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미란(2018),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배상균(2016),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7(1), 201
- 변신원(2017), 젠더기반 폭력의 이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사공은희(2007),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15
- _____(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147-162
- _____(2009), 이성 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699-727
- 서경현·김유정·정구철·양승애(2010),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과 성-포괄적 모델의 타당성 제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81-799
- 서영숙(1986), 국민학교 아동의 성역할고정관념의 발달적 경향과 성평등역할 교육에 따른 변화, 아시아여성연구, 25, 185-217
- 손문숙(2018), 2018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한국여성의전화
- 손문숙·조재연(2016),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전화
- 신성자(1997), 남자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성향 파악과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2, 181-211

- 신소라(2017), 가정에서의 방임과 성적 학대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 행정공안행정학회보, 66, 9-36
- 신혜섭(2006),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경험과의 관련성: 여대생의 보고를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25, 117-130
- _____ (2007), 데이트관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예측요인: 여대생의 보고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 19, 55-74
- 신혜섭·양혜원(2005), 청소년 초기의 이성친구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소년학연구, 12, 299-323
- _____ (2006), 남녀 고고생의 이성교제폭력 실태와 예측요인
- 안귀여루(2002), 이성교제 폭력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 55-75
- 양난미(2009), 대학상담: 대학생 문제음주와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4), 2539-2554
- 양현아(2006), 가정폭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젠더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1), 5
- 여성가족부(2017), 2016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여성부(2008), 여성 폭력 종식: 답론에서 행동으로
- 여성정책연구원(2016),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_____ (2017),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_____ (2017a),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정책레시피
- _____ (2017b),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_____ (2018a),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_____ (2018b),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_____ (2018c),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여성가족부
- 오선영·김영희(2007), 부모에 의한 폭력경험, 데이트관계만족도,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0(2), 1-27
- 오세연·곽영길(2011),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3(5), 3-27
- 우현진(2017),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의 경험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선영(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폭력 피해간의 매개 요인에 관한 연구: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덕경(2015),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정숙(2015), 성범죄자 집단에 나타난 성범죄 유발요인의 음란물 이용에 대한 예측, 한국심리학회

- 지: 사회 및 성격, 29(3), 1-22
- 이명석(2010),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현대사회와 행정 20(2), 23-53
- 이병도(2011), 청소년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이성교제 시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식(2003),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촉실태와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_____(2004), 청소년 인터넷음란물 접촉이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조건적 효과, 청소년학연구, 11(2), 23-44
- 이성은·고은정(2010), 서울시 여성폭력 예방지원체계 구축방안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운상·이임혜경·문채수연·배복주(2011), 내각 생각하는 반성폭력운동의 쟁점과 향방, 반성폭력, 학술발표자료
- 이은숙·강희순(2014),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성폭력 경험. 동서간호학연구지, 20(1), 48-56
- 이은혜·이초롱·현명호(2009), 데이트폭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서 용서, 한국심리학회지, 28(2), 385-403
- 이정윤·이명화(2003),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청소년의 성 및 심리사회적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11(1), 32-41
- 이정화(2006), 데이트폭력의 심리적 후유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오경자(2007), 아동기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분노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433-450
- 이지영·손정락(2010),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 간 관계에서 불안정애착과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역할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41-851
- 이화숙(2018), 대학생의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석현(2001),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규제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장희숙(2002), 부모의 폭력 및 지지행동이 이성교제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0, 131-156
- 장희숙·조현각(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9-204
- 전현숙·손정락(2011), 역기능적 분노표현 및 비합리적 신념과 마음챙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0(2), 377-396
- 정세진(2012), 음란물노출이 대학생의 강압적 성행위유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각된 현실감의 매개효과 검증,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소영·임채영·이명신(2011),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편견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폭력허용도와 관계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4), 127-151

- 정익중(2005), 성역할고정관념과 청소년비행의 성별차이, *한국청소년연구*, 16(1), 35-76
- 정지숙(2018), 경상북도 젠더폭력 실태 및 정책과제, *경북여성개발원*
- 정춘아(2017), 대학생 데이트폭력에 대한 성적자기주장성 발달 과정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혜원(2017),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와 향후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혜원·박윤환(2016), 경기도 여성폭력의 공간분포에 관한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혜원·정요한(2018), 경기도 데이트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혜정(2003),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73-91
- 조성택(2006), 사이버 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사이버 음란물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9(2), 123-146
- 조옥라(2003), 젠더, 경험, 역사, 여성의 경험을 역사화하기, *서강대학교 출판사*
- 조주은·허민숙(2017),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의 쟁점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좌현숙(2011), 성역할고정관념 발달궤적의 성차와 예측요인: 아동,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9), 237-263
- 최지현(2005),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예지·서미경(2014), 데이트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가족부(2013), 해외 가정폭력방지 법·정책 및 활동, 9-13, 63-69
- 현정혜(2006), 대학생의 아동학대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형사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2017),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선진사례 조사 국외 출장보고서(영국, 스코틀랜드), *형사정책연구원*
- 호르바트, 발라즈(2017),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근절 및 예방에 관한 UNDP 서울정책센터의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2017년 서울 담화(Seoul Debates)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45, 44
- 홍미리(2005), 젠더감수성(gender sensibility) 확장을 통한 일상적 폭력에 대한 인식과 저항: 피해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미영·박지영(2018), 부산지역 데이트폭력 실태 및 예방체계 구축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홍영오·연성진·주승희(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영문 자료〉

- Bandura, 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New York: Prentice Hall
- Bernard, J. L., Bernard, S. L. & Bernard, M. L.(1985), *Courtship violence and sex-typing*,

Family Relation, 34, 573-578

- Bernard, M. L. & Bernard, J. L.(1983), Violence intimacy: The family as a model for love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32, 283-286
- Beyers, J. M., Leonard, J. M., Mays, V. K. & Rosen, L. A.(2000), Gende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courtship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5), 451-466
- Byers, E. S. & Demmons, S.(1999), Sexual satisfaction and sexual self-disclosure within dating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6, 180-189
- Cleveland, H. H., Herrera, V. M. & Stuewig, J.(2003), Abusive Males and Abused Females in Adolescent Relationships Risk Factor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and the Role of Relationship Seriousnes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8(6), 325-339
- Dobash, R. E. & Dobash, R. P.(1992), Women, Violence, and Social Change, New York: Routledge
- Donnerstein, E. & Berkowitz, L.(1981), Victim reactions in aggressive-erotic films as a factor in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4), 710-724
- Dye, M. L. & Eckhardt, C. I.(2000), Anger, irrational belief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in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Victims*, 15, 337-350
- Follingstad, D. R., Bradley, R. G., Laughlin, J. E. & Burke, L.(1999), Risk factors and correlates of dating violence: The relevance of examining frequency and severity levels in a college sample, *Violence Victims*, 14(4), 365-380
- Foshee, V. A., Linder, G. F., MacDougall, J. E. & Bangdiwala, S.(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longitudinal predictors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Preventive Medicine*, 32(2), 128-141
- Gray, H. M. & Foshee, V.(1997), Adolescent dating violence: Differences between one-sided and mutually violent profi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1), 126-141
- Gressard, L. A., Swahn, M. H. & Tharp, A. T.(2015), A First Look at Gender Inequality as a Societal Risk Factor for Dating Violence, *Am J Prev Med*. 2015 Sep; 49(3), 448-57
- Kasian, M. & Painter S. L.(1992), Frequency and severity of psychological abuse in a dating population, *Sege publications*, 7(3), 350-364
- Kelly, L.(1987), Th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In J. Hanmer, & M. Maynard(Eds.), *Women violence and social control* (pp. 46-60), Atlantic Highlands, NF: Humanities

- Press International
- Kingston, D. A., Fedoroff, P., Firestone, P., Curry, S. & Bradford, J. M.(2008), Pornography use and sexual aggression: The impact of frequency and type of pornography use on recidivism among sexual offenders, *Aggressive Behavior*, 34, 341-351
- Kingston, D A., Malamuth N. M., Fedoroff P. & Marshall W. L.(2009),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pornography use: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for treating sexual offenders, *J Sex Res*, 46(2-3), 216-232
- Kuffel, S. W. & Katz, J.(2002), Preventing physical, psychological, and sexual aggression in college dating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2, 361-374
- Laner, M. & Thompson, J.(1982), Abuse and aggression in courting couples, *Deviant Behavior*, 3, 384-388
- Leonard, K. E. & Senchak, M.(1993), Alcohol and premarital aggression among newlywed coupl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4, 96-108
- Levy, B.(1991), Dating violence: *Young women in danger*, Seattle, WA: Seal Press
- Lichter, E. L. & McCloskey L. A.(2004), The effects of childhood exposure to marital violence on adolescent gender-role beliefs and dating viol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8, 344-357
- Lloyd, S.A., Koval, J. & Cate, R.(1989), Conflict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n M.A. Pirog-Good & J. E. Stets(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 New York: Praeger*, 127-142
- Malamuth, N. M. & Check, J. V. P.(1981), The effects of mass media exposure on acceptance of violence against women: A field experi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5, 436-446
- Malamuth, N. M., Addison, T. & Koss, M.(2000), Pornography and sexual aggression: Are there reliable effects and can we understand them?. *Annual Review of Sex Research*, 11, 26-91
- Muehlenhard, C. L. & Linton, M. A.(1987), Date rape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s: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186-196
- Murphy, J.(1988), Dating abuse and forced intercourse among college students, In G.T, Hotaling, Finkelhor, J. T. Kirkpatrick, and M. A. Straus. *Family abuse and its consequences: New directions in research*, Newbury, CA: Sage

- Novaco, R. W.(2007), Anger dysregulation. In T. Cavell & K. Malcolm(Eds.), *Anger, aggression, and interventions for interpersonal violence* (pp. 3-54), Mahwah, NJ: Erlb
- O'Keefe, M.(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546-568
- _____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 39-57
- Rada C.(2014), Violence against women by male partners and against children within the family: prevalence, associated factors,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in Romania, a cross-sectional study, *Rada BMC Public Health*, 14, 129
- Riggs, D. S. & O'Leary, K. D.(1989), A theoretic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In Pirog-Good, M & Stets, J.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 New York: Praeger, 53-71
- _____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An Examination of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 Riggs, D. S. O'Leary, K. D. & Breslin, F. C.(1990), Multiple correlatie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61-73
- Ronfeldt, H. M., Kimerling, R. & Arias, I.(1998),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power and the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1), 70-78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 Schnurr, M. P. & Lohman B. J(2013), The impact of collective efficacy on risks for adolescents'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4) 518-535
- Sharkin, B. S.(1988), The measurement and treatment of client ange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8), 361-365
- Spencer, G. A. & Bryant, S. A.(2000), Dating violence: a comparison of rural, suburban, an urban teen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7, 302-305
- Stets, J. E. & Pirog-Good, M.(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530-548
- Sugarman, D. B. & Hotaling, G. T.(1989), Dating violence: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rkers. In M.A. Pirog-Good & J. E. Sets (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 3-33, New York: Preager Publishers
- Thompson, Jane & McGivern, Janet(1995), Sexism in the seminar: strategies for gender sensitivity management education, *Gender & Education*, 7(3)
- Thompson, S. K.(1975), Gender labels and early set rol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46, 339-347
- Walker, L. E.(1980), *The Battered Women*, Harper Perennial
- Worell, J. & Remer, P.(2003), *Feminist perspectives in therapy: Empowering diverse women* (2nd ed.), New York: Wiley

〈신문 자료〉

- 경찰청브리핑(2017),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강화 추진(보도자료)
- _____ (2019),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8),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보도자료)
- _____ (2018), 스톱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보도자료)
- 수원시(2017), “사통팔달 수원시 ‘교통 허브’ 문 연다”(보도자료)

〈사이트〉

-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http://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http://www.gfwri.kr/>
- 경기도 교육청, www.goe.go.kr/
- 경기도청, <https://www.gg.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 서울여성가족재단, <http://www.seoulwomen.or.kr>
- 수원시, <http://www.suwon.go.kr/>
-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http://www.government.se/>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여성폭력 Zoom-in, <https://www.stop.or.kr/women/>
- 정보공개포털, <http://www.open.go.kr/>
- 청와대정책브리핑, <http://korea.kr/archive>.
-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omen21.or.kr/>
- 한국여성의전화, <http://hotline.or.kr>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DB, <http://hotline25.tistory.com>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www.nypi.re.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27.101.213.4/>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경범죄처벌법

광주지방법원 2006.2.13. 선고 2005고단3339판결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시행 1988.2.25)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429)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9972)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9973)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10900)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10755)

범죄피해자보호법

스웨덴 형법전(Panel Code)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 부 록 |

1. 수원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수원시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 

수원시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원시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수원시 데이트 폭력 피해자 예방책 마련 및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소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본 조사의 설문 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 문의처 : 여론조사 사업 2부 황인창 부장/홍세정 과장 02-3014-0086/1016

※ 먼저 아래의 데이트 폭력에 관한 글을 읽은 후 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감시, 통제, 폭언, 갈취, 협박, 폭행,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을 말합니다. 데이트 관계는 데이트 또는 연애(쌍남·여, 연인, 사실희, 배우자)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부킹·채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괄합니다. 또한 헤어지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 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속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출처 : 한국여성익친회, 데이트 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 ② 남성

SQ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 ② 20대
- ③ 30대
- ④ 40대
- ⑤ 50대 이상

SQ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장안구
- ② 권선구
- ③ 팔달구
- ④ 영통구

Part 1. 인식조사

A1. 데이트 관계에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주시시오.

항목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상대가 끊임없이 전화하거나 사생활을 체크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가 불속 집에 찾아오거나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3) 내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4) 나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5)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6) 연인들이 1박 이상 여행을 같이 가는 것은 성관계를 동의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7) 바람을 피웠다면 애인에게 맞아야 된다	①	②	③	④
8) 애인을 때리는 사람과는 헤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9) 만취상태에서 한 행동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폭력을 당하면 내 잘못이다	①	②	③	④
11) 폭력적인 연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더 베풀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2) 연인 간 폭력은 사적인 일이므로 3차 개입이 필요 없다	①	②	③	④
13) 폭력적인 상대와 관계를 끊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14) 싸우고 난 후의 성관계는 화해 또는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A2. 데이트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에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목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상대방과 통화가 되지 않을 때, 전화를 받을 때까지 시간과 횟수 상관없이 전화를 하는 것은 괜찮다	①	②	③	④
2) 상대방은 내가 보내는 카톡이나 문자에 바로 응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나 아닌 다른 이성과의 관계는 친구관계여도 용납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4) 핸드폰, 이메일,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는 서로 공유해도 무관하다	①	②	③	④
5) 상대방이 나를 속인다면 상대방에게 욕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상대방이 나를 가족/친구들 앞에서 우습게 만들면 상대방에게 욕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논쟁 중에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면 나도 신체적 폭력으로 되갚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상대방이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걸 알게 된다면 상대방을 때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때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때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맞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맞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11)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A3. 귀하는 다음의 행위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항목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일정을 간섭하거나 통제한다	①	②	③	④
2)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한다	①	②	③	④
3)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한다	①	②	③	④
4)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는다	①	②	③	④
5)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6) 상대가 쓴 데이트 비용을 내 놓으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7) 상대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8) 팔뚝이나 몸을 힘껏 움켜 잡는다	①	②	③	④
9) 세게 밀친다	①	②	③	④
10)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다	①	②	③	④
11)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나 애무를 한다	①	②	③	④

A4.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것은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	①	②	③	④
2) 데이트 폭력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3) 데이트 폭력은 주로 젊은 세대(10대~30대)에서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4) 데이트 폭력은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①	②	③	④
5) 데이트 폭력의 폭력성은 다른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에 비해 위협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6) 데이트 폭력 피해 시 정신적으로 악화된다	①	②	③	④
7) 데이트 폭력 피해 시 신체적으로 악화된다	①	②	③	④
8) 데이트 폭력은 서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데이트 폭력은 신체폭력만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10) 가해자 상담 및 교정치료가 데이트 폭력을 없앨 수 있다	①	②	③	④

Part 2. 데이트폭력 경험과 대응

B1. 귀하는 데이트 관계(연인, 부부관계 포함)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통제와 간섭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구분	경험정도				
	전혀 없음	1년에 1~2번	1달에 1~2번	1주에 1~2번	거의 매일
1) 상대방이 내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점검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동아리나 모임활동을 못하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4)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하는 일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두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했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상대를 만나는지 의심했다	①	②	③	④	⑤
9) 학교나 직장 등 나의 활동반경에서 지켜보거나 감시한다(스토킹)	①	②	③	④	⑤
10) 지출을 의심하거나 통제한다(경제적 활동 전반)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귀가 시간을 체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친구나 직장동료에 관하여 지나치게 자주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 경험정도가 모두 '전혀 없다' 일 경우, 문항 B2번으로 이동)

B1-1. 위와 같은 상대의 통제와 간섭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 | | | |
|-----------------|-----------------|----------------|
| ① 기억나지 않는다 | ② 사귀기 전 | ③ 사귀기 후 1개월 미만 |
| ④ 사귀기 후 1개월~3개월 | ⑤ 사귀기 후 3개월~6개월 | ⑥ 사귀기 후 6개월~1년 |
| ⑦ 사귀기 후 1년~2년 | ⑧ 사귀기 후 2년~3년 | ⑨ 사귀기 후 3년 이상 |
| ⑩ 헤어지자고 한 이후 | | |

B1-2.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귀하의 주된 느낌은 어떠하였습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
| ①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 ② 아무렇지도 않았다 |
| ③ 폭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 ④ 내가 더 잘 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 |
| ⑤ 상대가 불쌍했다 | ⑥ 창피했다 |
| ⑦ 무기력 또는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졌다 | ⑧ 점점 무섭고 두려웠다 |
| ⑨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 ⑩ 헤어지고 싶었다 |
| ⑪ 상대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 | ⑫ 상대의 통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

B1-3. 귀하는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 ①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 ②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 ③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줬다
- ④ 상대방이 사과하여 용서했다
- 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 ⑥ 내 기분을 표현했다
- ⑦ (몸을 사용하여) 맞서서 대항했다
- ⑧ 무시했다
- ⑨ 헤어지자고 했다
- ⑩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 ⑪ 상담소나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 ⑫ 기타()

B1-4. 귀하가 위와 같은 일로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의 주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 ② 뭐 그런 일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
- ③ 순순히 헤어지자는데 동의했다
- ④ 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애원했다
- ⑤ 더 폭력적으로 변했다
- ⑥ 자해했다
- ⑦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죽이려 했다
- ⑧ 가족이나 친구 혹은 반려동물 등을 위협했다
- ⑨ 성관계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겠다고 협박했다
- ⑩ 혼자 또는 둘이 찍은 신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고 위협했다
- ⑪ 헤어지자고 얘기하지 않아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다
- ⑫ 기타()

B2. 귀하는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에게 아래와 같은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구분	경험정도				
	전혀 없음	1년에 1~2번	1달에 1~2번	1주에 1~2번	거의 매일
1)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자주 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를 죽이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반려동물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상대가 쓴 데이트비용을 내 놓으라고 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상대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애완동물을 학대하거나 소중한 물건을 가져갔다	①	②	③	④	⑤
11) 협박이나 강요로 돈, 귀중품을 가져갔다	①	②	③	④	⑤

(☞ 경험정도가 모두 '전혀 없다' 일 경우, 문항 B3번으로 이동)

B3. 귀하는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구분	경험정도				
	전혀 없음	1년에 1~2번	1달에 1~2번	1주에 1~2번	거의 매일
1) 팔목이나 내 몸을 힘껏 움켜잡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를 세게 밀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손이나 물건을 이용해 내 몸을 아프게 찌르거나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나에게 집어 던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목을 조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칼(가위) 등의 흉기로 위협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칼(가위) 등의 흉기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뼈거나 멍이 들거나 (살짝)상처가 났다	①	②	③	④	⑤
9)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뼈가 부러졌다	①	②	③	④	⑤
10)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 경험정도가 모두 '전혀 없다' 일 경우, 문항 B4번으로 이동)

B3-1. 위와 같은 상대의 신체적 폭력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 ① 기억나지 않는다
- ② 사귀기 전
- ③ 사건 후 1개월 미만
- ④ 사건 후 1개월~3개월
- ⑤ 사건 후 3개월~6개월
- ⑥ 사건 후 6개월~1년
- ⑦ 사건 후 1년~2년
- ⑧ 사건 후 2년~3년
- ⑨ 사건 후 3년 이상
- ⑩ 헤어지자고 한 이후

B3-2.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귀하의 주된 느낌은 어떠하였습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 ② 아무렇지도 않았다
- ③ 폭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 ④ 내가 더 잘 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
- ⑤ 상대가 불쌍했다
- ⑥ 창피했다
- ⑦ 무기력 또는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졌다
- ⑧ 점점 무섭고 두려웠다
- ⑨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 ⑩ 헤어지고 싶었다
- ⑪ 상대에 대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

B3-3. 귀하는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 | | |
|-----------------------------|---------------------|
| 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 ②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
| ③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줬다 | ④ 상대방이 사과하여 용서했다 |
| 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 ⑥ 내 기분을 표현했다 |
| ⑦ (몸을 사용하여) 맞서서 대항했다 | ⑧ 무시했다 |
| ⑨ 헤어지자고 했다 | ⑩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
| ⑪ 상담소나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 ⑫ 기타() |

B3-4. 귀하가 위와 같은 일로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의 주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 | | |
|---|---------------------------|
| 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 ② 뭐 그런 일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 |
| ③ 순순히 헤어지자는데 동의했다 | ④ 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애원했다 |
| ⑤ 더 폭력적으로 변했다 | ⑥ 자해했다 |
| ⑦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죽이려 했다 | ⑧ 가족이나 친구 혹은 반려동물 등을 위협했다 |
| ⑨ 성관계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겠다고 협박했다 | |
| ⑩ 혼자 또는 둘이 찍은 신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고 위협했다 | |
| ⑪ 헤어지자고 얘기하지 않아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다 | |
| ⑫ 기타() | |

B4. 귀하는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구분	경험정도				
	전혀 없음	1년에 1~2번	1달에 1~2번	1주에 1~2번	거의 매일
1)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음담패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데이트 상대의 친구들 단체카톡방에서 내에 대한 성적표현과 평가를 한 것을 본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원하지 않는 키스를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여 성관계를 유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신체적 폭력을 쓰지 않았으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체위를 강요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섹스를 하기 위해 때리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원하지 않는 섹스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동의에 의한 사진 혹은 영상을 촬영했지만, 인터넷 및 가족·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피임을 하자는 나의 요구를 거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몸에 보이는 곳에 강제로 키스 마크를 남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성관계시 피임은 여자 몫이라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경험정도가 모두 '전혀 없다' 일 경우, 문항 B5번으로 이동)

※ 문항 B1, B2, B3, B4번 설문은 '데이트폭력'(통제와 간섭, '정서적·언어적·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험정도가 모두 '전혀 없다' 경우만 * C1번 문항으로 이동

B5. 귀하가 데이트 폭력 경험으로 인해 겪은 피해 중 귀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해주시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
| ①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 | ② 일상적인 생활(학업, 직장 생활 등)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
| ③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사회적 불신이 생겼다 | ④ 개인 정보 유출(유출에 대한 두려움) |
| ⑤ 나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다 | ⑥ 신체적 건강 악화 |
| ⑦ 피해자인 나를 오히려 비난하거나 괴롭혔다 | ⑧ 대인기피 혹은 공황장애 |
| ⑨ 죽음에 대한 공포 | ⑩ 나의 가족이나 주변인을 괴롭히거나 보복할까봐 두려웠다 |
| ⑪ 기타() | |

B6. 연애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주시시오.(복수응답)

- | | |
|-----------------------|----------------------------------|
| ① 연애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헤어짐) | ②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 |
| ③ 좋을 때는 잘 해주니까 | ④ 나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
| ⑤ 상대방을 계속 사랑한다고 느껴서 | ⑥ 사귀는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
| ⑦ 상대방이 변화될 것 같아서 | ⑧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서 |
| ⑨ 가족이나 지인에게 잘해줘서 | ⑩ 결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
| ⑪ 갈등 없이 헤어지고 싶어서 | ⑫ 상대방의 위협과 협박 때문에(사진, 동영상 유포 포함) |
| ⑬ 기타() | |

B7. 귀하는 데이트 폭력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도움이 가장 필요하였습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해주시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
| ① 주위 사람들의 조인과 위로 | ② 가해자 처벌과 제재 |
| ③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및 지원해 주는 것 | |
| ④ 신고 이후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 ⑤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 |
| ⑥ 피해자 지원 기관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 ⑦ 기타() |

B8. 귀하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항목 구분	전혀 모름	모름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1)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방법, 과정 등)해야 하는지 여부	①	②	③	④
2)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돕거나 지원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 여부	①	②	③	④

수원시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

C7. 만약 귀하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라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까? 모두 응답해주세요.(복수응답)

- | | |
|-----------------------------|---------------------------|
| ① 지인, 가족 등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고민 토로 | ②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담소 |
| ③ 데이트 폭력을 인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④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 |
| ⑥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피해 예방 및 지원 | ⑥ 피해자 의료비 지원 |
| ⑦ 무료 법률 상담 등 법적 지원 | ⑧ 기타() |

C8. 귀하는 수원시에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중 알고 있는 기관을 모두 응답해주세요.(복수응답)

- | | |
|-------------------|----------------|
| ① 수원여성지원센터 | ②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
| ③ 수원가정법률상담소 | ④ 1366(여성긴급전화) |
| ⑤ 학교 | ⑥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⑦ 112 | ⑧ 해바라기센터 |
| ⑨ 알고 있는 기관이 전혀 없다 | ⑩ 기타() |

C9. 수원시민을 위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에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
| ① 수원시 데이트 폭력 관련 조례제정 | ② 수원시 데이트 폭력 전담기관 설치 |
| ③ 수원시 데이트 폭력 예방 및 지원 예산 확보 | ④ 기존 데이트 폭력 상담기관의 지원 확대 |
| ⑤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 ⑥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
| ⑦ 수원시 데이트 폭력 지원 정책 홍보 | ⑧ 기타() |

Part 4. 자요분류용 질문

D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 ②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③ 대학교 재학/졸업(2년제 포함) | ④ 대학원 재학 이상(수료 포함) |
| ⑤ 기타() | |

D2. 귀하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고위관리직 | ② 전문직 및 준전문직 | ③ 사무직 |
| ④ 서비스/판매직 | ⑤ 기능직/생산직 | ⑥ 정치 및 기계 관련직 |
| ⑦ 단순노무직 | ⑧ 전업주부 | ⑨ 학생 |
| ⑩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 ⑪ 무직 | ⑫ 기타() |

D3. 귀하의 동거가족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복수응답)

- ① 혼자 생활함 ② 부모형제 ③ 배우자
④ 자녀 ⑤ 기타()

D4. 귀하의 한 달 개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⑨ 개인 수입 없음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저자 약력 |

이영안

행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yalee@suwon.re.kr

한연주

사회복지학박사 수료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joanna1118@suwon.re.kr

이근혁

행정학박사 수료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현)

E-mail : nafuza@suwon.re.kr

